

2022

#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주제 정의와 공정이 통하는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  
일시 2022년 2월 25일 (금) 13:00 - 18:00  
진행 비대면 웨비나 진행(ZOOM)



# 2022

##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구분	시간	내용	
개회	13:30 ~ 13:40	인사말	김영순(인하대)
	13:40 ~ 14:10	사회   박종도(인천대)	
		기조강연 1	손영화(인하대)   다문화사회의 공정과 정의의 관건
	14:10 ~ 14:40	연구윤리특강	박병기(한국교원대)
	14:40 ~ 14:50	휴식	
서명예배	14:50 ~ 15:45	세션 1   좌장 : 오영섭(인하대)	
	14:50 ~ 15:10	발표1 _ 강진숙(계명대)	블렌디드러닝을 통한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기획 확대 방안
	15:10 ~ 15:30	발표2 _ 이한나(강원대)	이주노동자 주거지원 사례를 통해 본 지역재생
	15:30 ~ 15:45	토론   황해영(인하대)/ 하종천(인하대)	
	15:45 ~	세션 2   좌장 : 권요섭(인하대)	
	15:45 ~ 16:05	발표3 _ 남정연(인하대)	이혼을 경험한 베트남 이주여성의 생애사연구
	16:05 ~ 16:25	발표4 _ 김은희(인하대)	결혼이주여성의 자조모임 참여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16:25 ~ 16:40	토론   박봉수(디아스포라연구소)/ 남부현(선문대)	
종회	16:40 ~ 17:10	사회   박종도(인천대)	
		기조강연 2	김선정(계명대)   상호협력과 상생을 위한 고등교육 차원의 국제교류
	17:10 ~ 17:30	총회 : 오정미(총무이사)	
	17:30 ~ 17:40	폐회사 및 폐회	

## I. 서론

오늘날 우리는 이른바 다문화사회에 살고 있다. 전세계가 자유롭게 왕래하며 하나의 지구촌사회로서 나아가고 있다. 이른바 이산화탄소배출 문제를 비롯한 자연재해에 대한 대처 등의 문제는 지구 전체 국가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서 함께 대처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이다. 최근 자국에서 타국으로의 이주현상이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다. 이른바 이민과 이주의 시대가 된 것이다. 그 주된 이유는 경제적인 것이지만 그밖에도 전통적인 이민과 이주의 요인이었던 전쟁과 분쟁, 자연환경의 피해 등 다양하다. 이민과 이주의 중심에는 여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과거부터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한 국제결혼에 의한 이민과 이주<sup>1)</sup> 그리고 3D 기피현상 속에 부족한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일자리를 메우는 외국인 노동자가 다문화사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sup>2)</sup>

이와 같은 다문화사회의 현상 속에서 과연 미래 보다 살기 좋은 우리나라를 만들기 위한 공정과 정의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고민해 보고자 한다. 다만, 공정과 정의의 개념은 결코 간단하게 정의할 수 없는 철학적 개념을 동반하는 내용이므로 이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 그와 같은 시각에서 다문화사회의 중요한 화두라고 할 수 있는 국내외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에서의 공정과 정의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 II. 공정과 정의의 개념

### 1. 공정과 정의의 의미

사전적 의미로 공정(公正)은 ‘공평하고 올바름’을 뜻한다. 그러므로 공정은 옳고 그름을 윤리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정의(正義)는 ‘올바른 도리’, ‘바른 의의(意義)’로 풀이된다. 이로 볼 때 공정은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 최우선 조건이 된다고 볼 수 있다.<sup>3)</sup> 최근 우리 사회에서 공정과 정의가 부상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부동산 정

- 1)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다문화 가구원의 수는 2020년 현재 총 109만 3천여명이며, 이 중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내국인이 약 67만 9천명, 다문화 대상자(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약 37만 1천명, 그 외 기타 외국인이 약 4만 3천명이다(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홈페이지 자료). 다문화 혼인 건수는 경기(4,771건), 서울(3,482건), 인천(979건) 순으로 많은데, 다문화 혼인 건수는 전년대비 모든 시도에서 감소하였다. 각 지역별로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충남(9.0%), 제주(8.8%) 순으로 높고, 세종(3.5%), 부산(5.6%) 순으로 낮았다(통계청, “2020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2021. 11. 8, 11면).
- 2) 연도별 인구대비 체류외국인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인구 대비 체류외국인 비율은 2016년 3.96%에서 2019년 4.87%로 매년 증가하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에는 3.93%로 감소하였다. 2019년 말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2,524,656명으로 전년 대비 32.9% 증가하였다. 2020년 말 기준으로는 2,036,075명이다(법무부, “출입국통계”, <<https://www.moj.go.kr/moj/2412/subview.do>>).
- 3) 김승종, “공정과 정의”, 제주일보, 2018. 1. 24.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9500>>.

책의 실패였다. 정부의 반복된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인한 부동산 가격 폭등과 주거 불안정, 그리고 이 와중에 드러난 정부기관(LH 공사)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와 정부의 감독실패는 젊은층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에게 커다란 좌절과 고통을 안겨주었다. 이 같은 분위기는 2021년 4월의 서울과 부산 시장 선거에서 야당의 압도적 승리로 나타났고, 한국 사회가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가 라는 사회적 논쟁에 불을 붙였다.<sup>4)</sup>

## 2. 서양 근대철학의 개관

공정과 정의를 생각할 때 꼭 언급하고 싶은 것은 서양 근대가 안고 있는 모순이다. 서양 근대는 이성과 계몽을 기치로 하여 인간을 특정 종교적, 정치적 질곡에서 벗어나 자유, 평등, 공정, 정의라는 보편적 가치에 열린 사회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러던 중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개념이 단련되어 서양 이외의 지역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그 빛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다른 한편으로 서양 근대는 식민주의나 제국주의, 노예제나 사회의 구조가 만들어 가는 빈곤과 같은 서양의 외측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폭력적으로 지배하는 부정을 허락했던 것이다.

이런 부정이 극에 이른 것이 전체주의다. 민주주의적인 절차를 밟아서 성립된 나치 독일은 홀로코스트 혹은 쇼어라고 불리는 유대인 학살을 수행하려고 하였다. 그것은 유대인이 살아 있던 흔적까지도 지워 버리려고 하는 극한의 악이었다. 더구나 그것은 나치의 관료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처럼 유대인을 강제수용소나 멸종수용소로 이송하려는 계획을 냉철하게 '계산'하여 실행하는 이성이 뒷받침되었던 것이다.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제1세대를 대표하는 막스 홀크하이머와 테오도르 아도르노는 망명처인 캘리포니아에서 『계몽의 변증법』(집필은 전시 중인 1939년에서 1944년, 출판은 1947년)을 써서 서양적 이성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수단으로서의 도구가 되고 문명화를 진행시켜야 할 계몽이 변증법적으로 그 반대물로 전환됨으로써 나치즘이라는 새로운 야만을 초래했다고 기술하였다.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는 1961년에 잡지 '뉴욕커'의 특파원으로서 예루살렘에서의 아돌프 아이히만<sup>5)</sup>의 재판을 방청하고, 그것을 1963년에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로서 출판한다. 그런 가운데 아렌트는 나치에 대한 유대 평의회의 협력을 지적함과 동시에 아이히만에게 구현되어 있는 악을 진부한 악 혹은 평범한 악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호된 비난을 받게 된다. 그러나 아렌트는 나치즘의 악을 결코 가볍게 추측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치즘과 같은 절대적인 악이 아이히만과 같은 사고가 결여된 인간 즉, 누군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4) 류상영, “한국 사회의 공정과 정의: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동아시아재단 정책논쟁』 제162호(2021. 7. 16). <<https://www.ukore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677>>.

5) 칼 아돌프 아이히만은 나치 친위대 중령으로 600만 유대인 학살을 집행한 인물. 종전 뒤 아르헨티나로 도주했다가 끝내 이스라엘 첩보기관에 붙잡혀 재판에 회부됐던 사람. 법정에서 철학자 칸트의 도덕 계율을 들먹이며 자신은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를 다했을 뿐이라 항변했던 인물이다(조태성, “아렌트는 아이히만을 비웃었다 “차~암 평범하셨네요””, 한국일보, 2016. 1. 29.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601291069154283>>).

생각할 수 없는 인간에 의해 담당되고 있으며, 나아가 피해자 또한 그 거약의 프로세스에 휘말려 버린다는 것을 지적함으로써 나치즘을 단순한 비정상적인 현상으로 단죄하고 끝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sup>6)</sup>

엠마누엘 레비나스(Emmanuel Levinas)는 포로수용소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레비나스는 그 주저인 『전체성과 무한』(1961년)이라는 제목에 분명히 있듯이 서양철학을 전체성(totality : 나치즘의 전체주의를 의식한 표현)으로 향하는 것, '전쟁에서 생기는 전체성의 존재론'이라고 비판하고 전체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전체성을 깨는 무한, 즉 무한한 타자에 대한 책임으로 대치했다. 아렌트가 공공영역이라는 정치공간을 강조한 것에 비해 레비나스는 다른 사람에게 정의를 돌려주는 윤리를 주장했던 것이다.<sup>7)</sup> 레비나스가 서양철학에 대치한 윤리는 주체나 자아라고 하는 서양근대의 중요한 장치를 단지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향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주체나 자아를 정의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는 이기주의 없는 자아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레비나스의 윤리적 주체관은 타자를 자아성립의 전제조건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할 뿐만 아니라 타자에 대한 책임과 환대를 주장한다.<sup>8)</sup>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제2세대를 대표하는 것이 워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이다. 하버마스는 홀크하이머(Horkheimer)나 아도르노(Adorno)에 의한 이성과 계몽에 대한 비판 후에 다시 한번 이성과 계몽을 세우려 했다. 즉, 「도구적 이성」에 대해서는 「대화적 이성」을 두고,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의해서 구성되는 시민적인 공공영역(공공권)을 재구축하려고 했다.<sup>9)</sup> 하버마스는 대화적 이성 즉, 의사소통을 중요시하였는데, 의사소통적 행위능력을 합리성이라고 이해했다.<sup>10)</sup> 하버마스는 18세기의 계몽의 철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던, 「세계와 자아의 해석」, 「도덕적 진보」, 「공정한 사회제도」, 「인간의 행복」이 촉진된다고 하는 방향성을 그것이 아무리 좌절되고 있었다고 해도 지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sup>11)</sup>

6) 아렌트는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다는 의미에서 아이히만에 대한 사형집행을 확고하게 찬성한 지식인 중 하나였다. '우리 안에 아이히만 있으니 모두가 참회하자'는 식의 해석은 '악의 평범성'과는 애당초 상관없었다는 얘기가. 다른 인터뷰에서 아렌트는 딱 잘라 말한다. "우리 각자는 아이히만과 같은 측면을 갖고 있다는 말을 하려던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하려던 말은 오히려 그 반대예요!"(조태성, 전 계기사(아렌트는 아이히만을 비웃었다 "차~암 평범하셨네요")).

7) 오늘날 타자의 지위는 달라졌다. 다르다는 것은, 낯설다는 것은 이전처럼 위협적인 것이 아니다. 낯설과의 책임은 일상이 되었고 피할 수 없는 방향이 되었다. 그러한 일상의 낯설 가운데서 타자는 이웃이 되어서 돌아온다. 그 과정을 레비나스는 전체성과 무한에서 풀어내고 있다(문성원, "전체와 무한", 2018. 6. 11. <<https://brunch.co.kr/@minnation/965>>).

8) 김범춘, "다문화 사회의 소통 패러다임으로서 레비나스의 타자성", 『통일인문학』 제57집(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4.3), 162면.

9) 하버마스는 그 역사적 전개에 있어서 근대적 지성의 왜곡을 충분히 자각하면서 그러나 그 긍정적인 측면을 구출하자고 했으며, 그 일관된 관심의 하나는 근대의 과학적 이성의 비판이며, 전통적인 객관적 이성도 근대의 주관적 이성도 물리치면서, 거기에 대화적 이성을 대치하고, 주관의 독일 모노로그 어적인 추론 속에서가 아니라, 대 디아로그(Dialog)화를 개입하여 드러나는 이성의 상호주관적인 반성과 양해 속에서 그 합리성과 보편성을 보려 한다(宮盛邦友, "教育基本法と未完のプロジェクト-現代の教育学・教育法学の理論(2) : 教育における統治機構論-", 『研究年報』 第66号(學習院大學文學部, 2020), 214面).

10) 박종대,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적 행위이론」에 관한 연구", 『사회와 철학』 제1권(사회와철학연구회, 2001), 171면.

11) Jürgen Habermas, Die Moderne-ein unvollendetes Projekt, In Wolfgang Welsch (ed.), Weg

현대 사회에 있어서 공정이나 정의가 추궁당하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에서이다. 자신을 위한 공정이나 정의를 주장하고, 타인의 삶을 폭력적으로 해쳐 온 근대의 그림자를 떨쳐 버리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공정이나 정의를 돌려줄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성이나 계몽을 재검토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있는 공공영역을 계속 만들어야 한다. 거기에서 공정이나 정의가 재차 보편적인 윤리로서 등장할 것이다.

다문화사회에서의 보편적인 공정이나 정의를 이야기할 때, 언제나 생각할 수 있는 중심 주제는 바로 인권이다. 「인권」은 역사적으로 보면, 유럽에서 생겨난 사고방식이다. 그러나 처음 인권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았다.<sup>12)</sup> 인권이 '모든 인간'에게 보증되는 것은 세계인권선언(1948년)을 기다려야 했다.<sup>13)</sup> 이를 프랑수아 줄리앙(François Jullien)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철학자는 「보편화 가능한 것(l'universalisable)」과 「보편화하는 것(l'universalisant)」의 섬세한 구분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였다.<sup>14)</sup> 해당 사회나 문화에 보편화 가능한 것이 미리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인권과 같은 이념을 향해 보편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반복하여 그러한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조건이 된다. 비판적 검토 없는 보편화는 단순한 폭력에 빠져버리기 때문이다.

공정과 정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공정이나 정의라고 하는 이념은 그 자체 미완의 개념으로, 우리가 만들어 내는 공공영역에서 끊임없이 검증하고, 그것을 보편을 향해 전개하는 노력이 불가결하다. 그러기 위해서 현대 사회에 있어서 공정이나 정의가 요구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와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하다.

### 3. 배분적 정의의 현대적 의의

공정과 정의에 대한 철학자들의 정의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논의가 바로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에 대한 것이다.

- 
- e Aus der Moderne: Schlüsseltexte der Postmoderne-Diskussion. De Gruyter. pp. 177-192 (1988).
- 12)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짓밟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을 인권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18세기 말에 만들어진 미합중국의 독립선언과 헌법, 프랑스의 '사람과 시민의 권리 선언' 등에 그 생각을 담고 있다. 하지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한 사람 한 사람 속에는 식민지 사람들이나 인종이 다른 사람들, 노예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침략당한 나라의 사람들도 여전히 침략하고 지배하는 나라와 침략군에 있어서는 자신들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 여성이나 아이도 성인 남성과 동일한 인권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 13)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민과 모든 나라가 달성해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서'라는 인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의 전문에서는 「인류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과 평등하고 양보할 수 없는 권리를 승인하는 것은, 세계에 있어서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이다」라고 한다. 그리고 「회원국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 및 준수의 촉진을 달성할 것을 서약하였다」고 하고 있다.
  - 14) 중국과 그리스 사상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는 줄리앙은 문화의 논의를 끝없는 차이와 반대의 표시로부터 구하고 그것을 인간에 대한 "공개적인 탐구적 개념"을 구별하는 사고 활동에 배치하기 위해 데카르트적 접근인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Je pense donc je suis(I think therefore I am)")를 사용한다(Patricia Harris Stäblein Gillies, On the Universal: The Uniform, the Common and Dialogue between Cultures by François Jullien, 09/07/2015. <<http://www.occt.ox.ac.uk/cct-review/universal-uniform-common-and-dialogue-between-cultures-fran%C3%A7ois-jullien>>).

배분적 정의와 평균적 정의에 관한 논의 중에서 무엇이 진정한 정의의 모습이냐에 대한 논의에서 오늘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견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정의의 제1원칙이었다.<sup>15)</sup> 이는 바로 배분적 정의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서 오늘날 자본주의가 꽃필 수 있었던 사상의 기반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sup>16)</sup> 그러나 배분적 정의를 실천함에 있어서도 사람이 중요하다. 칸트(Immanuel Kant)는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고 목적으로서 대우받아야 된다고 주장하였다.<sup>17)</sup>

마이클 샌델(Michael Sandel)은 “정의: 무엇이 올바른 일인가”라는 책에서 위에 제기된 철학적 논쟁을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즉, 1) 사회 전체의 후생을 최대화하기 위한 공리주의적 철학, 2) 개인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철학, 3) 공적 미덕을 함양하기 위한 공동체주의적 대안 등이 그것이다.

공리주의적 입장의 대표자로는 존 롤스를 들 수 있다. 존 롤스(John Rawls)는 ‘공정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와 평등주의적 비전을 제시하였다. 즉, 절차가 공정하다면 그 결과 또한 정의롭다는 의미이다. 롤스의 정치철학은 이른바 담론적 실천(discursive practice)의 전형적인 예라 할 것이다.<sup>18)</sup> 롤스는 더 나아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보장된다면 직업이나 지위에서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허용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자유주의적 철학을 강조한 노직(Robert Nozick)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취득된 사유재산권이나 개인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나 사회적 필요를 위하여 침해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19)</sup> 노직은 그의 철학을 롤스와는 대조적으로 개인의 불가양도의 권리, 자연권(natural right)의 절대성에 대한 선언으로 출발한다. 즉 개인의 권리와 그 권리에 대한 윤리 외에 다른 어떤 정의의 원칙도 부정하고 있으며 개인의 권리를 향상시키려는 궁극적 목표를 향한 어떤 과정에서도 권리의 침해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다.<sup>20)</sup>

마이클 샌델은 공공적 미덕을 함양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이를 통해 사회적 후생

15) 아리스토텔레스는 권력이라는 재화 중 하나를 교환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리고 권력을 통해 재(財)를 분배한다는 측면에서도 정치를 상호성에 근거한 행위의 일종으로 파악하고 있다(石野敬太/川本 愛/齋藤拓也/金山 準/稻村一隆,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철학에における正義と相互性: 書評会ノート”, 「教養諸学研究」第143号(早稲田大学政治経済学部教養諸学研究会, 2017), 132面).

16) 한편, 아리스토텔레스는 재화의 분배정책은 무제한의 재분배가 아니라 빈곤자의 자립을 돕고, 부자에게 경제적 손실과 교환으로 명예를 분배하는 것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石野敬太/川本 愛/齋藤拓也/金山 準/稻村一隆, 前掲論文, 136面).

17) 이성을 갖지 못한 존재자가 단지 수단으로서 상대적인 가치밖에 갖지 못하고 '물건(Sache)'이라고 불릴 수 있는데 반해, 이성 존재자는 단순히 상대적이지 않은 가치를 가지며 '인격(Person)'이라고 불릴 수 있다(Grundlegungs zur Metaphysik der Sitten, AA. Bd. IV, S. 428).

18) 롤스는 공리주의가 만든 사회와 다른 종류의 사회를 이룩하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리주의가 만든, 공리주의로 정당화되던 사회를 공리주의와는 다른 좀 더 자유주의의 원칙에 충실한 철학으로 정당화하려 하였다. 롤스 철학의 목표는 1960년대에 케네디(John F. Kennedy)와 존슨(Lindon B. Johnson) 행정부를 거쳐 미국에서 발달한 사회보장제도 등의 재분배의 원리는 공리주의가 아닌 고전적 자유주의를 통해 설명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최정운, “미국의 자유주의: 롤스(Rawls)와 노직(Nozick)의 논쟁”, 「미국학」 제27집(1997), 191면).

19) 류상영, 전개논단(한국 사회의 공정과 정의: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20) 최정운, 전개논문(미국의 자유주의: 롤스(Rawls)와 노직(Nozick)의 논쟁), 195-196면.

과 개인적 자유의 조화도 추구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 Ⅲ. 개별 사례를 통한 다문화사회에서의 공정과 정의에 시사점 고찰

다문화사회에서 공정과 정의는 단순한 추상적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타자 다시 말해 사회적 약자(minority)인 외국인과 결혼이주여성 등의 다문화 사람들을 보호하는 구체적 개념이다. 전체화의 힘에 항거하면서, 타자와 함께 있는 공공영역을 여는 것은 그것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것에 다가서는 한 그 자체가 공정이나 정의를 향한 실천 일 것이다.

이하에서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몇 가지 사례를 간략히 고찰하며 다문화사회에 있어서 구체적 공정과 정의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 1. 난민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필요성 - 에일란 쿠르디·아르틴의 사망이 주는 교훈

##### (1) 에일란 쿠르디의 사망이 연 국경개방

2015년 9월 2일에 전세계인의 가슴을 아프게 한 사건이 있었다. 그리스를 향해 있는 터키쪽 해안가 모래에 파묻힌 채 숨져 있는 3세 아이의 모습이었다. 시리아 출신의 에일란 쿠르디였다. 쿠르디는 내전을 피해 유럽으로 가려다 지중해에서 배가 전복돼 엄마와 두 살 터울 형과 함께 익사했다.<sup>21)</sup> 이 비보가 발단이 되어 IS(이슬람국) 이후의 세계가 크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 종전 난민 수용에 소극적이던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아일랜드 군의 부고 직후인 4일 수천 명 규모의 난민 수용 사실을 발표했다. 5일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국경개방을 선언했고 독일은 오스트리아와의 국경개방, 헝가리에서 발이 묶였던 난민 8,000명의 1진이 뮌헨 중앙역에 도착하여, 시민들의 박수로 맞이했다는 보도 등이 나왔다.<sup>22)</sup>

##### (2) 아직 끝나지 않은 비극

생활고와 박해를 피해 가족과 도버 해협을 건너던 두 살배기 아르틴 이라네저드의 여정은 8개월 만에 끝났다. 다만 아르틴이 마지막으로 닿은 곳은 꿈꾸던 영국이 아닌 노르웨이의 차가운 바닷가였다.

2021년 6월 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이날 노르웨이 경찰은 “올해 초 노르웨이 해안에 떠밀려 온 시신의 신원이 지난해 10월 말 실종된 아르틴 이라네저드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sup>23)</sup> 앞서 2021년 1월 1일 노르웨이 남서부 카르모이 인근 해안에선 구멍조끼를 입은 채 숨진 어린아이가 발견됐다. 당시 노르웨이

21) 손병호, “‘넘쳐나던 동정심, 1년 만에 사라졌다’... 에일란 쿠르디 사망 1주년”, 국민일보, 2016. 9. 2.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14141>>.

22) 伊東 乾, “ドイツに国境を開けさせた幼いシリア難民の死知性と教養、人間性が問われる問題に日本人も直面している”, JBpress, 2015. 9. 9. <<https://jbpress.ismedia.jp/articles/-/44739>>.

23) Kevin Rawlinson, Body found in Norway of 15-month-old boy who died crossing Channel, Guardian, 7 Jun 2021. <<https://www.theguardian.com/uk-news/2021/jun/07/body-found-in-norway-of-15-month-old-boy-who-died-crossing-channel>>.

경찰은 인근에서 실종 신고가 없었고, 입고 있던 옷 또한 노르웨이 브랜드가 아니라 는 점에서 외국인일 수 있다고 판단해 DNA 검사를 진행했다. 이후 약 5개월이 걸려 노르웨이 오슬로대학 법의학 연구진은 노르웨이에 사는 쿠르드계 중 아르틴의 친척을 찾아냈고, 신원 확인의 실마리가 풀렸다. 가디언에 따르면 아르틴의 가족은 지난해 10월 27일 프랑스 북서부 뒥케르크 인근 룬 플라주에서 19명의 난민과 함께 작은 어선을 타고 영국으로 넘어가려 했다. 그러나 강풍에 배가 뒤집히며 변을 당했다. 당시 아르틴의 35살 부모, 9살 누나, 6살 형은 모두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지만, 아르틴은 발견되지 않아 실종 처리됐다.

아르틴의 가족은 원래 이란 서부 사르다슈트에 살던 쿠르드족이었다. 그러나 아르틴의 아버지 라술 이라네저드가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일자리를 잃은 뒤 가족들은 생활고에 시달렸다. 쿠르드족이라는 이유로 박해도 받았다. 이에 아이의 아버지는 터키, 이탈리아, 프랑스를 거쳐 형이 머물고 있는 영국으로 떠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들의 영국행은 번번이 좌절됐다. 아르틴의 가족은 기차를 타고 영국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두 차례 입국을 거부당했다.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 전 재산인 2만4000유로(약 3250만원)를 브로커에게 건네고 보트에 올랐다가 비극을 맞은 것이다.<sup>24)</sup>

유럽연합(EU)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EU 회원국으로 불법 입국한 난민의 수는 약 11만4300명이다. 입국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해 바다 위에서 숨진 사람만 1754명에 달한다.<sup>25)</sup>

### (3)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의 3가지 제언

난민은 전쟁, 국경분쟁, 자연재해, 경제사정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다. 이와 같이 정치·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최후의 방법으로 국외로의 이전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대하여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기본적으로 난민의 문제는 인권옹호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수많은 난민이 무차별적으로 유입되는 경우에는 국가의 안보문제와 사회혼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다문화사회에 공존을 위한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유엔에서는 3가지 제언이 나와 있다. i) 평화로워진 모국으로 귀국하는 것,<sup>26)</sup> ii) 일시적으로 피난한 주변국에서의 정착,<sup>27)</sup> iii) 난민을 발생시키지 않는 국제 질서 구축이 그것이다. i)과 iii)은 사회

24) 김홍범, “해변 떠밀려온 작은 시신..두살배기 난민, 아르틴의 비극”, The JoongAng, 2021. 6. 8.

25)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 IOM)는 한 보고서에서 2018년 적어도 4천 592명의 난민이나 이주인이 피난처를 찾아 이동하던 중 숨지거나 실종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규모는 6천명 이상이 죽거나 실종됐던 지난 2017년보다는 줄어든 것이라고 한다(손영화, “난민문제에 관한 서론적 고찰 - 난민 수용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중심으로 -”, 『한양법학』 제30권 제2집(한양법학회, 2019), 28면).

26) 난민이 '평화로워진 모국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폭력과 심각한 인권침해를 포함한 분쟁을 겪고 있는 국가에 대한 평화구축 지원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국제평화협력 추진을 위해 국제연합 평화유지 활동(Peace Keeping Operations: PKO)에 적극적으로 공헌했으며, 정부개발원조의 중점과제 중 하나로 평화구축을 지원해 왔다.

27) 난민이 '일시적으로 피난한 주변국에서의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요르단 같은 난민수용국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 UNHCR과 UNRWA에 대한 자금협력을 통해 난민 지원과 법적 보호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적, 정치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문제가 된다. ii)도 받아들이는 국가의 문제이지만, 이에 관해서는 아직 민간 차원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된다. 현재 당장 대응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다면 각 난민문제의 수요에 맞춰 지원하고 그들의 일시적 정착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쉽지 않고, 각각 안고 있는 문제를 판별하여 지원해 나가지 않으면 해결에는 이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이른바 대량난민의 경우가 그러한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sup>28)</sup>

## 2. 미국 흑인학생에 대한 분리정책을 통한 교훈

### (1) 노예해방선언 이후에도 계속된 남부 제주의 흑인 차별을 구체화한 정책.

노예해방선언이 나오면서 수정헌법 제13조에 따라 흑인노예제가 폐지되고 이어 1868년 시행된 수정헌법 제14조에서 흑인의 시민권도 인정받았으며, 1870년에는 수정헌법 제15조에서 흑인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이처럼 헌법상 흑인의 인격과 자유가 인정되고 법적으로도 백인과 평등이 규정됐다. 그에 따라 연방의회나 주의회에서 선거권을 행사해 흑인이 의원이 되는 일도 시작되었다.

남북전쟁 종전 후, 북부에서 파견된 연방군이 주둔하는 군정 하에서 남부의 '재건'이 진행되어 헌법 수정 조항을 비준하여 미합중국에 남부 각 주의 복귀도 실현되었다. 그러나 남부의 뿌리깊은 흑인 차별의식은 굳건히 남아 있었고, 남부 각 주는 헌법 규정을 교묘히 피해 납세액과 문맹을 이유로 흑인 투표권을 제한하게 되었으며, 더욱이 여러 합법적인 흑인 단속법을 주법에 의해 통과시켜 나갔다.

특히 1870년대 후반부터 남부 여러 주에서 흑인 분리정책이 추진됐다. 흑인의 시민권에 대해서, 1883년의 연방 대법원이 [미국 국민에게 주어진 여러가지 특권(공민권)은 원래 주의 시민에게 갖추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흑인의 시민권 부여를 규정한 수정 제14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1875년의 공민권법을 부정한 이래, 남부 여러 주에서는 교통기관, 학교, 레스토랑, 위락시설 등에서의 인종차별과 격리각주(州)법이나 시 조례, 기타 법률에 의해 법제화되어 갔다.

### (2) 분리하되 평등

#### 1) 프레시 판결

루이지애나 주는 1890년 제정한 주(州)법에 따라 백인과 흑인이 이용하는 열차 차량을 분리했다. 1890년 통과된 루이지애나 주법에 흑인의 피가 한 방울이라도 있으면 비백인으로 간주되어 열차 차량이 백인과 다른 것에 불만을 가진 호머 프레시(8분의

28) EXCOM 결론 No. 22에서는 대량유입은 특정국에 부당하게 무거운 부담을 줄 것이라는 인식에서 국제연대와 부담분담 시스템 속에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량유입의 경우 비호신청자는 최초의 피난을 요구한 국가에서 입국이 허용되어야 하며, 해당국이 영주를 기초로 그들을 입국시킬 수 없는 경우 적어도 일시적으로 입국을 허가받아야 한다고 하여 모든 경우에 기본적인 강제송환금지원칙(국경에서의 거부금지를 포함)은 엄정하게 준수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이탈주민을 경제적 (그리고 불법) 이주민으로 보는 시각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는 많은 북한 주민들은 박해를 피해 도망친 난민 혹은 현장난민(refugees sur place)으로 봐야 한다(손영화/박미숙, “외국에서의 인권침해와 강제송환금지원칙”, 「법과 정책연구」 제19집 제2호(한국법정책학회, 2019), 325-326면).

7이 유럽계, 8분의 1이 아프리카계, 1925년 62세로 사망)는 1892년 백인 전용칸에 탑승해 이동을 거부하다 체포됐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다투게 되었고, 1896년 5월 18일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이 내린 판결(프레시 대 퍼거슨 사건<sup>29)</sup>)은 흑인을 분리해도, 대우가 같으면 평등하다고 하는 것이었다. 이 '분리하되 평등(separate but equal)'이라면 차별이 아니라는 유명한 원리가 재판에서 확립됨으로써 인종차별에 법적 지주를 주고, 이를 배후에서 조장한 것이다.<sup>30)</sup>

이 '프레시 판결' 결과 남부지역에서는 극장·공중화장실·교도소·공립학교·공원·호텔 등 모든 공공시설에서 흑인용과 백인용 시설이 분리되게 됐다. 이러한 일상적인 흑인 차별에 대해 1950년대 흑인에 의한 버스 보이콧 운동 등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 2) 고든 브라운 판결

1954년 연방대법원의 앨 워런 수석판사는 공교육에서 시설을 백인용과 흑인용으로 분리하는 것은 불평등하다고 판단했고 인종분리정책은 위헌이라는 브라운 판결<sup>31)</sup>이 나왔다. 1954년 미합중국 대법원이 공립학교에서 백인과 흑인의 분리공부(別學制度)를 규정한 주(州)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당시 남부를 중심으로 20여 개 주가 남북전쟁 후의 인종 격리정책(segregation)에 뿌리를 둔 별학제도를 취하고 있었다. 1896년의 대법원 선례(프레시 대 퍼거슨 판결)는 백인과 흑인의 설비가 동등하면, 인종의 차이를 이유로 격리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 사건은 흑인임을 이유로 딸의 입학을 거부당한 캔자스주 토피카의 올리버 브라운이 교육위원회를 고소한 것으로, 판결은 선례의 「분리하되 평등」이라는 법리는 공립학교 교육 분야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분리된 교육은 본질적으로 불평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획기적인 사법적 판단이었지만, 여론 조사에서는 이 판결에는 남부 백인의 약 80%가 반대하는 상태였다.

하지만 1960년대 민권운동은 1963년 킹 목사로 지도된 25만 명의 워싱턴 대행진이 라는 대행진이 됐고, 흑인 차별 반대 움직임은 케네디 대통령을 움직였으며, 미시시피 주립대가 흑인 학생의 입학을 거부하자 연방군을 투입하는 등 개입했다. 존슨 대통령이 다음 해인 1964년 공민권법이 통과되면서 흑인에 대한 분리는 위법임이 확정됐다.

## 3) 사실상 존재하는 흑인학교와 백인학교

1954년 연방대법원에 의해 위헌결정(Brown v. Board of Education)이 내려졌지만 상황은 계속 방치되어 왔다.<sup>32)</sup> 연방대법원의 결정 이후 10년이 지난 1964년에도 남

29) Homer A. Plessy v. Ferguson, 163 U.S. 537; 16 S. Ct. 1138; 41 L. Ed. 256; 1896 U.S. LE XIS 3390.

30) 本田創造, 「アメリカ黒人の歴史 新版」, 岩波新書, 144面.

31) Brown v. Board of Education, 347 U.S. 483 (1954).

32) 1970년대 초에 인종차별 철폐가 심각하게 추진되기 시작했을 때, 그 시행은 종종 서툴렀다. 연방법원 판사는 인종간 균형을 이루기 위해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위해 시내를 가로질러 갈 것을 명령했으며 학부모들은 이 문제에 대해 발언권을 주지 않았다. 가족들은 반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우리는 비극적인 역설에 갇혀 있었습니다: 콜먼의 발견을 바탕으로, 점점 더 많은 연구들이 학교 통합이 인종과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아이들에게 좋다는 사회과학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AMY STU

부 흑인 아이들의 98% 이상이 여전히 분리된 학교를 다녔다.<sup>33)</sup> 백인 위주의 중산층이 사는 동네와 흑인이 주로 사는 빈곤한 동네가 명확히 나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공립학교들도 흑인 위주의 학교와 백인 위주의 학교로 나뉜다. 이런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서는 인위적으로 흑백 학생을 섞어 인종의 다양성을 추구한다. 예컨대 학생들의 신청에 따라 공립학교를 배정하되, 특정학교에 신청이 몰리는 경우에는 인종을 감안해 선발하는 것이다. 백인이 많은 학교는 흑인 학생에게, 흑인이 많은 학교에는 백인 학생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식이다. 지역에 따른 빈부 격차 때문에 사실상 흑백분리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학생 집단이 인종적으로 다양해야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sup>34)</sup>

4) 2007년 대법원 판결 - 피부색에 대해 '색맹'이어야 한다.

미 연방대법원은 2007년 6월 인위적으로 흑백 학생을 섞어 인종의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정책에 대하여 미국 헌법의 평등 보호 조항에 위반이라고 하여 5 대 4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보수적인 대법관은 다수의견인 위헌 쪽에, 진보적인 대법관은 소수의견인 합헌 쪽에 섰다. 위헌이라고 본 대법관들은 인종을 기초로 학생 선발을 좌우하는 것 자체가 인종차별이라는 입장이다.<sup>35)</sup> 헌법은 피부색에 대해 '색맹'이어야 하고, 어떤 형태로든 피부색을 기초로 대우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sup>36)</sup> 반면 진보적인 대법관들은 지역 간 빈부 격차 때문에 사실상 흑백분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잘못된 현상이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해 흑백 학생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섞는 것은 인종차별을 해소한다고 주장했다. 169쪽에 달하는 판결문을 통해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모두

ART WELLS/LAUREN FOX/DIANA CORDOVA, How Racially Diverse Schools and Classrooms Can Benefit All Students, FEBRUARY 9, 2016. <<https://tcf.org/content/report/how-racially-diverse-schools-and-classrooms-can-benefit-all-students/?session=1>>).

33) 1970년대를 통해 소수자문화를 존중하는 견해를 기반으로 사회적 불만 해소, 평등하고 공정한 처우를 실현하는 교육의 사상 또는 실천운동이 이루어졌다. 1980년대 이후에는 흑인뿐 아니라 그 대상에 여성이나 장애인 등을 포함하게 되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아 온 사회적 소수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교육 체계가 수행되었다(손영화/김영순, “미국 다문화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와 시사점 고찰”, 『교육문화연구』 제26권 제3호(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20), 612면).

34) 천경훈, “美 대법 ‘흑백 균형 맞추기 위한 학생 배정은 위헌’”, 중앙선데이, 2007. 7. 29. <<https://www.joongang.co.kr/article/2808424#home>>.

35) 존 G. 로버츠 주니어 대법원장과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인종차별을 막는 방법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밝혔다. 대법원장 로버츠는 “인종에 근거한 차별을 멈추는 방법은 인종에 근거한 차별을 멈추는 것이다(The way to stop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race is to stop discriminating on the basis of race)”라고 진술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인종에 근거한 차별을 멈추는 방법은 인종이라는 주제에 대해 솔직하고 솔직하게 말하고, 수세기에 걸친 인종 차별의 불행한 영향에 눈을 뜨고 헌법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onald Turner, “THE WAY TO STOP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RACE...”, 11 Stanford Journal of Civil Rights and Civil Liberties 45 (2015)).

36) 인종에 기반한 학생 배정 프로그램은 어떠한 강력한 국가 이익에도 기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계획은 위헌이다. 헌법에 대한 색맹적인 해석을 좋아하지 않는 반대자들은 학교 이사회가 인종에 기초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은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347 U.S. 483 (1954))의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옹호했던 접근법을 연상시키는 접근법이다. 이 접근법은 반세기 전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틀렸다(Parents Involved in Community Schools v. Seattle School District No. 1 ; Meredith and McDonald v. Jefferson County Board of Education et al., 551 U. S. 701 (2007)).

자신들이 1954년 브라운 판결의 진정한 계승자임을 자처했다. 어떤 의견이 진실에 가까운지는 세월이 흘러야 알 수 있을 것이다. '분리하되 평등'이라는 입장을 옹호한 플레시 판결이 60년을 못 가 '분리 자체가 불평등'이란 브라운 판결로 번복되었던 것처럼.<sup>37)</sup>

### (3) 다문화가정 아동 등의 학습권 보장

2021년 통계를 보면 이주배경 아동 수는 30만 여명에 이른다. 학령기 아동의 수도 18만 여 명이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습권은 아동의 기본 인권이자 미래 사회의 경쟁력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여성가족부에서는 2차 기본계획에서부터 '사회발전 동력으로서의 다문화가족 역량강화'를 기본 목표로 설정해 '다문화가족자녀의 성장과 발달' 사업을 진행했다. 이러한 사업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아동들의 학교생활은 여러 형태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다문화가정의 부모들이 국내 공교육 경험이 없다. 이런 부모들이 세계에서 가장 교육에 관심이 높은 우리 사회에서 교육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다.<sup>38)</sup>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 시행은 유엔의 아동권리헌장 등을 보더라도 너무 당연하다. 1959년 유엔에서 「아동권리선언」을 선포했는데, 「아동권리선언」은 1924년에 선포한 「아동에 관한 제네바선언」보다 5개 조항이 많은 1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이 성별, 국적, 종교, 출생배경 등 어떠한 유형의 차별에서도 벗어나 선언에서 언급한 모든 권리를 누릴 자격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 건강한 아동발달을 위해 모든 기회가 아동에게 균등하게 주어야 한다는 원칙, 이름과 국적을 취득할 권리 보장, 장애아동에 대해 특별한 보호를 할 것, 모든 형태의 차별로부터의 보호할 것 등을 강조한다.<sup>39)</sup>

교육권은 아동이 발달할 권리의 핵심을 이룬다. 뿐만 아니라 교육권의 보장은 빈곤의 감소, 성평등의 촉진, 아동노동의 철폐, 민주주의와 평화 및 관용을 증진시키는 기본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아동 교육권의 실현을 위하여 「아동권리협약」 제28조는 국가가 아동에게 교육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규정한다. 유엔아동협약의 비차별 원칙(제2조)에 따라 교육권은 평등한 기회에 기초하여 달성되어야 한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여아,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녀, 소수민족 아동, 난민 아동 등 소수 집단의 아동에게도 교육권이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한다.<sup>40)</sup> 아동의 학습권에 대한 보장은 특정 이주배경으로 인한 교육적 불평등을 해소함으로써 아동 개인의 미래 행복의 원천을 제공할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미래 생산성 나아가 우리나라의 미래

37) 천경훈, “美 대법 “흑백 균형 맞추기 위한 학생 배정은 위헌”“, 중앙선데이, 2007. 7. 29. <<https://www.joongang.co.kr/article/2808424#home>>.

38) 장훈성, “이주배경아동 학습권 보장, 평등한 정책 되길...”, 경북매일, 2021. 12. 19. <<https://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916871>>.

39) 1989년은 「아동권리선언」 30주년 해이자, 1979년 「세계 아동의 해」 10주년의 해이다. 이를 기념하여 11월 20일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아동권리협약」을 채택했고, 1990년 9월 2일부터 국제인권법으로 효력이 발생했다(국가인권위원회,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해」, 2018, 6면).

40) 국가인권위원회,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해」, 165-166면.

발전성도 담보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 3. 프랑스의 히잡법제가 주는 교훈

#### (1) 히잡금지 법률의 제정

프랑스에서는 2004년 제정된 공립학교에서 히잡(스카프) 금지 법률에 이어 2011년 4월 11일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것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됐다. 추진파는 “베일은 치안을 위협한다, 얼굴과 표정을 보며 사람과 소통하는 사회에 방해가 된다”고 옹호했고, 반대파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했다. 법률은 노상, 점포, 미술관, 공공수송기관,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베일이나 마스크 착용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유일한 예외는 개인 차 안과 예배장소이다. 또 몸만 덮는 차돌(망토)이나 두발부만 덮는 장식물인 스카프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은 남녀에 상관없이 적용되며 프랑스에 여행 중인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위반자는 최고 150유로(약 20만원)의 벌금 및/혹은 시민성교육 수강이 부과된다. 다른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는 베일이나 마스크 착용을 강요할 경우 최고 3만유로(약 3억8000만원) 및 1년의 금고형을 받는다. 프랑스 당국에 따르면 프랑스에는 500만명의 무슬림이 살고 있지만 베일에 얼굴을 가리고 있는 사람은 2000명 정도라고 한다.

#### (2) 법률을 둘러싼 찬부

이 법이 생겨난 계기는 2009년 6월에 당시 대통령 사르코지(Nicolas Sarkozy)가 종교상의 이유로 인한 베일은 프랑스로부터 환영받지 못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사르코지는 법률의 목적은 여성이 얼굴을 가리도록 강요당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고 프랑스의 정교분리를 옹호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여론조사에선 80%가 법에 의한 금지에 찬성했다.<sup>41)42)</sup>

이슬람 지식인들은 베일에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이슬람의 가르침이 아니며 코란에도 적혀 있지 않지만 무슬림 문화의 전통이라고 말했다. 미국에 사는 저명한 이슬람 학자 함자 유스프(Hamza Yusuf)는 다음과 말하고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얼굴 베일에 반대하지만, 여성이 베일을 쓰는 것은 이슬람 법률 전통에서 소수의견일지라도 합

41) 이 금지는 대중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미국 워싱턴 소재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 4월과 5월 실시한 국제 여론조사에서 프랑스 유권자 10명 중 8명 이상이 금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umoulin, Frederic, French parliament adopts ban on full-face veil. 14 September 2010. <<https://www.rfi.fr/en/france/20100914-french-senate-passes-full-face-ban>>. ; 小森 恵, “特集 なぜスカーフ論争なのか”, 「国際人権ひろば」No. 127(2016).

42) 프랑스에서 베일 착용 금지의 물결은 서유럽 국가로 확대된다. 2016년에는 스위스 티치노주에서도 ‘공공장소를 위협한다’며 공공장소에서의 부르카를 착용금지했다. 2017년에는 오스트리아에서도 공공장소에서의 니카부와 부르카를 포함한 안면을 가리는 베일의 착용이 금지되었다. 또한 덴마크는 2018년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의복을 착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을 시행하였다. 덴마크에서는 전신을 덮는 ‘부루카’ 등의 의상이 금지 대상이 되어, 히잡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위반 시 건당 1000 덴마크 크로네의 벌금을 물며, 반복 시 4번째 위반의 경우 벌금은 10배로 증액된다. 덴마크 정부는 ‘특정 종교를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듯이 법률에서는 특정 의상을 지칭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부르카 금지법’으로 불리고 있다(「ブルカ禁止、欧州で拡大 イスラム女性衣装 移民統合理由に」, 日本経済新聞, 2018. 8. 14. <<https://www.nikkei.com/article/DGKKZ034101720T10C18A8FFJ000/?unlock=1>>).

법적이다.<sup>43)</sup> 그것을 착용하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들이 남편의 명령이 아닌 신의 명령을 따르고 있다고 믿는다. ... 몇 년 전 프랑스 여행에서 길거리에 노골적으로 외설물(pornography)이 대형 광고로 진열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여성의 베일을 벗겨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것이 문명이고, 그 시선을 피하기 위해 베일을 쓰는 것이 범죄인 것은 이상하다.”<sup>44)</sup> 법률 시행 전인 2011년 4월 9일 파리에서 법률 반대 시위를 무신고로 벌인 혐의로 61명이 체포됐다. 시행 당일에는 반대하는 여성 여러 명이 베일을 쓰고 노트르담 사원 밖에서 시위를 벌였다. 같은 날 프랑스 정부는 부르카(머리부터 발까지 감싸는 옷)가 커뮤니티의 인간관계를 파괴한다며 법률 지지자들은 성 평등과 정교분리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찬성의 뜻을 표했다.

### (3) 법률 시행후의 법집행 모습

법률에 반대하는 힌두 아마스(Hind Ahmas)는 베일 착용으로 두 번 체포되었다. “금지된 이후 제 생활은 심하게 후퇴했습니다. 항상 전투에 나설 마음가짐으로 집을 나섭니다. 앞에서 걸어오는 사람에게 언제 총을 맞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이 법이 우리를 해방시킨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사회에서 배제하고 있어요. 법률이 생기기 전에는 무사히 카페에 들어갈 수 있는지, 동사무소에서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등 걱정할 필요는 없었습니다.”<sup>45)</sup>

2011년 9월 22일 이 법률에 근거하여 처음으로 벌금형을 부과하는 사건이 있었다. 힌두 아마스와 나자테 나이트 알리 두 여성이 니캅(niqab)을 착용하고, 법률 지지파인 모시 시장에게 아몬드 케이크를 배달했다(프랑스어로 벌금을 아멘데라고 한다. 아몬드와 아멘데의 어조로 실시했다). 두 사람은 각각 120유로(약 15만원), 80유로(약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었다.<sup>46)</sup>

### (4)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

2011년 12월 12일 힌두 아마스는 그해 4월 11일 니캅을 착용하고 파리에서 항의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15일간 시민성교육 강좌를 들라는 별도의 법원의 명령을 받았다. 그녀는 교육을 받을 생각이 없으며 니캅을 벗을 생각도 없다고 밝혔으며 법은 위헌이며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 11월 그녀는 영국 변호인단과 함께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금지법이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 유럽인권

43) 히잡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으로 이슬람교의 기본 근원인 코란(신문)과 하디스(예언적 전통)가 사용되었다(Rookhsana Aziz, “Hijab - The Islamic Dress Code: Its historical development, evidence from sacred sources and views of selected muslim scholars”, Master of Arts in University of South Africa, 2010. p. 20).

44) Hamza Yusuf, Pourquoi No Burqa?. <<https://sandala.org/blogs/uncategorized/pourquoi-no-burqa>>.

45) 小森 恵, 前掲資料(“特集 なぜスカーフ論争なのか”).

46) “유럽법 위반이다. 우리에게 문제는 벌금의 액수가 아니라 원칙이다.” 힌드 아흐마스는 법원 밖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들은 자유롭게 종교적 신념을 표현하였기 때문에 신고를 받은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Pauline Mevel, French court hands down first “burqa ban” fines, REUTERS, September 22, 2011. <<https://www.reuters.com/article/oukwd-uk-france-burqa-idAFTRE78L2QK20110922>>).

조약에 위배된다며 제소했다.

2014년 7월 유럽인권재판소는 프랑스 정부를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판사는 금지법은 종교적 의미가 없으며 얼굴을 가리는 것을 문제 삼았다고 밝혔다. 그는 사교상 얼굴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프랑스 정부의 주장을 지지했다.<sup>47)</sup>

이와 같은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에 대하여 국제사면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유럽인권재판소가 공공장소에서 전면 베일(full-face veils)을 쓰는 것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린 것은 심각하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표현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대한 심오한 후퇴를 나타내며, 여성들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표현할 자유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sup>48)</sup>

#### (5) 유엔 인권위원회의 결정

유엔 인권위원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는 프랑스가 전신 이슬람 베일인 니카프를 착용한 것에 대해 그들을 차별함으로써 두 여성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유엔 인권위는 지난 2016년 프랑스 여성 2명이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기 위한 옷가지를 착용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뒤 2건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프랑스는 2010년 '누구도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기 위한 옷을 입을 수 없다'고 명시한 법을 채택했다. 위원회는 프랑스법에 의해 공공장소에서 니카프 착용에 대한 일반적인 형사금지가 헌법소원인의 종교적 신념을 드러낼 권리를 불균형적으로 해쳤으며, 프랑스가 왜 니카프 착용을 금지하는 것이 필요한지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특히 안보적 관점이나 사회에서 "함께 살자(living together)"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얼굴 가리개 금지가 필요하고 비례하다는 프랑스의 주장에 위원회는 설득되지 않았다. 위원회는 회원국들이 신원 확인을 위해 특정 상황에서 개인의 얼굴을 보여주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니카프에 대한 일반적인 금지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너무 광범위하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또한 이 금지가 완전히 베일에 가려진 여성들을 보호하기 보다는 그들을 집에 가두어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고 그들을 소외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sup>49)</sup>

#### (6) 외국인 정책에 대한 시사점

47)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 제8조(사생활존중권리), 제9조(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존중할 권리)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다수결로 판결했다. 그리고 제8조와 제9조를 합친 제14조(차별금지)를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유념한다)를 만장일치로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하였다(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French ban on the wearing in public of clothing designed to conceal one's face does not breach the Convention, 2014. 7. 1. <file:///C:/Users/inha/Downloads/003-4809142-5861661%20(1).pdf>).

48) Amnesty International, European Court ruling on full-face veils punishes women for expressing their beliefs, July 1, 2014. <<https://www.amnesty.org/en/latest/news/2014/07/european-court-ruling-full-face-veils-punishes-women-expressing-their-religion/>>.

49)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rance: Banning the niqab violated two Muslim women's freedom of religion - UN experts, 23 October 2018. <<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3750&LangID=E>>.

프랑스의 이른바 히잡금지법 또는 부르카금지법은 공공안전 또는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미명 하에서 외국인 등에 대한 정책을 펴는 경우 그 한계를 지어주는 시사점을 준다. 국가의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일정하게 개인의 기본권을 법률에 의하여 침해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이른바 인간의 본질적인 사상, 양심, 종교 등의 자유에 대해서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침해는 안된다고 하는 것이다.

#### 4. 영국의 현대노예법이 주는 교훈

##### (1) 현대 노예 세계 상황

「노예」라고 하면 역사 교과서에서 학습한 과거의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가 많지만, 현대의 노예(이하 「현대 노예」라고 한다)는 역사상 유례없는 수에 달한다. 16세기부터 19세기에 걸쳐 노예로 분류된 수가 약 1,200만 명인 데 비해<sup>50)</sup> 현대 노예의 수는 보수적으로 계산하여 그 3배가 넘는 약 4,03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sup>51)</sup> 세계 약 200명 중 1명이 현대 노예라는 계산이 된다. 유럽 여러 나라에 의한 식민지 시대에 볼 수 있던 직접적인 신체적 구속이 수반되지 않는 복잡한 형태로 변모하면서 현대에 있어서도 많은 노예가 존재하고 있다. 현대 노예 중에서도 약 3분의 2라는 최대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강제 노역의 피해자이다.

근년, 유럽 및 영연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인권에 관한 법률(hard law)을 책정하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sup>52)</sup> 사회 과제의 실태로서는 아시아에 있어서의 피해자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상황이다(다음은 아프리카이다) 강제 노동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연간 위법 이익의 액수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최대이다.

개발도상국·신흥국에서 문제가 큰 것은 국내법 집행체제의 불충분한 점과 부패의 만연뿐 아니라 빈곤율의 높음도 원인인데, 이러한 문제가 코로나 위기에 의해 한층 더 악화되고 있다.<sup>53)</sup> 무엇보다 개발도상국·신흥국에서의 현대노예의 문제는 글로벌 서

50) Thomas Lewis, Atlantic slave trade : transatlantic slave trade slavery Alternate titles, <https://www.britannica.com/topic/transatlantic-slave-trade>.

51)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Day for the Abolition of Slavery, 2 December. <https://www.un.org/en/observances/slavery-abolition-day>.;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 Walk Free Foundation, Methodology Global Estimates of Modern Slavery: Forced Labour and Forced Marriage, 2017, p. 13.

52) 渡邊純子, “ビジネスと人権 - コーポレート・デューデリジェンスおよびユーザー・アカウントビリティに関するEUの新指令”, 『BUSINESS LAWYERS』, 2021. 2. 8. <https://www.businesslawyer.s.jp/articles/907>.

53) 국제노동기구(ILO)는 2019년 상황과 비교하여 2020년 1/4분기 동안 전 세계적으로 4.8%의 노동시간이 손실되었으며(약 1억3500만 개의 정규직 일자리에 해당), 2/4분기에는 10.7%(전업 일자리 3억500만 개)로 증가했다고 추정한다(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Monitor: COVID-19 and the world of work. Fourth edition Updated estimates and analysis, 27 May 2020, pp. 3-4). 이 전염병(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의 폐해는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았다. 위기로 인한 고용과 소득의 대규모 손실은 전세계 빈곤과 불평등을 악화시켜 특히 가장 가난한 국가와 가장 가난한 이웃에서 적절한 사회적 보호 대상이 없는 사람들에게 불균형적으로 피해를 줄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실업자의 20%만이 실업급여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유행 기간 동안 최소 1억 5,200만 명의 실업자가 소득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것들은 특히 비공식적이거나 심지어 불법적인 경제에서 취약적인 고용에 대한 강요에 사람들을 더 취약하게 만든다(Human Rights Council, Impact of the coronavirus disease pandemic on contemporary forms of slavery and slavery-like practic

플라이 체인(supply-chain)에 의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의 많은 소비자에게도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다(휴대폰, 의류, 해산물, 커피나 화장품 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많은 상품에 리스크가 숨어 있다). 현대 노예는 오늘날에는 진정으로 글로벌한 문제이다. 또한, 강제 노역 피해자의 약 90%가 민간 경제에서 생겨나고 있다.<sup>54)</sup> 현대 노예의 퇴치는 SDGs의 타깃 8.7에서도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ESG 투자의 맥락에서 기관투자자의 인권 중시 움직임도 고려하면 현대 노예를 둘러싼 문제는 단순히 유럽의 규제 리스크가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이 일반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경영 리스크라고 할 것이다. 이른바 인권경영에 적절히 대응을 하지 못하면 앞으로는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없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 (2) '현대 노예'의 유형

영국의 현대 노예법이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현대 노예(modern slavery)'에는 ① 노예 및 예속(slavery and servitude)·강제노동(forced labour)<sup>55)</sup>과 ②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에 관한 범죄유형이 포함된다. 타인을 노예 또는 예속 상태로 두는 행위, 강제 노동을 요구하는 행위 및 인신매매<sup>56)</sup>는 현대 노예법상 범죄가 된다. 현대의 노예제도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잔인한 방법인데, 이것이 개인에게 미치는 끔찍한 영향에 대해서는 거의 고려하지 않고 상품과 서비스를 더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기 때문이다.<sup>57)</sup>

현대 노예를 포함해 인권침해의 유무는 외관으로부터 일견 이해하기 어렵고, 인권 실사(Due Diligence)의 과정에서 공급사나 그 노동자에게 정면에서 현대 노예의 실태 유무를 물어도 숨겨져 버리는 것이 왕왕 있다. 노동자와의 궁리를 거듭한 직접적인 대화나, 외부의 이해관계자와의 제휴 등을 통해서 발견을 향해서 착실하게 임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es, 4 Aug 2020, p. 5).

54)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2012 Global estimate of forced labour Executive summary, 2012, p. 1. 2012년 ILO는 약 2100만 명의 남성, 여성, 어린이들이 강제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새로운 추정치를 발표했다. 대부분의 90퍼센트는 민간 경제에서 착취당하고 있다(International Labour Office, Profits and poverty: The economics of forced labour, 2014, p. 2).

55) 대표적으로는 농업·건설업·식품 가공업·운송업·제조업·서비스업 등에 있어서 장시간·저임금 또는 무급 노동이 강제 노동의 형태로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사례로는 태국 어선들에서 성행하고 있는 수산업에서의 집단적인 강제 노동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한편, 고양이 사료(cat food)의 원재료와 공급망 상에서 연결된 사실 불개시에 대하여 소비자법 위반을 이유로 네슬레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집단소송으로 제소된 바 있다. 중국 위구르 지구의 이슬람계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 수용 시설에서의 노동 공급망(supply chain)상의 연관을 오스트레일리아의 핑크탱크로부터 지적받은 패션 브랜드 H&M은 중국의 공급사와 거래 정지를 공표한 바 있다.

56) 타인이 착취되는 것을 예견하면서, 해당자의 이동 준비나 중개를 실시하는 것은 인신매매이다. 다시 말해, 피해자가 보다 좋은 생활이나 일을 얻을 수 있다고 약속에 의해 속고 있는 경우 또는 성인으로부터 유혹된 아동일 경우에는 피해자 자신이 이동에 동의하고 있는 경우에도 범죄가 된다. 인신매매의 60%가 최소한 1회는 국경을 초월하여 행해진다고 하며, 항공업계 등도 관여 리스크가 크다고 한다.

57) GOV.UK Home Office, Statutory guidance Transparency in supply chains: a practical guide Updated 13 December 2021.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transparency-in-supply-chains-a-practical-guide/transparency-in-supply-chains-a-practical-guide>>

현대 노예를 발견하는 힌트가 될 수 있는 확인사항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들 수 있다.<sup>58)</sup>

- 여권을 타인에게 보관하고 있다(인신매매를 하는 범죄 집단에서 거론되는 예가 많기 때문에).
- 가족이나 친구 등과의 접점을 유지할 수 없다.
- 근무지에 있어서의 현지어를 할 수 없다.
- 재류 자격에 관한 질문에 대답하려고 하지 않는다.
-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 자신의 은행 계좌에 접근할 수 없다.

### (3) 2020년 영국 현대 노예법의 개정 방침

2020년 9월 22일에 영국 내무부에서 공표된 '공급망(supply-chain)의 투명성에 관한 의견 청취에 대한 정부 회답'(이하 '본 정부 응답'이라 칭함)<sup>59)</sup>에는 현행 현대 노예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다(이하 '본 개정'이라 한다).

이는 2019년 7월부터 9월에 걸쳐 실시된 의견청취 결과를 고려하여 결정된 방침이나, 제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코로나 위기가 겹치면서 기이하게도 현대 노예를 이용한 범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이 시점에서 공표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정부 회답에서는 "세계에 '숨은 리스크'가 현대 노예라는 형태로 영국에 더욱 유입되고 있다"고 표현되고 있다. 본 개정을 통해 기업 등의 투명성 높은 대응을 보다 강한 강제력을 동반하며 촉진하는 것이 의도되고 있다.

#### 1) 보고 내용의 의무화

현행 현대 노예법에서는 현대노예 및 인신매매에 관한 성명(이하 '보고서'라 한다)의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러한 개시가 권장되고 있지만, 개시 항목의 판단은 각 보고자에게 맡겨지고 있다.<sup>60)</sup> 이 점에 대한 불충분성을 감안하여 본 개정에 의해 아래 6개 항목의 개시가 의무화되게 된다.<sup>61)</sup>

- (개시를 하는 기업 등) 조직의 구조·사업 내용·공급망

58) 반노예제 인터네셔널에 따르면 현대 노예제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Antislavery, Frequently asked questions What is modern slavery?. <<https://www.antislavery.org/slavery-today/frequently-asked-questions/>>).

- 정신적 또는 육체적 위협을 통해 강제 노동
- 일반적으로 정신적 또는 신체적 학대 또는 위협적인 학대를 통해 "사용자"에 의해 소유 또는 통제됨
- 비인간화, 상품으로 취급되거나 "재산"으로 매매됨
- 신체적으로 제약을 받거나 이동의 자유에 제한을 두는 것.

59) GOV.UK Home Office, Transparency in supply chains consultation Government response, 22 September 2020.

60) 영국 현대 노예법 제54조 제5항

61) 전반적으로, 응답자들은 의무신고 영역의 도입을 지지했고, 현대 노예법 제54조 제5항에서 현재 제안되었지만 의무 사항이 아닌 영역에 대부분 동의했다(GOV.UK Home Office, op. cit., (Transparency in supply chains consultation Government response), p. 6).

- 현대 노예 및 인신매매에 관한 방침
- 자사 사업 및 공급망 현대노예 및 인신매매에 관한 인권실사 과정
- 자사 사업 및 공급망에서 현대노예, 인신매매에 관한 위험의 소재 및 해당 위험을 평가·관리하기 위해 실시한 조치의 내용
  - 자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성과 측정 지표에 비추어 자사의 사업 및 공급망 (supply-chain)에서 현대 노예나 인신매매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의 유효성
- 현대 노예나 인신매매에 관한 사원 연수의 실시 상황

## 2) 국가 포털의 도입

현행 현대 노예법에서는 웹사이트를 보유한 기업은 해당 웹사이트 상에서 보고서를 공표해야 하지만<sup>62)</sup> 본 개정에 따라 정부가 관리하는 포털(국가포털)에 제출할 것이 요구된다.<sup>63)</sup> 이는 보고 시기의 통일화와 더불어 시민사회가 유사기업의 개시 내용과의 비교를 포함하여 각 기업의 인권 대처 상황을 추적·감시하기 쉽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되는 것이다. 현대 노예법은 기업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장소에서의 시민사회의 감시가 중요하다는 발상에 근거하여 해당 발상에 의해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 3) 보고 시기의 통일화

현행 현대 노예법에서는 사업연도별 보고서의 공표가 요구되고 있지만 기한에 대한 통일된 규정은 없다. 본 개정에 의해 (많은 영국 기업이 채용하고 있는 사업연도에 맞추어) 보고 대상 기간이 4월 1일~3월 31일로 통일되어 해당 기간 종료로부터 반년을 경과한 9월 30일이 매년 보고 기한으로 정해지게 된다.

## 4) 이사회 등에 의한 승인·이사의 서명일과 보고 대상이 되는 기업명의 명기

현행 현대 노예법은 보고의 주체가 법인인 경우, 보고서와 관련하여 이사회 또는 그 유사회체체에 의한 승인과 이사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의 서명을 요구하고 있다.<sup>64)</sup> 하지만 이러한 절차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가 보고서에서는 불명확한 경우가 많은 현 상황을 감안하여 본 개정에 따라 해당 승인일 및 서명일이 보고

62) 영국 현대 노예법 제54조 제7항

63) 2015년 현대 노예법 제54조 적용대상인 단체들에게 정부가 운영하는 보고 서비스에 대한 보고서(statement)를 발표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다. 응답자의 82%는 이 서비스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GOV.UK Home Office, op. cit., (Transparency in supply chains consultation Government response), p. 14).

64) 현대 노예법 제54조 제6항 노예제도 및 인신매매 성명서

(a) 조직이 유한책임조합 이외의 법인일 경우, 이사회(또는 이와 동등한 관리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사(또는 이와 동등한 기관)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b) 조직이 유한책임조합인 경우, 회원들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회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c) 기관이 1907년 유한조합법에 따라 등록된 유한조합인 경우 일반조합원이 서명해야 한다.

(d) 기관이 다른 종류의 조합인 경우 조합원이 서명해야 한다.

서에 명기된다.

또, 현행 현대 노예법에서는 동일 그룹 내의 1개 이상의 기업이 동법에 의한 보고 의무를 지는 경우, 복수 기업에 의한 공동성명이라고 하는 형식에서의 보고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현대 노예법상 해당 공동성명을 행하는 기업명의 명기가 요구되지 않으며, 그룹 내 어느 기업이 대상이 되는지를 특정하기가 종종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본 개정에서는 동일 그룹 내 대상이 되는 기업명의 명기가 요구되게 된다.

#### 5) 민사벌

현행 현대 노예법에 관한 가이드라인 상으로는 동법에서 의무화 되는 보고서의 공표를 기업이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 영국 고등법원이 강제이행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sup>65)</sup> 보고서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 즉시 민사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는 되어 있지 않다. 위에서 서술한 공개항목의 불충분성 외에 이와 같이 현행법에는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규제가 되고 있다는 실태가 본 개정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의 발단이 되고 있다.

단, 의견청취에 의해 가장 의견이 나뉘었던 것이 상한의 설정 여부와 벌칙 도입의 여부에 대한 것으로 본 정부 회답에서는 이 점은 계속 검토한다는 결론을 내고 있다. 하지만, 2021년 1월 중순에 영국 외무장관으로부터 공표된 새로운 조치로서 현대 노예법에 근거한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벌칙 도입이 명확히 언급되어 있다.<sup>66)</sup>

#### 6) 공공단체에 대한 의무 부과

현행 현대 노예법은 법인을 포함한 상업조직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sup>67)</sup> 본 개정으로 연간 3,600만 파운드 이상의 예산을 가진 공공단체도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 (4) 외국인 정책에 대한 시사점

영국의 현대 노예법에 따라 보고의무를 지는 기업은 영국 국내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고, 상품의 공급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간 3,600만 파운드 이상의 매출액을 가진 기업으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 기업이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면 현대 노예법에 따라 직접 보고의무를 지게된다. 현대 노예법에 따라 직접적인 보고의무를 지지 않는 우리나라 기업이라도 해당 의무를 지는 기업과 공급망 상에서 연계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공급업체가 해당 기업이 실시하는 인권실사(Due Diligence) 과정에 포함되어 자사 및 해당 공급망에서 노예노동이나 인신매매를 하지 않도록 요구받

65) 영국 현대 노예법 제54조 제11항. 정부가 제출한 실무지침에 따르면 해당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무제한 벌금 부과가 될 것이라고 한다

66) 도미니크 랫(Dominic Raab) 영국 외무장관은 연례 '현대판 노예제' 성명서를 발표하지 않는 기업들은 영국에서 잠재적인 재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랫 총리는 지난주 의회에서 "투명성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영국 정부의 의도를 확인했다(Sean Elson, Modern slavery transparency failings to lead to UK fines, Pinsent Masons, 20 Jan 2021. <<https://www.pinsentmasons.com/out-law/news/modern-slavery-transparency-failings-to-lead-to-uk-fines>>).

67) 영국 현대 노예법 제54조 제12항

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시 말해 공급망 상에서 연계되는 기업이 현대 노예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우리나라 기업도 인권실사(Due Diligence)를 실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영국의 현대 노예법을 살펴보는 경우,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 특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 큰 시사점을 준다. 위에서 살펴본 현대 노예를 발견하는 힌트가 될 수 있는 확인사항은 매우 의미가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여권을 회사측에서 보관한다든지, 외국인 노동자로 하여금 그 가족이나 친구 등과의 연락을 제한하거나 통제한다든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외국인 노동자가 자신의 은행 계좌에 자유로이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경우에는 이른바 정상적인 근로관계가 아닌 현대 노예관계가 아닌지 의심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른바 코리안드림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

#### IV. 결론

이상에서 다문화사회에 있어서의 공정과 정의라는 주제를 위하여 공정과 정의의 개념에 대하여 약간의 고찰을 하고, 이후 국제적인 사람의 이민과 이주를 중심으로 각국에서 발생한 몇 가지 사건과 법률을 살펴보았다.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는 일순 단순해 보이지만 시대적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또한 현대 공정과 정의의 개념을 살펴보면, 크게 문제되었던 프랑크푸르트학파를 중심으로 한 서양철학에서의 공정개념 및 배분적 정의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공정과 정의는 각자의 능력과 노력에 걸맞는 보수와 지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다문화사회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결혼이주여성 등 외국 이주민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내국인처럼 부여하는 것이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는 기반이라고 할 것이다.

4가지 사례는 우리에게 다문화사회에서 법과 사회정책을 실현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시사점을 잘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시사점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다문화사회를 건설해 감에 있어서 이정표를 제시해 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우선, 이민과 외국인에 대한 정책과 관련된 문제이다. 우리 사회는 이미 다문화사회의 진입 초기에 들어서 있다. 이민과 외국인정책을 펴는데 있어서 종래의 폐쇄적인 정책을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보다 널리 외국인의 이민과 이주를 받아들이는 정책을 펼 것인지에 대하여 선택하지 않으면 안된다. 인권을 존중하는 국제적 사상에서건 부족한 노동세대를 메우며 실질적인 우리 경제의 활력을 위해서건 보다 열린 이민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바람직한 다문화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마련에 있어서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의 흑백분리정책의 추이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바람직한 정책은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인권을 존중하고 타인의 시각에서 우리의 정책을 생각하며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경우에는 갈등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모범적인 다문화사회 한국을 건설하는 단초를 제

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경제적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계약과 노동현장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다. 종래 마련되어 있는 노동관계법 그대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대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코리아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칫 현대판 노예처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며 인권을 침해당하고 반한 감정을 갖는 외국인으로 남아서는 안될 것이다. 그들의 코리아드림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수출의 또 다른 첨병으로서의 우군을 얻게되는 한 방법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넷째, 바람직한 다문화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법과 정치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의 대처도 이루어져야 하지만 문화적 측면에서의 대처 또한 필요하다. 프랑스의 이른바 부르카금지법률을 둘러싼 논쟁과 다툼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듯이 외국인의 문화에 대하여 일의적으로 금지하거나 하는 행위는 불필요한 사회비용을 발생시키게 된다. 타인의 문화를 이해하고,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문화환경을 구축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한 다문화시대에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 더욱 선진한 국으로 갈 수 있는 또 다른 원동력을 제공해 줄 것으로 생각된다.

# 2022

#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학술대회

## 세션 1.

좌장 | 오영섭(인하대)

발표 1 \_ 강진숙(계명대)

블렌디드러닝을 통한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기회 확대 방안

발표 2 \_ 이한나(강원대)

이주노동자 주거지원 사례를 통해 본 지역재생

토론 1 \_ 황해영(인하대) / 토론 2 \_ 하종천(인하대)

## 1. 들어가며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12월 31일 현재 결혼이민자는 총 166,771명이다.<sup>68)</sup> 법무부는 체류외국인 중 국민의 배우자 체류자격을 가진 자를 ‘결혼이민자’로 분류하고 있으며 F-2-1 및 F-5-2(국민의 배우자), F-6(결혼이민)을 그 대상으로 한다.

2002년 이후 매년 28%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던 결혼이민자는 2014년 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한 결혼이민자 사증발급 심사강화 및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의무화조치 등으로 인하여 증가세가 낮아진 이후 최근 3년간 평균증가율은 1.9%에 그쳤다.<sup>69)</sup>

신규 유입자가 정체된 상황에서 중장기 체류자<sup>70)</sup>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한국어교육 기관을 이용하는 결혼이민자들의 학습 목표도 변화되고 있다. 초기 입국자들의 경우 한국 사회 적응이 목적인 결혼이민자들에게 한국어는 ‘생존’의 수단이 된다. 그러나 체류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는 자연스럽게 해소되고 다음 단계의 목표가 생겨나게 된다.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은 2006년 결혼이민자지원센터를 통해 시작되었으며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 동시에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결혼이민자 대상의 한국어교육과정이 개발되었으며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재가 발간됨으로써 교육의 체계를 마련하였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되었던 한국어 정규과정은 폐지되었으며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은 대부분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강현화(2011, 380)에서도 밝힌 바 있듯이 학습 목적을 기준으로 볼 때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만의 특수한 환경과 요구를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결혼이민자 중에서도 한국 체류 기간이 긴 중장기 체류 결혼이민자의 경우 체류 기간이 짧은 초기입국 결혼이민자들과는 차별되는 교육 내용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중장기 체류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학습이 제약을 받고 있다.

68)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참조.

69) 연도별 결혼이민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20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참조)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인원	152,374	155,457	159,206	166,025	168,594	168,611
전년대비 증감률	-	2.0%	2.4%	4.3%	1.5%	0.0%

70) 본 연구에서는 입국 5년 미만인 이민자를 ‘초기 입국자’로, 5년 이상인 이민자를 ‘중장기 체류자’로 분류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중장기 체류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을 기반으로 가족센터<sup>71)</sup>에서 운영하는 특수목적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을 재개발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 2.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현황

### 2.1 결혼이민자 거주 현황

1992년 한중수교 이후 본격적으로 국제결혼이 증가하였으며 그로부터 3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많은 수의 결혼이민자들은 귀화하여 한국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2021년 12월 31일 현재 148,118명의 결혼이민자들이 귀화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결혼이민자의 한국어교육을 논함에 있어 그 대상이 되는 이민자의 수에 혼인귀화자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표 1>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누계)<sup>72)</sup>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결혼이민자	152,374	155,457	159,206	166,025	168,594	168,611
혼인귀화자	114,901	121,339	129,028	135,056	141,773	148,118
합계	267,275	276,796	288,234	301,081	310,367	316,729

개인별로 차이는 있겠으나 혼인귀화자들은 상대적으로 국내 체류기간이 긴 중장기 체류자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중장기 체류자가 증가하면서 결혼이민자들이 요구하는 한국어교육의 내용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김선정·강현자(2019)에 의하면 취업 목적의 한국어 교육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가 2009년 7%에서 17%로 늘었으며 가족센터 학습자의 50% 이상이 5년 이상의 장기 체류자이다. 그리고 2020년 이후 초기 입국자의 한국어교육을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족센터의 경우 중장기 체류 결혼이민자의 비중이 더 높아질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이다.

### 2.2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기관 분석

#### 2.2.1 교육기관 개설 현황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은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대표적이다. 먼저 법무부는 국적, 영주 등 체류자격을 취득하려는 재한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인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교수하고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 360개소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가족서비스 제공기관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한국어교육을 실시해

71) 여성가족부는 2021년 10월 13일부터 가족서비스 제공기관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명칭을 '가족센터'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72)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1년 12월호 참조.

왔던 여성가족부는 2021년 10월 13일부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명칭을 ‘가족센터’로 변경하였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해 운영하던 곳으로 가족형태, 가족관계 특성 등을 고려한 가족교육, 상담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교육, 자녀 방문교육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현재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가족센터는 전국에 228개소가 개설되어 있다.

전국에 개설되어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과 가족센터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 지역별 설치 현황 (단위: 개소, %)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KIIP <sup>73)</sup>	기관 수	50	29	9	18	9	16	7	3	87	14	15	19	18	10	22	24	10	360
	비율	13.9	8.1	2.5	5.0	2.5	4.4	1.9	0.8	24.2	3.9	4.2	5.3	5.0	2.8	6.1	6.7	2.8	100
가족센터	기관 수	25	14	8	9	5	5	5	1	31	18	12	15	14	22	23	19	2	228
	비율	11.0	4.6	3.2	4.1	1.8	2.3	2.3	0.5	13.7	8.2	5.5	6.8	6.4	9.6	10.5	8.7	0.9	100

기관 숫자만으로 비교할 수는 없으나 비율로 보면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의 경우 광역시에, 가족센터의 경우 지방 도시에 상대적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강원, 전남, 경북 지역의 경우 가족센터의 수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보다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경우 모든 이민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므로 많은 수의 이민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대도시에서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각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은 기관의 특징에 따른 차이를 나타낸다.

### 2.2.2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의 한국어교육 운영 현황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가 우리말과 우리 문화를 빨리 익혀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지역사회에 쉽게 융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도입되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 및 ‘한국사회 이해’로 구성된 사회통합프로그램은 한국어의 경우 기초 단계인 0단계는 15시간이며 1~4단계는 각 100시간씩으로 모두 415시간의 교육을 제공하며 1~2단계는 한국어 초급, 3~4단계는 한국어 중급 수준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다. 2021년 8월부터 5단계인 ‘한국사회 이해’가 70시간에서 100시간으로 변경되면서 전체프로그램은 515시간<sup>74)</sup>으로 구성된다.

이은성(2020)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한국어교육 시간이 일반목적 한국어교육에 소요

73)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역을 분류하였다.

74) 각 단계별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되는 시간에 비해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대학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교육기관의 경우 학습자가 중급 수준에 도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800시간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경우 절반에 해당하는 415시간의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 이은성(2020)은 독일, 덴마크, 호주 등과 비교하며 한국의 교육 시간이 가장 적음을 지적하였다.<sup>75)</sup> 이미혜 외(2018)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사들이 '학습자의 능력 차이가 큰 학급 구성'을 문제로 꼽았음을 밝혔다. 또한 김현주(2016), 이은성(2020) 등은 학습자의 국적, 학습 목적, 체류 자격별로 차별화된 교육과정이 제시되지 못하는 획일적인 교육과정을 지적하였다.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에는 5만 명을 넘어섰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2020년에는 36,620명으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수의 이민자들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참여자 중 결혼이민자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참여자격을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을 소지한 합법 체류외국인 및 귀화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제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통합프로그램이 국적, 영주 등 체류자격을 취득하려는 초기 입국자를 대상으로 함으로 이미 귀화하여 국적을 취득하였거나 고급 수준의 한국어 학습을 희망하는 중장기 체류 결혼이민자를 수용하는 데 제한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2020년 이민자별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현황<sup>76)</sup>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총 참여자	30,515명	41,500명	50,639명	56,535명	36,620명
결혼이민자	16,563명 (54.3%)	18,763명 (45.3%)	17,645명 (34.8%)	18,373명 (32.5%)	13,828명 (37.8%)
일반이민자	13,952명 (45.7%)	22,737명 (54.8%)	32,994명 (65.2%)	38,162명 (67.5%)	22,792명 (62.2%)

### 2.2.3 가족센터에서의 한국어교육 운영 현황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가족센터의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은 크게 '한국어교육 서비스'와 '특수목적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다.

단계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과정	기초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기본	심화
총 교육시간	15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70시간	30시간

75) 이은성(2020, 10)에 의하면 이민자를 위한 각국의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언어 교육 시간이 독일은 600시간, 덴마크는 1,200시간, 호주는 510시간이다.

76)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참고.

‘한국어교육 서비스’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의 하나로 교통·경제 등 여건상 가족센터(교육장소) 방문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위해 방문교육지도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한국어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한국어교육 서비스’는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이들이 경험하는 문화 충돌 및 언어 장벽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1:1로 한국어 교육을 진행한다.

「202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별도지원사업 연간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4,054명이 이 교육을 이수하였다.<sup>77)</sup> 방문교육에서 사용되는 한국어 교재는 국립국어원에서 제작한 「즐거운 한국어」로 초급과 중급 모두 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방문교육의 대상자가 입국 후 5년 미만의 이민자이며, 수업은 80회로 제한되어 있어 대부분 초급 수준의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수목적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 또는 중도입국자녀가 한국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하고 한국사회 구성원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한국어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실용 한국어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여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 욕구를 지원한다. ‘특수목적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은 육아, 취업 등 실생활에 유용한 7개의 과정으로 구성되며 2020년 기준 전국 231개 기관에서 운영 중이다.<sup>78)</sup>

〈표 4〉 특수목적 한국어교육 과정

과정명	교육 목표
자녀 학습지도를 위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초등학교의 체제, 일과, 학사 일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li> <li>• 자녀의 생활 지도에 필요한 학교생활 및 학습 관련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li> <li>• 학교의 각종 안내문을 이해하고 서식 작성, 학부모 상담 등에 필요한 어휘 및 표현을 익혀 사용할 수 있다.</li> <li>• 한국 초등학교의 교과 특성을 이해하고, 자녀의 학습지도에 필요한 어휘 및 표현을 익혀 활용할 수 있다.</li> </ul>
지역문화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 행정 구역, 지역의 대표 음식, 지역 특산물, 지역 축제, 지역 관광 명소 등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다.</li> <li>• 거주 지역의 지역어 및 지역적 특색을 이해할 수 있다.</li> <li>• 거주 지역의 산업 시설 및 문화 시설 등에 대해 알 수 있다.</li> <li>• 거주 지역과 타 지역의 문화를 비교해 봄으로써 지역 간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문화와 지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li> </ul>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어 자모의 철자와 음가를 익혀 한국어 문장을 읽을 수 있다.</li> <li>• 한국어 개별 음소를 이해 가능한 수준으로 발음할 수 있다.</li> <li>• 기본적인 음운 현상을 적용하여 문장을 읽을 수 있다.</li> <li>•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한국어 1」에 제시된 기본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li> </ul>
취업을 위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사회에서 취업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li> <li>• 한국의 취업 지원 시스템에 대해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li> <li>• 취업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서식과 면접에 필요한 어휘 및 표현을 익혀 활용할 수 있다.</li> </ul>

77) 「202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별도지원사업 연간결과보고서」에 나타난 ‘최근 3년간 한국어교육 서비스 실적’은 다음과 같다.

2018년		2019년		2020년	
대상자(실인원)	대상자(연인원)	대상자(실인원)	대상자(연인원)	대상자(실인원)	대상자(연인원)
4,585명	192,608명	4,964명	207,297명	4,054명	141,053명

78) 「202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별도지원사업 연간결과보고서」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 후에 접하게 될 기본 서식 및 한국의 직장 문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li> </ul>
TOPIK 읽기 교육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픽 읽기 시험의 문제 유형에 대해서 알 수 있다.</li> <li>• 문제 유형별로 문제 풀이 방법을 파악하여 문제 풀이에 적용할 수 있다.</li> <li>•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제한된 시간 안에 풀 수 있다.</li> <li>• 읽기에 필요한 문법과 어휘를 익힐 수 있다.</li> </ul>
TOPIK 듣기 교육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유형별 학습을 통해 출제되는 유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li> <li>• 기출 문제를 통해 문제에 대한 이해력과 적응력을 기를 수 있다.</li> <li>• 토픽 듣기에서 자주 출현하는 핵심 어휘와 표현을 익힐 수 있다.</li> <li>•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제한된 시간 안에 풀 수 있다.</li> </ul>
TOPIK 쓰기 교육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에 필요한 한국어 기본 문장, 문법, 원고지 쓰는 법을 배워 격식에 맞게 글을 쓸 수 있다.</li> <li>• 문제에 제시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제에 맞는 글을 쓸 수 있다.</li> <li>• 문제에 제시된 주제와 과제를 맞게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li> <li>• 쓰기 영역의 각 유형에 따른 전략을 익혀 실제 시험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li> </ul>

‘특수목적 한국어교육’에는 별도의 교재 없이 ‘강사용 표준 매뉴얼’이 제공된다. 강사용 표준 매뉴얼에는 강좌별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며 차시별 활동 자료 및 평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가 실제로 활용 가능한 교안을 제공하고 있다. 2020년 한 해 동안 533,011명의 이민자들이 ‘특수목적 한국어 교육’에 참가하였는데<sup>79)</sup> 결혼이민자가 참여할 수 있는 한국어 프로그램 중 가장 많은 수의 이민자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2020년 각 프로그램별 결혼이민자 참여 현황

프로그램명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 서비스	특수목적 한국어교육
참여자	13,828명	4,054명	533,011명

### 3. 중장기 체류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점

#### 3.1 중장기 체류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분석

2021년 12월 31일 현재 S군<sup>80)</sup>에 거주 중인 결혼이민자는 321명이며 이들 중 300명이 가족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이민자 대부분이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센터 등록률이 높은 이유로 S군에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 없어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주변 다른 도시까지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며,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민자가 많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S군 가족센터에 등록된 결혼이민자를 체류 기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체류 기간별 결혼이민자 수

79) 「202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별도지원사업 연간결과보고서」 참조

80) S군은 경상북도 소재로 2021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인구 42,842명 중 결혼이민자 321명이 거주하고 있다(군청 홈페이지 참조). 본 연구에서는 S군 가족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체류 기간	5년 이하	5년 ~ 10년	10년 ~ 15년	15년 ~ 20년	20년 이상
인원 수 (300명)	36	54	102	58	50
비율 (100%)	12%	18%	34%	19.3%	16.7%

<표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체류기간이 10년 ~ 15년에 해당되는 결혼이민자가 34%로 가장 많았으며, 체류기간 5년 이상인 중장기 체류자는 전체의 8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S군 가족센터에서는 운영하고 있는 특수목적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다. S군은 2021년 9개의 특수목적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표 7> S군 가족센터 운영 특수목적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 명	기간	요일	시간
1. 여러 지역의 문화를 배워 봐요	3.29~11.29	월요일	14:00~16:00
2. 자녀학습지도가 쉬워져요	4.3~11.20	토요일	10:00~12:00
3. 우리 지역의 문화를 알아봐요	3.31~11.24	수요일	19:00~21:00
4. 지역문화를 활용한 한국어(1)	4.8~6.24	목요일	19:00~21:00
5. 지역문화를 활용한 한국어(2)	8.6~10.22	금요일	19:00~21:00
6. 취업을 위한 한국어(1)	4.2~6.18	금요일	19:00~21:00
7. 취업을 위한 한국어(2)	8.5~10.21	목요일	19:00~21:00
8. 토픽 읽기반	9.7~11.30	화요일	19:00~21:00
9. 토픽 쓰기반	9.7~11.30	화요일	19:00~21:00

<표 7>에서 알 수 있듯이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한국어교육'과 '토픽 듣기 교육'을 제외한 5개의 프로그램이 모두 운영되었으며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에 중복되어 개설되었다. 이는 가족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는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의 종류와 운영 시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가족센터에 장기간 등록하고 있는 중장기 체류 결혼이민자들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의 수업을 몇 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듣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더구나 자녀들이 이미 성장한 결혼이민자들의 경우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개발된 '자녀학습지도를 위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도 낮은 편이다. 즉 배우고 싶은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개설되는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센터 등록 인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장기 체류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이 추가로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S군 중장기 체류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참여하고 싶은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고급 수준의 한국어, 발음 등 전문화된 한국어, 생활 법률 등 특수한 한

국어'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 3.2 중장기 체류 결혼이민자의 한국어교육 참여를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

중장기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교육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거리적·시간적 제약이다. 군 단위 지역의 경우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어 수업이 이루어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이나 가족센터를 방문하기에는 교통편이나 거리의 제약이 있다. 교육장이 먼 곳에 있고 자가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결혼이민자들은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차량을 이용하거나 가족이 교육장까지 태워주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센터에서는 '찾아가는 한국어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한국어교실'은 교사가 집으로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서비스'와 여러 명의 이민자들이 함께 모여 수업을 듣는 집합교육의 장점을 살린 운영방식으로 지자체가 교육장소를 제공하고 한국어교사가 직접 방문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공부방' 형태의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이다. S군 가족센터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이전 전체 운영 프로그램 5개 중에 2개를 '찾아가는 한국어교실'로 운영하였다. S군 가족센터에서 운영한 '찾아가는 한국어교실'은 학습자들이 걸어서 방문할 수 있는 곳에 교육장을 마련하여 저녁시간에 수업을 진행하였다. 가족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수업과 비교하여 수업에 참여하는 결혼이민자의 수는 적으나 상대적으로 높은 출석률을 보였다.<sup>81)</sup>

'찾아가는 한국어교실'이 결혼이민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는 또 다른 이유는 수업이 운영되는 시간이다. 가족센터는 물론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개설되는 한국어 수업은 낮 시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 체류 기간이 길어지고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취업 활동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한국어 교육기관이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교육장으로 가는 데 소요되는 시간까지 포함하며 3~4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어 수업과 취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저녁 시간에 이루어지는 '찾아가는 한국어교실'은 이러한 시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한국어 수업이 진행된 2021년, S군 가족센터에서 운영된 한국어수업 9개 중 7개가 저녁시간(19시~21시)에 이루어진 것은 결혼이민자들이 희망하는 수업 시간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찾아가는 한국어교실'은 일정 수 이상의 결혼이민자가 모여 있는 일부 지역에서만 개설이 가능하며 한 가지 프로그램만 운영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참여할 수 있는 이민자의 수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즉, 한국어교육에서 소외되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을 위해

81) 본 연구자는 S군에서 2019년부터 '집합 교육'과 '찾아가는 한국어교실'에 모두 참여하였다. 2020년부터는 비대면 수업으로 운영되었으므로 대면으로 운영된 2019년 출석률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 등록 인원	일일 참가 인원	출석률
집합 교육	17	8.3명	49%
찾아가는 한국어	7	5.8명	83%

‘찾아가는 한국어교실’이 운영 중에 있으나 거리적·시간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증장기 체류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교육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두 번째 문제는 부족한 프로그램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한국어교육은 4단계로 운영되어 고급 수준의 한국어 학습을 희망하는 증장기 체류 결혼이민자들이 수강할 단계가 없다. 또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수강 대상자를 ‘국적 취득 후 3년 이내인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어 초·중급 수준의 학습자라고 할지라도 체류 기간이 경과한 결혼이민자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을 얻지 못한다. 따라서 국적 취득 후 3년이 지났거나 고급 수준의 한국어 수업을 희망하는 이민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없는 실정이다.

가족센터에서는 이러한 결혼이민자를 위해 ‘특수목적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족센터에서는 7개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프로그램의 종류나 운영 시간에 있어서 여전히 이민자들의 학습욕을 채우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그리고 특수목적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의 운영시간이 적어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현재 가족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수목적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은 12차시로 구성되어 있다.<sup>82)</sup> 사전 교육과 평가를 제외하면 실제 수업시간은 22시간에 불과해 한 과목을 모두 학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프로그램 7개를 모두 이수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154시간으로 일반목적 한국어 학습자 대상 한국어교육기관에서 한 단계를 이수하는 데 필요한 시간인 200시간에도 미치지 못한다. 결국 결혼이민자들은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마치게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증장기 체류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교육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교육장까지의 먼 거리와 참여하기 곤란한 수업 시간,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부족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을 기반으로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특수목적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을 재개발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 4.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을 활용한 수업 운영

### 4.1 온라인 수업의 필요성

가족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의 형태는 크게 ‘집합 교육’과 ‘방문 교육’으로 나눌 수 있으며, 최근에는 두 교육의 결합 형태로 볼 수 있는 ‘찾아가는 한국어교실’이 추가로 운영되고 있다. ‘찾아가는 한국어교실’은 가족센터 방문이 어려운 원거리 거주 결혼이민자들을 모아 공부방 형태로 수업을 개설하고 교사가 방문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집합 교육’과 ‘방문 교육’의 장점을 결합한 교수 형태이다. ‘찾아가는 한국

82) 특수목적 한국어교육 ‘강사용 표준 매뉴얼’에 따르면 각 프로그램은 총 12차시로 구성되며 각 차시는 100분(50분X2) 수업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1차시와 12차시는 50분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교실'은 거리로 인한 문제가 해결되고 지역 학습자들이 희망하는 시간대에 개설되므로 가족센터에서 운영되는 '집합 교육'과 비교하여 출석률과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는 거리와 시간의 문제가 결혼이민자들의 수업 참여에 큰 장애가 되고 있음을 역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읍·면 단위 지역의 경우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결혼이민자의 수가 적어 수업의 개설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설된다고 하여도 다양한 종류의 수업이 운영되기에는 무리가 있다.<sup>83)</sup>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화상교육'을 '집합교육'과 함께 교육 방법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다. 화상교육은 중앙거점 운영기관에서 진행하며 교사 1명이 최대 9명의 학습자들과 쌍방향 온라인 실시간 화상강의 형태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원거리 거주자나 임신, 출산, 거동불편, 취업 등으로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학습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sup>84)</sup>

'화상교육' 즉 온라인을 이용한 수업은 경제 활동 참여 등으로 시간 활용이 자유롭지 못한 결혼이민자에게는 시간을 내어 교육기관을 찾아가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해 줄 수 있다. 또한 지역에 관계없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어 지역 차이로 인한 소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어디서든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온라인 수업은 지역의 경계를 없앨 것이고 지역에 제한 없이 수업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더 많은 수의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종류의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 등록되어 있는 가족센터 이외 다른 센터의 수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인 뒷받침도 필요할 것이다.

#### 4.2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의 장점

송윤희(2020, 260)에 의하면 교수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학습자의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란 말이 아닌 표정, 몸짓, 자세, 공간 등으로 전달되는 의사소통으로 학습자는 교사의 긍정적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편안함을 느끼고 자신감을 가지며 수업에 집중하며 배우고자 하는 내용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온라인 수업보다는 대면 수업에서 더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이에 본 연구자는 중장기 체류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교육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을 제안하고자 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혼합적 교수-학습 방법인 블렌디드 러닝은 공간적·시간적 한계를 극복하여 학습자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온라인 수업의 장점과 교사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최대화할 수 있는 오프라인 수업의 장점을 적절히 혼합한 수업 모형이다(김정태·김희진, 2012, 136).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의 장점과 교수와 학습자 사이의

83) S군의 경우 면단위 3개 지역에 '찾아가는 한국어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지역별로 각 1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84) 법무부 「2019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 참조.

상호작용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오프라인 학습의 장점을 결합한 교수 모형인 블렌디드 러닝은 결혼이민자의 참여와 학습 효율을 모두 높여 줄 것이다.

## 5. 나오며

본 연구에서는 중장기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과 가족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초기 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거나, 시간적·공간적 제약 등으로 인해 중장기 체류 결혼이민자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운영 프로그램의 내용이 제한적이고 교육 시수가 적어 학습의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블렌디드 러닝을 기반으로 중장기 체류 결혼이민자를 위한 새로운 한국어 교육과정과 교재의 개발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러나 어떤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고민은 후속 연구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강현화(2011). 다문화 관련 한국어교육학 연구의 쟁점, 배달말, 49, 배달말학회, 375-399.
- 김선정 외(2018).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사업 개선 연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김선정·강현자(2019).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문화교육 프로그램 담당자 대상 요구분석 연구, 교육문화연구, 25(2),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857-876.
- 김정태·김희진(2012). 오프라인 대학교 영어교육에 최적화된 블렌디드러닝 교수모형 연구, 멀티미디어 언어교육, 15(1), 한국멀티미디어언어교육학회, 135-155.
- 김현주(2016). 한국과 프랑스의 사회통합정책 비교연구, 프랑스문화연구, 33, 한국프랑스문화학회, 189-212.
- 민진영·박소영(2019).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한국어교육 개선 방안 연구 -외국 사회통합 언어교육 프로그램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15(3), 언어문화교육학회, 99-127.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21). 「2020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21). 「2021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지침」.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22). 「2021년 12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 송윤희(2020). 교수자의 비언언적 커뮤니케이션이 대학생의 감성적 실재감, 라포 및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 한국콘텐츠학회, 259-267.
- 이미혜 외(2018). 2018년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재 개발 기초 연구, 국립국어원.
- 이은성(2020).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위한 블렌디드 러닝 기반 한국어 학습 도구 개발 방향 연구 - 독일, 덴마크, 호주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독어교육, 79,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7-32.
- 통계청 통계개발원(2021). 「한국의 사회동향 2021」.
-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21). 「2020 가족지원사업 연간결과보고서」.
-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21). 「202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별도지원사업 연간결과보고서」.

# 이주노동자 주거지원 사례를 통해 본 지역재생

2022. 2. 25

김승희,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kimseunghee@kangwon.ac.kr)  
이한나, 강원대학교 4단계 bk21 교육인문협력학과 교육연구단, 선임연구원(lhn\_bk21@naver.com)

## Contents

<b>1</b> 서론	01 연구의 배경 02 연구의 목적
<b>2</b> 이론적 검토	01 지역재생과 지역재생의 요건 02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 정책 03 창원군 양귀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b>3</b> 사례분석	지역공동체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의한 지역재생 01 지역문제인식과 문제해결을 위한 공급대 형성 02 도시재생계획 실행주체 발굴 및 협력체계 구축 03 동일인력지원공간 조성을 위한 연계사업 추진 04 지역공동체 재구성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b>4</b> 결론	01 연구요약 02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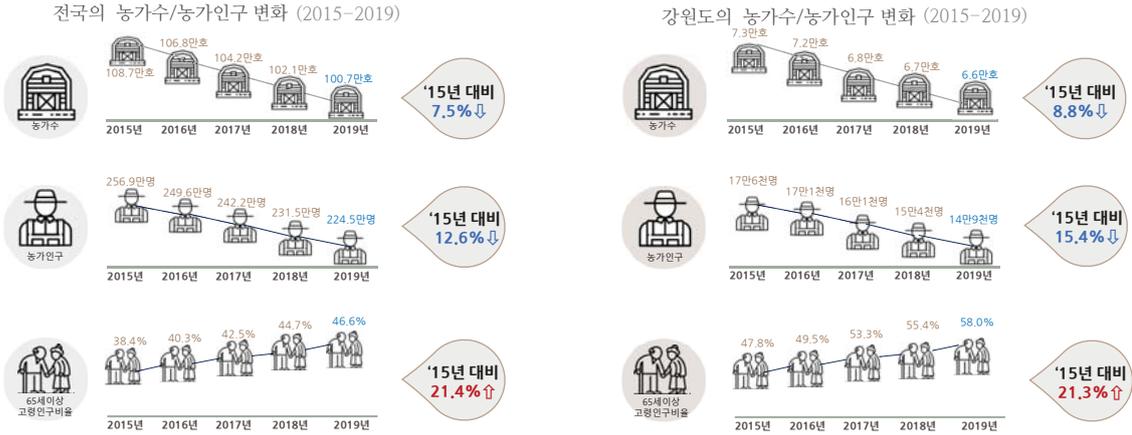
2

# 1 서론

- 01 연구의 배경
- 02 연구의 목적
- 03 연구의 범위와 방법

# 01 연구의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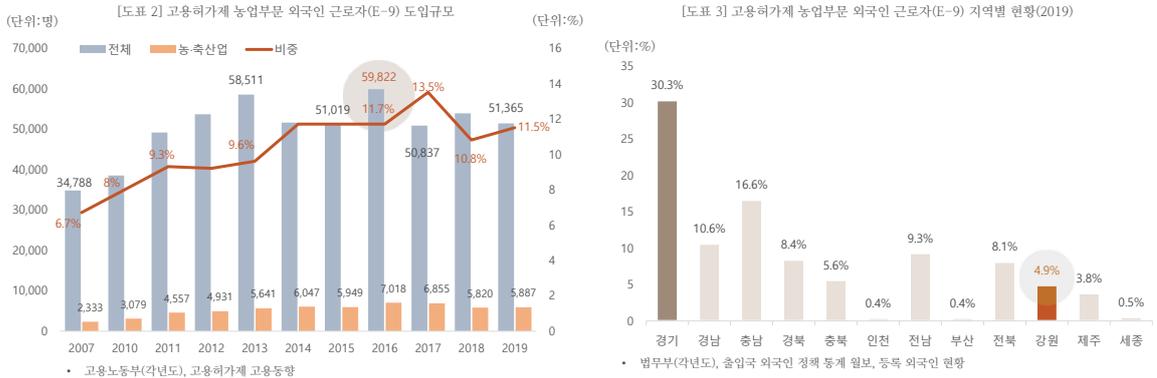
농업노동력의 변화, 전국 및 강원도의 농가수,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율 증가



# 01 연구의 배경

고용허가제(E-9) : 2019년 농축산업부문의 비중은 2007년 대비 약 4.8%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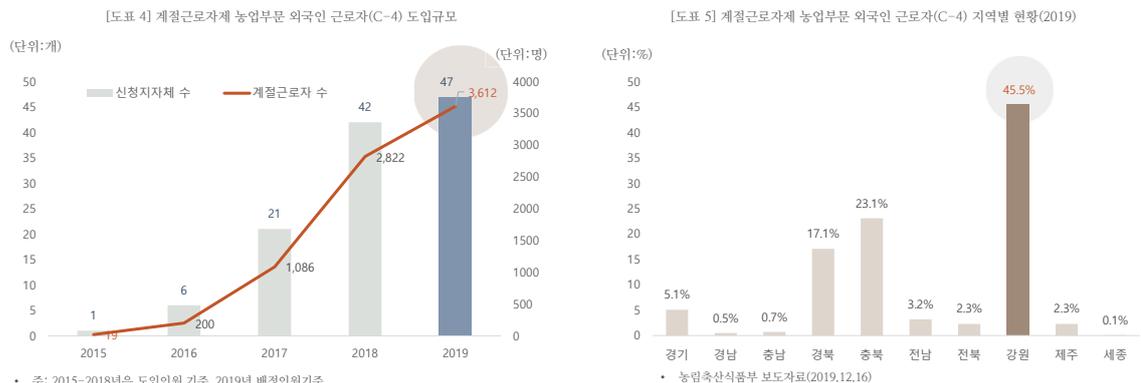
- E-9의 전체 규모 대비 농축산업부문 비중은 6.7%에서 11.5% 증가
- 경기도 30.3%로 최대 집중, 충남16.6%, 경남 10.6% 순으로 나타남
- 강원도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비중 4.9%로 낮은 상태



# 01 연구의 배경

계절근로자제(C-4) : 강원도의 농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계절근로자제 의존

- C-4의 농축산업 부문은 2019년 47개 지자체, 3,612명 최대 규모
- 강원도의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2019년 기준 1,643명 배정되어 전체 도입 규모의 45.5% 차지



· 주: 2015-2018년은 도입인원 기준, 2019년 배정인원기준  
 · 출처: 법무부 내부자료, 영진영의 (2020) 코로나 19와 농업노동력, KREI 농정포커스 제188호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9.12.16)

## 01 연구의 배경

■ 농업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주거환경문제가 지속적으로 사회문제 야기

- 경기도 포천시 비닐하우스 내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한파로 사망(2020.12) 이후 지속적인 사회문제 발생
  - 2020년 12월 20일, 경기도 포천시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 숙소에서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사망
  - 2021년 3월 16일, 광주 북구 용두동 장미농장 비닐하우스 숙소 화재, 외국인 노동자 대피
  - 2021년 6월 2일, 경기도 포천 농가 가설건축물 기숙사에서 외국인 노동자 사망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귀국 20일 앞둔 이주노동자 싸늘히 식었다**

한겨레 신문, 이재호 기자(2020.12.21)

**비닐하우스 잠자던 이주노동자들  
화재로 긴급대피 '위험천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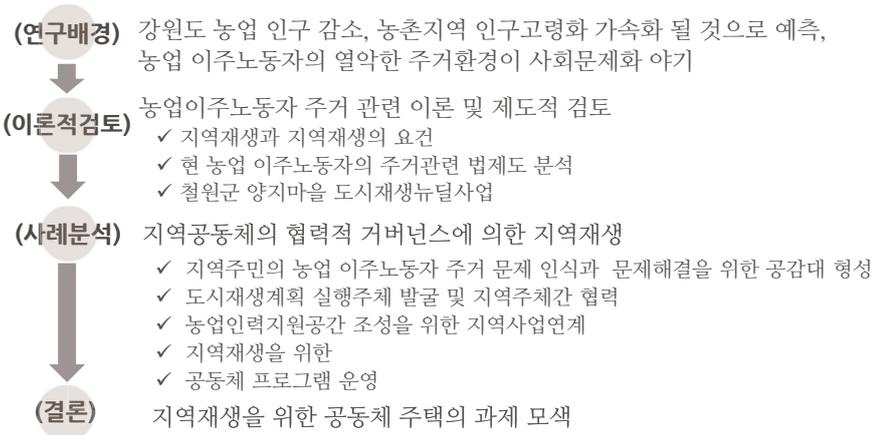
더 팩트, 광주 박호재 기자(2021.3.19)



THE FACT

## 02 연구의 목적

**농업 이주노동자의 주거지원 사례 분석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주체별 협력과 공동체 주택의 과제 모색**



# 2 이론적 검토

- 01 지역재생과 지역재생의 요건
- 02 외국인근로자 주거관련 정책
- 03 철원군 양지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 01 지역재생과 지역재생의 요건

## ■ 지역재생의 개념

“ 쇠퇴하는 도시에 새로운 기능의 도입 창출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 활성화하는 모든 분야 재생”  
“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커뮤니티 활성화와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총체적인 활동 (방정은,2013)”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지원법) 제2조 (2013)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것



[자료] 김혜진(2013), 한국적 도시재생의 개념과 유형,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p.6-7

# 01 지역재생과 지역재생의 요건

## ■ 지속가능한 지역재생의 요건

“ 지역주민 주도의, 지역계획을 통해 추진되는 지역문제 해결형 커뮤니티 활성화” (한국도시지리학회, 2008)

○ 지역 특성 기반 쇠퇴양상, 지역자원, 지역과제 발굴

↳ 지역의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쇠퇴양상 파악, 지역에 내재되어 있는 자연자원, 인공자원 등 잠재적 자원요소 발굴, 지역의 과제를 파악하고, 과제의 우선순위에 따른 첫번째 합의 형성, 진단내용의 실행전략 수립

○ 현장 중심 협력적 거버넌스 구성

↳ 지역 내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다양한 인적자원 구성, 지역 내 실행주체 발굴, 적절한 역할 분담, 상호갈등조정을 위한 시스템 (강준모, 2014), 주민이 제안하고 참여하는 주민참여사업 시행, 지역재생을 위한 주요 추진주체 발굴 및 협업체계 구성 수립이 필수적 (이지연, 2019)

○ 장소 중심의 사업연계

↳ 장소를 기반으로 종합적으로 포괄적 접근을 시도하는 다부처연계사업으로 행정을 중심으로 지원여건 파악, 연계사업 발굴, 네트워크 확보, 지역공동체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의 문제해결 역량 결집

# 01 지역재생과 지역재생의 요건

## ■ 지속가능한 지역재생의 요건

○ 지역 역량 강화

↳ 물리적 정비 및 환경개선을 통한 역량강화, 공동체 활성화 유지를 통한 역량강화, 지역전문가 양성을 위한 역량강화(이지연,2019)

○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사회적 경제 육성, 재원 마련 등 지역경제순환

↳ 사회적 경제 조직은 시장과 공공부문 사이에 존재하는 활동영역, 기업적 방식으로 공익활동을 아우르되 이윤극대화가 아닌 사회적 목적, 사회적 배제, 실업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강병준, 2014)

↳ 사회적 경제 조직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지역사회에의 종합적 재생, 지역공동체의 회복, 삶의 질 향상 등과 같은 도시재생의 목표와 맥락을 같이함(장우진,2011;최조순외,2011; 홍성우,2011)

○ 지역자원의 유지·관리

↳ 지역을 지속해서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는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칙에서 부터 주체들의 합의를 통해 정하고, 공통으로 인식하는 문제점에 대한 규칙과 약속을 만들어 개선 (이지연,2019)

↳ 사회문제 해결과정에서 자율과 자치, 신뢰와 협력, 연대와 협동 등을 통해 지역공동체 회복과 실질적 민주주의 성장을 도모 (김경희, 2013)

# 01 지역재생과 지역재생의 요건

## ■ 사회경제조직과 공동체 주택

**정부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한 사회경제조직의 필요, 비영리조직과 정부의 협력관계 모색(Hansmann,1980; Salamon,1987)을 통한 주거복지실천 (주택공급 및 주거서비스 제공 등)**

- 주택은 시장에서 가치재의 특성을 특성을 가지므로 지불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주택공급 불가능(King & Oxley,2000)
  - ↳,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주거복지정책을 실행하지만, 정부 역할이 어려운 영역에서는 비영리주택조직의 역할 필요
- 비영리조직은 조직적역량, 재원 등의 수단이 부족하여 지속적인 주택사업추진 불가능하지만, 만약, 정부가 주택정책 운영에 있어 비영리주택사업을 지원한다면 정책에 대한 참여단계를 넘어 정부와의 구체적 협력관계로 발전 (남원석, 2012)
  - \*자발성실패(voluntary failure): 비영리조직은 조직적 역량, 재원이 부족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발생이 어려움 (Salamon, 1987)
- 사회적경제조직의 주거복지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현재는 주택공급 및 주거서비스 제공이 다양화
  - ↳, 사회적기업육성법(2007), 협동조합 기본법(2011) 제정, 지방정부의 사회적기업 육성관련 조례 제정 등
  - ↳, 협동조합은 출자금을 납부한 조합원이 1인 1표의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어 민주적 가치가 더 높다고 평가되며, 협동조합에 의한 주택은 공동체주택과 같이 '공동체'의 가치를 지향하는 주택을 공급(조성문, 2017)

# 02 외국인 근로자 주거관련 정책

## ■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외국인고용법\_고용노동부

-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하기 위한 기준을 정한 법령(1997.3), 총 38번 개정 절차, 내국인, 외국인 법 적용**
  - ↳, 근로기준법 제100조(부속기숙사의 설치·운영 기준)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제56조(기숙사의 설치장소), 제57조(기숙사의 주거환경 조성), 제58조(기숙사의 면적), 제58조의2(근로자의 생활보호 등) 규정
  - ↳, 근로기준법 제100조의 2 (부속 기숙사의 유지관리업무)에 따라 설치한 기숙사에 대해 근로자의 건강유지 생활보호 등을 위해 지속적 조치

[도표 6]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기숙사 설치·운영 기준

# 02 외국인 근로자 주거관련 정책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_고용노동부

-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2003.8)**

[도표 7] 외국인 기숙사 시설표(고용노동부고시 제2019-38호)

<p>● <b>작성방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할려는 경우 기숙사시설을 작성하여 근로계약 시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의2 제2항)</li> <li>○ 기숙사 내 시설을 해당 항목별로 기재 또는 해당 표시하여 주십시오. (예) 화장실, 세면대, 샤워실, 냉방시설, 에어컨, 세탁물건조기, 등유는 동적 제재 가능</li> <li>○ 기숙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기숙사시설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li> </ul> <p>● <b>용어설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기 제출서류에 대해 작성중인 경우 해당 기재가 있을 경우 근로자의 사업장 방문 및 고충처리에 필요한 해당 시설을 기재하여 1인당 1인실을 작성하십시오</li> <li>○ 사업장의 근로자가 거주하는 기숙사 내방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기숙사 이용 근로자의 생활환경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li> </ul> <p>● <b>사업장 근무사원(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8조부터 제60조의4까지 규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 설치 장소 소용이나 친분이 있는 간접·간접근로자 등 지연제에 따라, 승차가 불가능한 경우, 오일이나 해당물품 관련 오일과 유류가 전인 실소를 고려하여 설치</li> <li>○ (냉방) 겨울: 에어컨, 난방: 난방시설, 기타: 에어컨, 기타: 에어컨, 기타: 에어컨</li> <li>○ (냉방) 여름: 에어컨, 난방: 난방시설, 기타: 에어컨, 기타: 에어컨, 기타: 에어컨</li> <li>○ (냉방) 겨울: 에어컨, 난방: 난방시설, 기타: 에어컨, 기타: 에어컨, 기타: 에어컨</li> <li>○ (냉방) 여름: 에어컨, 난방: 난방시설, 기타: 에어컨, 기타: 에어컨, 기타: 에어컨</li> <li>○ (냉방) 겨울: 에어컨, 난방: 난방시설, 기타: 에어컨, 기타: 에어컨, 기타: 에어컨</li> <li>○ (냉방) 여름: 에어컨, 난방: 난방시설, 기타: 에어컨, 기타: 에어컨, 기타: 에어컨</li> </ul> <p>● <b>작성방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할려는 경우 기숙사시설을 작성하여 근로계약 시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의2 제2항)</li> <li>○ 기숙사 내 시설을 해당 항목별로 기재 또는 해당 표시하여 주십시오. (예) 화장실, 세면대, 샤워실, 냉방시설, 에어컨, 세탁물건조기, 등유는 동적 제재 가능</li> <li>○ 기숙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기숙사시설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li> </ul> <p>● <b>용어설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기 제출서류에 대해 작성중인 경우 해당 기재가 있을 경우 근로자의 사업장 방문 및 고충처리에 필요한 해당 시설을 기재하여 1인당 1인실을 작성하십시오</li> <li>○ 사업장의 근로자가 거주하는 기숙사 내방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기숙사 이용 근로자의 생활환경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li> </ul> <p>● <b>사업장 근무사원(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8조부터 제60조의4까지 규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 설치 장소 소용이나 친분이 있는 간접·간접근로자 등 지연제에 따라, 승차가 불가능한 경우, 오일이나 해당물품 관련 오일과 유류가 전인 실소를 고려하여 설치</li> <li>○ (냉방) 겨울: 에어컨, 난방: 난방시설, 기타: 에어컨, 기타: 에어컨, 기타: 에어컨</li> <li>○ (냉방) 여름: 에어컨, 난방: 난방시설, 기타: 에어컨, 기타: 에어컨, 기타: 에어컨</li> <li>○ (냉방) 겨울: 에어컨, 난방: 난방시설, 기타: 에어컨, 기타: 에어컨, 기타: 에어컨</li> <li>○ (냉방) 여름: 에어컨, 난방: 난방시설, 기타: 에어컨, 기타: 에어컨, 기타: 에어컨</li> <li>○ (냉방) 겨울: 에어컨, 난방: 난방시설, 기타: 에어컨, 기타: 에어컨, 기타: 에어컨</li> <li>○ (냉방) 여름: 에어컨, 난방: 난방시설, 기타: 에어컨, 기타: 에어컨, 기타: 에어컨</li> </ul> <p>● <b>작성방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할려는 경우 기숙사시설을 작성하여 근로계약 시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의2 제2항)</li> <li>○ 기숙사 내 시설을 해당 항목별로 기재 또는 해당 표시하여 주십시오. (예) 화장실, 세면대, 샤워실, 냉방시설, 에어컨, 세탁물건조기, 등유는 동적 제재 가능</li> <li>○ 기숙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기숙사시설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li> </ul> <p>● <b>용어설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기 제출서류에 대해 작성중인 경우 해당 기재가 있을 경우 근로자의 사업장 방문 및 고충처리에 필요한 해당 시설을 기재하여 1인당 1인실을 작성하십시오</li> <li>○ 사업장의 근로자가 거주하는 기숙사 내방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기숙사 이용 근로자의 생활환경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li> </ul> <p>● <b>사업장 근무사원(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8조부터 제60조의4까지 규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 설치 장소 소용이나 친분이 있는 간접·간접근로자 등 지연제에 따라, 승차가 불가능한 경우, 오일이나 해당물품 관련 오일과 유류가 전인 실소를 고려하여 설치</li> <li>○ (냉방) 겨울: 에어컨, 난방: 난방시설, 기타: 에어컨, 기타: 에어컨, 기타: 에어컨</li> <li>○ (냉방) 여름: 에어컨, 난방: 난방시설, 기타: 에어컨, 기타: 에어컨, 기타: 에어컨</li> <li>○ (냉방) 겨울: 에어컨, 난방: 난방시설, 기타: 에어컨, 기타: 에어컨, 기타: 에어컨</li> <li>○ (냉방) 여름: 에어컨, 난방: 난방시설, 기타: 에어컨, 기타: 에어컨, 기타: 에어컨</li> <li>○ (냉방) 겨울: 에어컨, 난방: 난방시설, 기타: 에어컨, 기타: 에어컨, 기타: 에어컨</li> <li>○ (냉방) 여름: 에어컨, 난방: 난방시설, 기타: 에어컨, 기타: 에어컨, 기타: 에어컨</li> </ul>	<p>① 남 내 구분 <input type="checkbox"/> 남내 구분 <input type="checkbox"/> 남내 구분</p> <p>② 근 후 조 <input type="checkbox"/> 근후조 있음 <input type="checkbox"/> 근후조 없음</p> <p>③ 침 실 <input type="checkbox"/> 침실 면적 <input type="checkbox"/> 침실 면적 <input type="checkbox"/> 침실 면적</p> <p>④ 화장실 <input type="checkbox"/> 화장실 <input type="checkbox"/> 화장실</p> <p>⑤ 세면대 <input type="checkbox"/> 세면대 <input type="checkbox"/> 세면대</p> <p>⑥ 샤워실 <input type="checkbox"/> 샤워실 <input type="checkbox"/> 샤워실</p> <p>⑦ 에어컨 <input type="checkbox"/> 에어컨 <input type="checkbox"/> 에어컨</p> <p>⑧ 난방시설 <input type="checkbox"/> 난방시설 <input type="checkbox"/> 난방시설</p> <p>⑨ 기타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시설</p> <p>⑩ 기타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시설</p> <p>⑪ 기타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시설</p> <p>⑫ 기타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시설</p> <p>⑬ 기타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시설</p> <p>⑭ 기타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시설</p> <p>⑮ 기타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시설</p> <p>⑯ 기타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시설</p> <p>⑰ 기타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시설</p> <p>⑱ 기타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시설</p> <p>⑲ 기타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시설</p> <p>⑳ 기타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시설</p> <p>㉑ 기타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시설</p> <p>㉒ 기타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시설</p> <p>㉓ 기타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시설</p> <p>㉔ 기타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시설</p> <p>㉕ 기타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시설</p> <p>㉖ 기타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시설</p> <p>㉗ 기타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시설</p> <p>㉘ 기타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시설</p> <p>㉙ 기타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시설</p> <p>㉚ 기타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시설</p> <p>㉛ 기타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시설</p> <p>㉜ 기타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시설</p> <p>㉝ 기타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시설</p> <p>㉞ 기타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시설</p> <p>㉟ 기타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시설</p> <p>㊱ 기타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시설</p> <p>㊲ 기타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시설</p> <p>㊳ 기타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시설</p> <p>㊴ 기타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시설</p> <p>㊵ 기타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시설</p> <p>㊶ 기타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시설</p> <p>㊷ 기타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시설</p> <p>㊸ 기타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시설</p> <p>㊹ 기타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시설</p> <p>㊺ 기타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시설</p>
---	--

→ 외국인고용법 제22조의2(기숙사의 제공 등),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과 허용)따라 제22조의2위반한 기숙사 제공 시 근로조건위반, 부당 처우 간주, 사업장 변경 허용

↳, 외국인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경우 기숙사 시설표 작성하여 해당근로자 제공 고용허가 신청 시 제출, 미제출시 행정적 불이익 감수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외국인고용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숙사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기숙사제공시 설치와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하므로 기숙사 제공에 대한 부담** 유

## 02 외국인 근로자 주거관련 정책

### ■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규칙\_농립축산식품부

#### ○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향상을 위해 농지의 소유, 이용보전 등에 관한 사항 규정(1996.1)

- ↳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1(부속시설의 범위), 제3조의2(농막등의 범위),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등의 처분),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규정을 살펴본 결과, 농지법 적용을 받을 경우 농막, 부속시설은 숙소로 제공 불가,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농장주들이 농지를 외국인 근로자에게 비닐하우스내 기숙사 및 농막으로 제공 시 농지 관련 불법행위로 판단'**

### ■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_국토교통부

#### ○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미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1962.1)

- ↳ 건축법 제10조(건축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건축법 제15조(가설건축물)를 검토한 결과, 농지에 가설건축물 설치하여 근로자의 상시주거시설로 제공하는 것은 위법임

**'농지에는 농막 참고 외, 원칙적으로 건축허가 불가, 농지전용허가, 신고 협의 후 농지보전 부담금 납부, 건축허가, 건축물 신고 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 존재'**

## 02 외국인 근로자 주거관련 정책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의 정책변화(최근 1년간)

#### ① 포천 농업 외국인근로자 사망 (2021.12.20)

베트남 농업 외국인 근로자 비닐하우스에서 한파에 사망



#### ② 주거시설 기준 강화 (2021.1)

- 고용허가 신청 할 때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 숙소 제공 시 고용허가 불허
- ↳ 농민, 외국인 노동자 혼란 외국인 주거시설 강화기준 유예기간 1년 제공

#### ③ 영세농가 주거시설개선 지원 (2021. 1.)

- 외국인 여성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 빈집 등 유휴시설 주거시설 활용 시범사업 추진:1개소 당 리모델링 비용 1천 500만원 지원
- ↳ 21년 1월 10개소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추후 500개소까지 확대 예정

#### ④ 근로 여건 개선 대책 (2021.3.2)

-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아닌 사업장 변경사유 확대
- 숙소용도가 아닌 불법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한 경우 [추가] 사업장에 중대제해 발생한 경우 [추가] 외국인근로자가 3개월이상 휴업이 필요한 신체적, 정신적 부상 및 질병이 발생한 경우

2021년 1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 주거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 하였으나, 코로나 19로 인한 농업 인력 부족, 주거시설 개선에 따른 금전적 부담 가중, 합법 근로자 이탈 등 농장주 반발과 농업 현장의 불안 가중으로 최대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답보 상태

## 03 철원군 양지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 ■ 사업개요

- 철원군, 한강이북 최대의 시설농업지역 : 경작지 면적 126.8 km<sup>2</sup>로 철원군 전체면적의 14.3%, 근남면 시설하우스 농가 입지
- 군 위수지역 해제로 인한 급격한 지역쇠퇴, 이촌향도, 도심공동화
- 철원군 양지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2020), 현장지원센터 운영(2021), 양지마을 마을관리협동조합설립(2021.12)

[도표 8] 철원군 관내 외국인근로자 증감 현황



출처: 철원군 근남면 도시재생실행계획 (2020)

[도표 9] 대상지 도시쇠퇴 현황



## 03 철원군 양지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 ■ 농업이주노동자 대상 농업인력지원공간 사업내용

출처: 철원군 근남면 도시재생실행계획 (2020)



#### ① 농업인력지원공간(농업이주노동자 기숙사)

-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독서공간, 게임공간, 인터넷 이용공간, 숙소 등 기능 포함
- [1층] 지원센터, 외국인 근로자의 힐링을 위한 오락, 휴게공간
- [2층] 고용법 강화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것이 부담되는 농장주에 한해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 지원 (2인1실 10호)
- 지자체 연계 :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 사업 (버스임차, 숙박비지원 등)

#### ②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과 외국인근로자 사이 가교역할 수행을 통한 고충상담, 통역지원, 교육지원 등 담당
- : 노무/법률/복지서비스 교육, 농업기술 및 안전교육 등

# 3 사례분석

지역공동체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의한 지역재생

- 01 지역문제 인식과 문제해결을 위한 공감대 형성
- 02 도시재생계획 실행주체 발굴 및 협력체계 구축
- 03 농업인력지원공간 조성을 위한 연계사업 추진
- 04 지역공동체 재구성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Part 3 사례분석\_지역공동체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의한 지역재생

## 01 지역 문제 인식과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 형성

### ■ 철원군 근남면 육단2리 농가의 지역문제 인식

#### “고령화로 인한 철원 근남면 육단2리 농가경쟁력 약화 및 농업 인력 공급 어려움”

	현황		농업인력 수
	내국인	외국인	요
계절적 인력공급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육단2리 내부 외부 인력부족</li> <li>내국인의 고임금</li> <li>대부분 70-80대 노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불법체류자, 계절노동자 무단이탈</li> <li>농한기 산업연수생은 일이 없는 시기에도 고정적 월급 지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번기 외국인 근로자의</li> <li>안정적인 인력 공급 필요</li> </ul>
농가의 집중 인력 투입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육단2리 주요 농작물은 파프리카 및 토마토가 전체농작물의 50%차지</li> <li>시설하우스 농가의 순작업, 병충해 예방작업으로 인한 일손부족</li> <li>모종을 심은 후 6월-11월 매일 작물을 관리해야 하는 시기</li> <li>1,000평-3,000평 규모의 농장주 다수(총 22개농장 중 9개농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설하우스 농가의 경우</li> <li>최소 5개월의 농업인력 필요</li> </ul>
농가별 인력 현황 및 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재 내국인 1.4명, 외국인 2.2명 으로 상시 약 4명이 농장 근무</li> <li>희망 농업인력은 농번기 4.0명, 평상시 2.1명으로 농번기에는 1명정도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 배치 인원보다 외국인 근로자 1명 더 필요한 것으로 파악</li> </ul>

## 01 지역 문제 인식과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 형성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정

### “안정적 농업인력 공급을 위해 지역공동체가 직접 운영하는 육단 2리 농업인력 공급 커뮤니티 구성”

↳ 주민이 직접 농업인력센터 또는 인력소개소를 운영하여,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한 내국인들까지 확대 된 품앗이 체계 구축



## 02 도시재생계획 실행주체 발굴 및 협력체계 구축

<p><b>양지마을 주민협의체 01</b></p> <p>주민의견 수렴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지마을 주민협의체 발족 (2021.2)</li> <li>•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면서 주민의 안을 제시하는 주민주도의 의견수렴기구, 주거환경, 공동체 활성화, 지역특화 분과활동 수행</li> <li>• 농업인력지원공간 관련 민원 및 주민의견청취, 수렴</li> </ul>	<p><b>양지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02</b></p> <p>도시재생추진협의회의 사업운영 및 성과관리, 역량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2021.1)</li> <li>•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장지원, 운영, 성과관리</li> <li>• 농업인력지원공간 관련 도시재생추진협의회 개최</li> <li>• 농업인력지원공간 조성을 위한 견설,전기,설비, 주민, 지자체 등 실시설계, 공사 관련 협의</li> </ul>	<p><b>양지마을 마을관리협동조합 03</b></p> <p>농업인력지원공간 운영을 위한 사회적경제조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지마을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2021.12)</li> <li>• 농업인력지원공간 운영 주체, 지역 인적자원 확보</li> <li>• 농업인력지원공간 운영을 위한 코인블라방 사업 시행</li> <li>• 농업인력지원공간 관리를 위한 사업자등록 및</li> </ul>
---	--	---

## 02 도시재생계획 실행주체 발굴 및 협력체계 구축

<p><b>철원군 도시재생팀 04</b></p> <p>행정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재생지원조직 신설(2018.1)</li> <li>• 철원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18.8)</li> <li>• 근남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2020.1.)</li> <li>• 근남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선정(2020.12)</li> <li>• 농업인력지원공간 등 하드웨어 사업 추진 (2021.1)</li> <li>• 농업인력지원공간 위탁운영 관련 조례 변경 중 (현)</li> </ul>	<p><b>철원군 농업기술센터 05</b></p> <p>농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절근로자제 운영(2021)</li> <li>• 외국인 근로자 통역, 의료 지원</li> <li>• 농업인력지원공간 조성을 위한 간담회 참여 (2021.10)</li> </ul>	<p><b>김화농공단지입주기업협의회 06</b></p> <p>외국인 기숙사 관련 시설,운영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화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운영(현)</li> <li>• 1인실 52실, 2인실 12실, 약 50억원 소요</li> <li>• 입주기업 25개사로 부터 추진 받은 근로자 숙소</li> <li>• 객실내가구, 공동세탁, 탕비실, 휴게실, 세미나실</li> <li>• 농업인력지원공간 조성을 위한 협력관계</li> </ul>
--	---	---

## 02 도시재생계획 실행주체 발굴 및 협력체계 구축

1) 지역재생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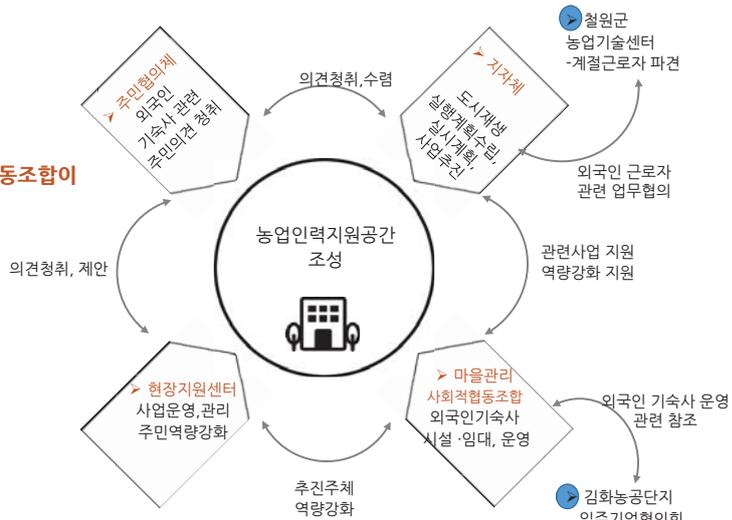
**쇠퇴하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2) 도시재생주체가 협력하여

**지역주민, 지자체, 센터, 마을관리협동조합이**

3) 새로운 기능

**농업인력지원공간 조성을 합의**



## 03 농업인력지원공간 조성을 위한 연계사업 추진

**“농업인력지원공간을 중심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의견수렴, 지역의 비전 공유 작업, 타부처 연계사업 확보”**

농업인력지원공간 (철원군 사업시행)  (현장지원센터 의견수렴)	① 숙박시설 관계자 면담 	② 고용농가 인터뷰 	③ 지역거주 학부모 	④ 마을상권 인터뷰 	⑤ 경기도 현장간담회 
	“농업인력지원공간이 들어 사게되면 그마저 되던 밭들이 장사가 안될까 우려된다. 저렴한, 신규 숙소가 생기면 외국인들이 물러갈 것이다.”	“근로자가 어찌든 도망갔다. 합법적 근로자도 입금을 올 리면 불법으로 권력하는 질 정에 주거문제로 근무지 이 탈을 막을 수 없다.”	“외국인 근로자가 마을에 유 입되면, 타동, 범죄가 일어날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	“새로운 식당이 들어서서 장 사가 더 안될까 걱정되지만, 마을의 미래를 생각하면 다 양한 업종이 있어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외국인 기술사 설립은 전례가 없는 사례이다. 경기도 역시 외 국인 기술사 설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결을 위한 의견도출)	① 주민협의체 의견도출 	② 문제의식 확산 	③ 방법/마을안전 논의 	④ 농업인력유입 기대 	⑤ 행안부 공모사업 연계 
	“농업인력지원공간에 입주 하는 근로자는 합법적 외국 인이야 한다. 군의 주거비 보조를 받으려면, 고용근로 자제, 계절근로자제 외국인 일 것을 단서로 한다.”	“KBS강원, 외국인근로자 모서라, 농촌인력난 해소 ‘안간힘’(2021.8.16)/철원 농업인력지원공간소개	“농업인력지원공간 내부/외 부 CCTV를 추가확보하여 철원하도독 실시할게 시 반영 한다.”	“농업인력지원공간으로 외국 인 노동자와 이들과 연계된 사람들이 유입된다면 지역 요식업종의 부흥과 상권활성 화를 가져올 것이다.”	외국인 거주여건 개선사업 “행안부 공모사업 선정, 예 산 3억 7400만원 추가확보” (2021.7.13, 국민일보)

## 03 농업인력지원공간 조성을 위한 연계사업 추진

**“농업인력지원공간 운영에 대한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역량 강화”**

농업인력지원공간 (철원군)	부지보상	철거	실시설계	공사완료	
주민역량강화 (주민협의체)	공감대 형성	주민역량강화	주민의견 제시	시설 이용	의견수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인 기술사 의견나눔 ↳ ① 도시재생대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역량강화 ↳ ② 운영위원회 회의 ↳ ③ 지역특화 분과 활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추진과정 상 의견제시</li> <li>조성시설 의견제시</li> <li>주민공모사업 준비 ↳ ④ 도시재생추진협의회 (군, 지역주민, 전문가)</li> </ul>		
사업실행력 확보 (마을관리협동조합)	조직구성	사업역량강화	사업실행주체선정	사업운영	마을사업 창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을관리협동조합 기초교육, 설립준비 ↳ ① 도시재생대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을관리협동조합 실전준비 ↳ 김화농공단지 근로자 기술사 현장답사 ↳ 고용주 등 간담회 ↳ 외국인 숙주 현장답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을관리협동조합 법인설립인가증 수령, 설립등기</li> <li>마을관리협동조합 시행예정사업 검토 ↳ 코인빨래방 현장답사</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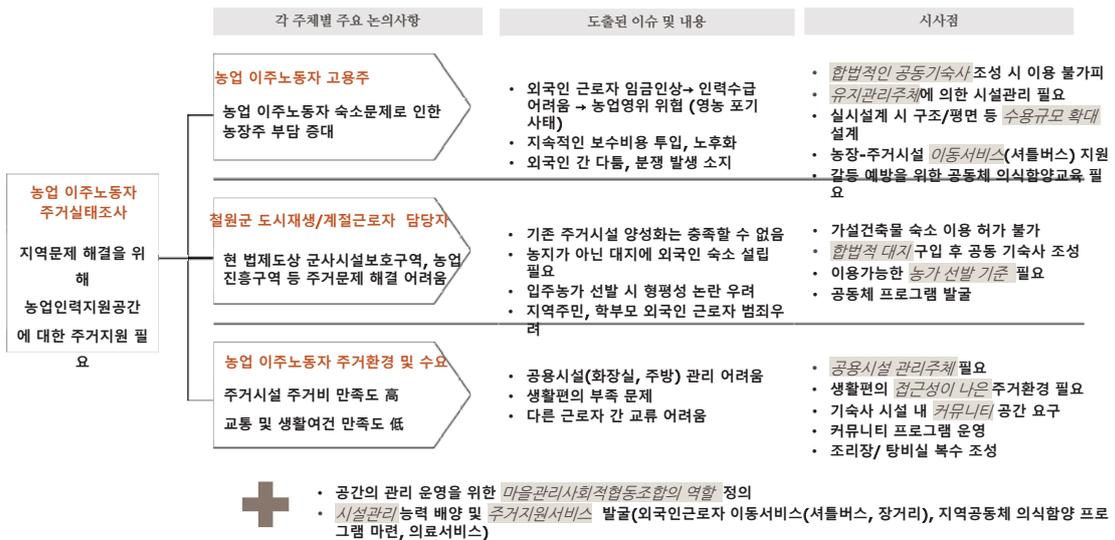
## 03 농업인력지원공간 조성을 위한 연계사업 추진

### “농업인력지원공간 운영을 위한 마을관리협동조합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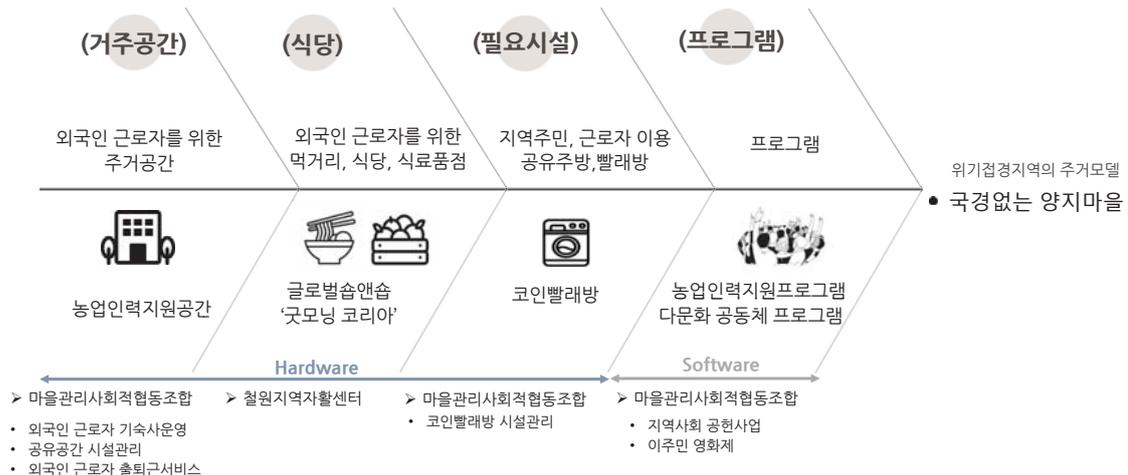
## 03 농업인력지원공간 조성을 위한 연계사업 추진

### “지역사회의 농업인력지원공간에 대한 요구, 주거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추진방향 설정”



## 03 농업인력지원공간 조성을 위한 연계사업 추진

### ‘국경없는 양지마을’ 목표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아이템 및 연계사업 추진



## 04 지역공동체 재구성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역공동체 재구성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

공동체 재생 프로그램 운영  
(현장지원센터 운영)



(지역공동체 발굴)

- ① 마을로 유입해 들어오는 **초등학생, 학부모** 공동체
- ② 육단2리 **노인회** 공동체
- ③ 마을 인근 거주 **농업 이주노동자** (합법, 불법 모두 포함)

<p>① 꼬마사서 1기</p> <p>근남초등학교 학생</p> <p><b>양지마을 꼬마사서 1기</b></p> <p>◎일시: 2021.4.17 간접적 사서체험을 통해 독서에 대한 관심유도, 직업탐구, 독후활동을 통해 배움의 기회 제공</p>	<p>② 꼬마사서 2기</p> <p>근남초등학교 학생</p> <p><b>양지마을 꼬마사서 2기</b></p> <p>◎ 일시 : 2021.6.19/26 지역내 호응이 매우 높음 수시기획을 통해 관심분야의 책 선정, 지역주민에게 소개</p>	<p>③ 꼬마사서 3기</p> <p>근남초등학교 학생</p> <p><b>양지마을 꼬마사서 3기</b></p> <p>◎ 일시 : 2021.10.16/23 점차 규모가 확대되고, 지역년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 교육용 보드게임을 통한 흥미</p>	<p>④ 어르신 캘리그래피</p> <p>마을 노인회 어르신</p> <p><b>어르신 문화예술프로그램</b></p> <p>◎ 일시 : 2021.10.6 코로나19로 지친 어르신들의 감상을 전하는 손글씨, 소근육 운동, 경시합양에 도움, 향후 진행될 프로그램 기대</p>	<p>⑤ 이주민 영화제</p> <p>농업이주노동자, 지역주민</p> <p><b>영화로 풀어보는 다문화 어울림 마을</b></p> <p>◎ 일시: 11.13 농업이주노동자의 삶을 조명 한 영화상영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경제성과 어려움을 공감하고, 이야기를 나눔</p>
---	--	---	---	---

# 4 결론

- 01 연구요약
- 02 시사점

## 01 연구요약

본 연구는

철원군 근남면 일대 농업 이주노동자 주거지원 사례를 통해  
지역재생을 위한 주체별 역할과 공동체 주택의 과제를 모색하였음

- ① 농촌지역의 농업 이주노동자 주거문제는 현 법·제도상 해결할 수 없는 한계임 (**한계**)
- ② 지역재생 추진주체별 농업인력지원공간 조성 합의 (**주체별 합의**)
- ③ 철원군 농업 이주노동자 주거실태조사 결과, 고용주, 지자체, 농업 이주노동자는 외국인 주거시설 필요 (**새로운기능**)  
↳ 각 이해관계자 별 농업 이주노동자 주거시설지원에 대한 요구 존재  
↳ 주거 요구는 외국인 주거시설 구조 및 설비, 외국인 주거시설 운영, 주거서비스에 대한 것으로 파악
- ④ 외국인 주거시설 운영을 위한 양지마을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의 역할 (**비영리 사회적 경제조직**)  
↳ 사회경제조직의 필요 역량은 주거시설 유지관리, 주거서비스 운영, 외국인 근로자 대상 입주관리교육 및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으로 파악

## 02 시사점

이러한 농업인력지원공간 조성을 위한 추진주체들의 노력, 지원방향 모색은 농촌 공동체 재구성을 위한 적극적인 논의로 볼 수 있으며,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실현을 위한 주거복지실천 과정이라 할 수 있음

① 농업 이주노동자의 주거시설의 운영방향 (주거서비스 제공)

↳ 서비스 부가형 공공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운영 모색

- 기숙사 건물의 유지관리 서비스, 가사서비스, 기숙사-농장 간 이동서비스(셔틀버스) 등 관련서비스 제공

② 사회적경제조직(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의 주요서비스 제공자로서 역할 확립 (주거복지전달체계)

↳ 주요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자발성실패 방지를 위한 추진 역량강화 - 마을 내 운영 인력 확보, 수익금을 활용한 지속적인 교육, 사업추진역량 배양

③ 농업 이주노동자 대상 교육 및 상담 제공 고려 (주거복지전달체계 방향)

↳ 지역내 외국인 노동자 능력배양교육 및 한국 체류 관련 상담기관 부재 (현 한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담당)

④ 농업 이주노동자를 지역 공동체로 인식하고 마을 내 상생하기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 발굴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

↳ 지역주민, 농업 이주노동자를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 제공(지역축제, 이주민 영화제, 다문화프로그램)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는 컨택트(대면)시대에서 언택트(비대면)시대로의 변화 또는 언택트와의 공존의 시대로 옮겨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문화적인 환경의 변화는 교육현장의 변화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대상의 한국어 교육 역시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우선 결혼이민자 증가율의 둔화와 결혼이주여성의 거주 장기화가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2018년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국내 체류 결혼이주여성의 연령별 특성은 29세 이하 19.7%, 30대 35.1%, 40대 23.7%, 50대 15%, 60세 이상 6.5%로 나타났습니다. 체류기간 별로 5년 미만은 16.1%, 5~10년 미만은 36.1%, 10~15년 미만 33%, 15년 이상 27.6%로 5년 이상 거주 비율이 전체 결혼이주여성의 80%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 국내체류 장기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중장기 체류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아직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육은 기초교육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2018년부터 시행되는 제3차 다문화가족 시행계획 4년차를 맞아 초기적응 중심의 정책에서 장기정착화에 따른 정책 이행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도 시급한 현황임이 분명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블렌디드 러닝을 통한 한국어 교육의 혁신 방안을 연구한 이 연구는 굉장히 시의 적절하고 연구의 가치가 있는 연구라고 보여집니다.

김선정, 강현자(2019)에서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문화교육 프로그램 담당자 대상 요구분석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프로그램의 단점으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으로 수강생의 낮은 참여율(33.1%)을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 불충분한 재정(28%)과 수강생 모집(20%)이 가장 어려움이 2위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온라인 한국어교실을 확대하고 보급함으로써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원하는 수업을 언제든지 수강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밝히다 싶이 '찾아가는 한국어교실'이 결혼이민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듯이 이동으로 인한 공간적 시간적 불편함을 온라인 수업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온라인 교육을 접목한 블렌디드 교육 연구가 확장되고 온라인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교육과정의 체계화가 확대되고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내에는 한국어교사 자격을 취득한 경험과 능력을 겸비한 훌륭한 한국어 교사들이 있습니다. 실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한국어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진들도 한국어교사 수급의 어려움은 2%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많은 한국어교사 분들의 현장 교육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한국어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및 온라인 교육컨텐츠가 개발되고 교육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지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밝히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도 농촌지역의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업 부문 노동력 부족 현상으로 공급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임금 상승은 인력 부족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이주 노동자를 고용하고, 고용 규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농업 부문 이주 노동자와 관련된 주거 지원연구는 단편적이고 미흡하다. 따라서 농업 부문의 이주 노동자 고용관련 실태에 근거하여 해당 제도 및 정책 집행 과정의 전반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기존 관련 연구와 제도 및 정책을 정리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에 대한 각종 통계자료를 조사·분석하였다. 그리고 농업 부문의 외국인 이주 노동자 주거 지원사례를 통해 본 지역재생 관련 쟁점을 정리, 분석 하여, 이러한 제도상의 한계점과 미비점을 개선하는 정책과제를 제시하여 계절적 노동 수요가 농가의 안정적 노동력 공급 방안을 농업 이주 노동자의 주거지원 사례 분석을 통해 모색하였다. 이 과정에서 가용통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 연구는 철원군 근남면 일대 농업 이주 노동자 주거지원 사례를 통해 지역재생을 위한 주체별 역할과 공동체 주택의 과제를 모색하여, 농업 현장의 문제점을 반영하여 제시하고, 이주 노동자 고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부처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연관되어 있어 앞으로도 이와 관련한 정책 방향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이 연구가 농업 부문 이주 노동자 고용 관련 주거지원 문제의 개선과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1) 용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함.

- 이주 노동자
- 이주 근로자
- 외국인 노동자
- 외국인 근로자 등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별로 사항에 따라 사용 하고있는 것으로 확인하여서며,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용어는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2) 강원도에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의 농축산업부분에 비중이 낮고, 계절 근로자(C-4)가 많은 것을 통계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 외국인 근로자에게 특화된 거주지원책은 무엇인가? 고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연구 요약

본 연구는

철원군 근남면일대 농업 이주노동자 주거지원 사례를 통해  
지역재생을 위한주체별역할과공동체 주택의 과제를 모색하였음

- ① 지역재생농촌지역의 농업 이주노동자 주거문제는 현 법·제도상 해결할 수 없는 한계임 (한계)
- ② 추진주체별 농업인력지원공간 조성 합의 (주체별합의)
- ③ 철원군 농업 이주노동자 주거실태조사 결과 고용주, 지자체, 농업 이주노동자는 외국인 주거시설 필요 (새로운 기능)

- ④ 외국인 주거시설 운영을 위한 양지마을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의 역할 (비영리 사회적 경제 조직)
  - ↳ 각 이해관계자 별 농업 이주노동자 주거시설지원에 대한 요구 존재
  - ↳ 주거 요구는 외국인 주거시설 구조 및 설비, 외국인 주거시설 운영, 주거서비스에 대한 것으로 파악
  - ↳ 사회경제조직의 필요 역량은 주거시설 유지관리, 주거서비스운영, 외국인 근로자 대상 입주관리교육 및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으로 파악

4) 시사점

이러한 농업인력지원공간 조성을 위한 추진 주체들의 노력, 지원방향 모색은 농촌 공동체 재구성을 위한 적극적인 논의로 볼 수 있으며,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실현을 위한 주거복지실천 과정이라 할 수 있음

- ① 농업 이주노동자의 주거시설의 운영방향 (주거서비스 제공)
- ③ 농업 이주노동자 대상 교육 및상담제공 고려 (주거복지전달체계 방향)
  - ↳ 서비스 부가형 공공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운영 모색
  - 기숙사 건물의 유지관리 서비스, 가사서비스, 기숙사-농장 간 이동서비스(셔틀버스) 등 관련서비스 제공
- ② 사회적경제조직(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의 주요서비스 제공자로서 역할 확립(주거복지전달체계)
  - ↳ 주요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자발성실패 방지를 위한 추진 역량강화
  - 마을 내 운영인력 확보, 수익금을 활용한 지속적인 교육, 사업추진역량 배양
  - ↳ 지역내 외국인 노동자 능력배양교육 및 한국 체류 관련 상담기관 부재(현 한국 외국인노동 자지원센터 담당)
- ④ 농업 이주노동자를 지역 공동체로 인식하고 마을 내 상생하기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 발굴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
  - ↳ 지역주민, 농업 이주노동자를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 제공(지역축제, 이주민 영화제, 다문화프로그램)

연구의 요약과 시사점을 보면 철원군 근남면일대 농업 이주노동자 주거지원 사례를 통해 지역재생을 위한주체별역할과 공동체 주택의 과제 통해분석과 시사점을 잘 제시 하여습니다.

농촌지역의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업부분만 아니라 한국의 노동력 부족 현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유입에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저임금 노동력이 필요하고, 또한 외국인 근로자는 많은 임금이 필요합니다. 많은 연구에서도 이를 확인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의 주거문제 등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용주의영세함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시재생뉴딜사업등과 같은 주거관련 정책 각 부서에 제안과 사업 하고 있습니다. 요약과 시사점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장과는 좀 다른 현실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주거지원정책과 외국인 근로자라는 사용 용어에서부터 모든 것에는 이민정책에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만 외국인 근로자 모든 정책에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2022

#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학술대회



## 세션 2.

좌장 | 권요섭(인하대)

발표 3 \_ 남정연(인하대)

이혼을 경험한 베트남 이주여성의 생애사연구

발표 4 \_ 김은희(인하대)

결혼이주여성의 자조모임 참여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토론 3 \_ 박봉수(디아스포라연구소) / 토론 4 \_ 남부현(선문대)



## 국문초록

본 연구는 듀이의 경험이론을 중심으로 베트남 한부모이주여성의 생애 경험, 그리고 그러한 생애 경험에서의 성장 변화한 모습을 통해, 한부모이주여성의 성공적인 자립 및 성장을 위한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심층면담과 연구참여자의 에세이를 바탕으로 Mandelbaum(1973)의 3차원 분석틀인 「삶의 영역」, 「전환점」 그리고 「적응」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삶의 영역」은 “가족을 위해 희생하다”, “산업연수생이 되다”, “긍정의 힘으로 겪어내다”, “산업연수가 끝나다”로 「전환점」은 “이민자로 결혼하다”, “이혼을 하다”로 「적응」은 “자립을 위한 노력”, “성장하는 체험”으로 도출되었다.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이혼 예방과 이혼 시 법적 지원, 아동의 돌봄서비스, 한부모이주여성의 취업교육에 관한 탄력적 정책을 제언했다.

※ **주제어** : 결혼이주여성, 이혼, 생애사연구, 듀이의 경험이론, 멘델바움

## 서론

한국의 국제결혼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것은 1990년대 이후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짐과 동시에 여성들의 가치관이 크게 달라졌다. 농촌의 여성들이 도시로의 이동, 경제적으로 더 발달한 해외국가로의 이주를 선택하거나, 가부장제를 대항하여 결혼을 거부하는 여성이 늘어났다(이춘양, 2021: 1). 이러한 현상으로 한국 남성의 결혼 문제는 내부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로 드러났다.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결혼이주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박재규, 2006; 김아영, 2012), 정부는 결혼인구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의 농촌 후계자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 주도형 국제결혼’을 도입하였다(황달기, 1993).<sup>1)</sup>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들은 결혼을 통해 미래에 대한 기대를 안고 한국 땅에 들어왔다. 젊고 활기차며 근면 성실한 모습으로 이국 생활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게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의 해체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이춘양, 2021: 1).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전체 다문화가정 중 이혼·별거(16.4%) 및 배우자 사망(4.8%) 가정의 비율은 전체 다문화가정의 21.2%에 달했으며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9).

결혼이주여성은 가족의 지원이나 사회적 지원이 거의 없어 이혼 이후 삶의 적응에 매우 취약하다. 무엇보다 결혼이주여성은 이혼으로 인한 상실감에 적응해야 하며 새

1)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농촌의 인구 문제가 개인적 차원의 대응을 넘어 지역 전체로 확대, 심화되는 과정에서 필리핀 여성의 결혼이주를 받아들이게 되었다(김현미, 2006).

로운 생활양식의 획득이라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다(Spanier & Casto, 1979).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주여성이라는 제도적 지위의 특수성과 사회적 관계망의 단절이라는 한계가 더해져 이혼 후 삶에 대한 심각성이 더욱 부각된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이 이혼으로 남편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언어와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사회에서 홀로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과 시련의 시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예리(2011)는 밝히고 있다. 가정해체를 경험한 '선배' 한부모이주여성들의 생애 경험, 그리고 경험 속 성장 사례에는 많은 지혜와 노하우가 숨어 있다. 이와 같은 지혜와 노하우는 '후배' 한부모이주여성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문제 상황을 대체하고 성장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들의 경험은 다른 한편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해체 현상 예방 및 한부모이주여성을 위한 지원 방안 탐색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듀이의 경험이론을 중심으로 베트남 한부모이주여성의 생애 경험, 그리고 그러한 생애 경험에서의 성장 변화한 모습을 통해, 한부모이주여성의 성공적인 자립 및 성장을 위한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연구문제 1: 이혼을 경험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생애 경험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이혼을 경험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경험 속 성장 변화는 어떠한가?

연구문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문헌분석을 통해 이혼을 경험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현황과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인터뷰와 에세이를 활용한 자료 수집을 할 것이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생애 경험을 살펴본 다음, 그러한 과정 속의 변화 및 성장 모습을 이해하고자 한다.

## 이론적 배경

### 베트남 이주여성의 결혼과 이혼

2020년 한국의 전체 혼인 중 다문화 혼인은 16,177(7.6%)건으로, 전년(24,721건)보다 2.7% 감소하였다. 다문화 혼인의 유형은 외국인 아내(66.4%), 외국인 남편(18.7%), 귀화자(14.9%)순이며, 전년 대비 외국인 아내와의 혼인은 37.3% 감소, 외국인 남편은 29.0%, 귀화자는 27.3% 각각 감소했다(통계청, 2021).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가 간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결과로 사료된다. 그러나 외국인과의 혼인은 한국 사회에서 이미 보편화된 결혼 형태로 볼 수 있다. 아래 <표 1>은 결혼이주여성의 대표적 결혼 형태인 '한국 남성 + 외국 여성'의 출신 국적별 혼인 비중(2018-2020)이다.

<표 1> 출신 국적별 혼인 비중(2018-2020년)

(단위: 건, %)

아내	2018	2019	2020
건수	23,773	24,721	16,177
계*	100.0	100.0	100.0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한국                      외국<sup>2)</sup>                      베트남                      중국                      태국                      일본                      미국                      필리핀                      캄보디아                      러시아                      대만                      몽골                      기타                 </div>	18.8	17.7	19.2
	81.2	82.3	80.8
	30.0	30.4	23.5
	21.6	20.3	21.7
	6.6	8.3	10.7
	4.2	3.7	4.7
	2.7	2.7	2.9
	4.0	3.6	2.6
	2.5	2.5	2.4
	1.0	1.3	1.7
	1.3	1.3	1.4
	0.9	0.9	1.0
	6.4	7.3	8.0

출처: 2020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국적 미상 제외)

통계를 살펴보면, 한국남자와 혼인한 외국인 여성 중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다른 나라 여성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혼 비중은 이혼 건수에도 영향을 미쳤다. 아래 <표 2>는 출신 국적별 이혼 비중(2018-2020년)이다.

<표 2> 국적별 이혼 비중(2018-2020년)

(단위: 건, %)

아내	2018	2019	2020
건수	10,254	9,868	8,685
계*	100.0	100.0	100.0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한국                      외국<sup>3)</sup>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일본                      우즈베크                      미국                      몽골                      러시아                      기타                 </div>	16.1	17.1	16.4
	83.9	82.9	83.6
	39.9	37.8	34.9
	26.1	26.5	28.6
	3.9	3.9	4.2
	3.3	3.1	3.1
	1.6	1.9	2.8
	1.8	2.0	1.7
	1.4	1.3	1.5
	1.3	1.5	1.2
	1.1	1.0	1.1
	0.6	0.6	0.8
	3.1	3.4	3.7

출처: 2020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국적 미상 제외)

- 2) 귀화자는 귀화 이전 출신 국적, 외국인인 혼인 당시 외국 국적으로 분류.  
 3) 귀화자는 귀화 이전 출신 국적, 외국인인 혼인 당시 외국 국적으로 분류.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다문화 이혼을 한 외국 출신의 아내의 국적은 중국이 34.9%로 가장 많고, 베트남(28.6%), 필리핀(4.2%) 순으로 많았다. 그러나 전년 대비 중국의 비중은 2.9%p 감소한 반면, 베트남의 비중은 2.1%p 증가하였다. 베트남 이주 여성의 결혼과 이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주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인과 베트남인의 국제결혼(한-베 국제결혼)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나, 베트남 전쟁 등의 이유로 중단 상태에 놓였다가 1992년에 양국의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재기되었다(김현재, 2007).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외교정책에 힘입어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현지처를 두는 한국 남성들이 생겨났고, 산업연수생의 신분으로 입국한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는 남성들도 있었으나 2000년까지만 해도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혼인 건수(총 77건)는 전체 국제결혼의 1%도 안 되었다. 그러나 2000년 초반부터 국제결혼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베트남 신부의 유입이 급증하였는데, 2010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이루어진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국제결혼은 9,623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들어 베트남 정부가 한국 사람과의 국제 혼인을 규제<sup>4)</sup>하고 있어 과거에 비해 한국으로의 결혼이주가 주춤한 상태이나, 여전히 매년 수 천 명의 베트남 여성들이 결혼을 매개로 한국으로 이주하고 있다(서홍란 외, 2016: 36).

베트남 남부지역의 여성의 경우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대만, 한국 등의 아시아 국가 남성들과의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김영옥·김현미, 2013; 서홍란·김기연·김양호, 2008). 특히 베트남 남부 지역 농촌의 빈곤층 출신의 이주여성들은 이민족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고 이에 개방적이며, 빈곤에서 벗어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국제 결혼을 선택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이들의 경우 교육 수준이 낮고 기술이 부족해 노동이주 등과 같은 다른 유형의 해외이주를 선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최호림, 2015). 이러한 경제적인 이유 이외에도 베트남 여성이 한국 남성을 선택한 이유를 살펴보면 1990년 후반부터 동남아시아에 불기 시작한 한류의 영향이 컸으며, 항공 및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베트남과 한국 간의 지리적, 심리적 간격이 줄어들면서 한국 남성을 더욱 선호하게 되었다(김현재, 2007; 조현하·박은숙·오원옥, 2014). 베트남 여성의 국제결혼 동기를 정리하면, 한국에 대한 동경과 신분상승(김현재, 2007; 서홍란 외 2008)을 위한 것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탈피하고자(탄티튀히엔, 2006; 김현미, 2006) 선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선행연구 35편을 분석한 결과 양적연구에 비해 질적연구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sup>5)</sup> 그 중 자녀양육에 관한 연구(이지연 외, 2019; 오은정 외, 2018; 조현하 외, 2014; 팜티훤짱 외, 2014; 구상미 외, 2012; 이선희 외, 2015)가 6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임신과 산후 적응에 관한 4건의 연구(정금희 외, 2019; 이선희, 2017; 김선희, 2015)였는데, 자녀양육과 함께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성에 관해 연구의 초점이 맞춰졌음을 알 수 있다. 모성 경험 및 모성 갈등(권영은, 2018; 최대희, 2015; 김경민, 2021)을 연구한 3건의 연구 역시 여성성에 초점이

4) 베트남에서는 젊은 베트남 여성이 50세 이상의 한국남성과 결혼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함.([http://www.koreatimes.co.kr/www/news/nation/2012/02/117\\_105139.html](http://www.koreatimes.co.kr/www/news/nation/2012/02/117_105139.html))

5) 분석대상 문헌 35편 중 2편만이 양적연구였으며, 나머지 33편은 질적연구에 해당되었다.

맞춰졌다. 결혼이주여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연구의 대부분이 여성성과 관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정주연, 2008; 박순호, 2013; 문수경, 2015; 이홍자, 2015)한 연구물은 4건이며, 한국사회 적응(정용미, 2021; 이은하, 2013; 이은주, 2014)을 연구한 연구는 3건인데,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곧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적응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자녀교육 연구(최승은, 2019; 용티탄프, 2018)와 문화적응 연구(이애련, 2014; 이설희, 2019) 그리고 가족 특히 배우자의 지지와 사회적 안녕감을 연구(김소희, 2018; 박인옥, 2019)한 연구물은 각각 2건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모두 1건씩이었으며, 주제 또한 다양했다. 노후생활(성지혜, 2015), 사회참여와 사회적 지지를 통해 삶의 질에 대한 구조적 관계 분석(서재복, 2018),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 관련 요인 탐색(김현수, 2012), 생애사를 통한 검정고시 학습경험 연구(서홍란, 2016), 우울과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문을 통해 연구(홍선엽, 2013), 사회참여를 위한 취업프로그램 구안(김효정, 2013), 사별 후 한부모 이주여성으로 홀로서기 삶 연구(김하영, 2019) 등이 있다. 베트남 이주 여성의 이혼에 관한 선행연구는 미미했다. 사회복지 제도 및 서비스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실시한 박송이 외(2020)는 최근의 베트남 한부모 이주여성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연구이다.

선행연구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베트남 이주여성의 이혼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미하다. 따라서 생애사 연구를 통해 이혼 경험 후 성장 변화한 모습을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연구한 타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결혼이주여성의 이혼의 사회문화적 또는 규범적 의미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이혼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관계를 결혼 당사자들이 합의 또는 재판상의 절차를 거쳐서 소멸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최규련, 2005). 이러한 이혼은 하나의 사건(event)으로 보기보다는 단계를 거쳐서 진행되는 과정으로 본다(Glick et al., 1999). 이에 Booth & White(1980)는 이혼의 과정을 결혼생활의 문제를 지각하는 단계에서부터 이혼 가능성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려하는 단계, 그리고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한 후 경험하는 단계까지의 문제와 적응과정까지도 포함한다고 하였다. 이렇듯 이혼은 모든 가족들에게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하는 힘든 사건이며 이혼을 경험하는 당사자들은 많은 심리적·사회적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Kitson & Morgan, 1990).

사회문화적 맥락을 공유한 일반적인 부부의 이혼은 삶의 다차원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배우자와의 분리로 자녀 양육의 부담이 증가하고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되며 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경험한다. 반면에 다문화가정을 이루는 부부는 자신들이 성장하면서 습득한 문화와 관습들이 배제되고, 한국에서 부부로서 살아가기 위한 사전 공감이나 탐색의 과정이 없다. 때문에 다문화가정의 부부는 상이한 문화적 배경으로 나타나는 언어와 문화적 차이, 가치관 및 생활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해 결혼생활에 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야기한다. 특히 한국사회의 가부장적인 가족문화,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방식의 차이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 과정을 더욱 어렵게 한다(변미희·강기정, 2009).

다문화가정은 남편의 타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과 가정폭력,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

아 발생하는 의사소통의 결여,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부정적 시각 등으로 다문화 사회의 초기부터 가정폭력과 학대의 문제에 대한 예상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는 부부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 되면 욕구좌절이 증가하게 되고 결국 부부관계가 파괴되어 갈등과 분노를 비현실적으로 다루게 되면서 학대의 결과가 도출된다는 것이다(Fincham, 2003; Wu & Demaris 1996, 김태량, 2019에서 재인용). 그러나 결혼이주여성들은 심각한 수준의 폭력과 가족갈등을 경험하면서도 쉽게 이혼을 결정하지 못한다. 결혼이주여성은 본인들의 의존적인 체류자격 문제나 본국에 있는 가족부양에 대한 부담감, 자녀에 대한 애정과 책임의식 등으로 이혼결정을 내리는데 부담을 가지기 때문이다(김태량, 2019).

한부모가 된 후의 적응 및 자립에 있어서 한부모이주여성들은 무력감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서 어머니 역할에 대해 재인식하게 된다.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터득하면서 아이를 위해 견디며 긍정을 품어 두 문화의 공존을 도모해, 자녀 양육 및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춘양, 2021: 32).

## 2. 듀이의 경험이론과 성장

경험이란 단어는 다양한 의미로 일상생활에서 사용된다. 경험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인간의 감각을 통해 얻는 것과 그것을 획득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우리의 생활에서 경험은 물리적 개념의 의미에서부터 추상적 개념의 의미까지 다양하게 사용되며, 경험의 의미적 확장을 통해 인간 생활의 연속성과 상호교환적 삶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경험이론적 의미는 인식 또는 지식의 근원을 오직 경험에서만 찾는 철학적 입장 및 경향으로 초경험적 존재나 선천적인 능력보다 감각과 내성을 통하여 얻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시하여 전자도 후자에 의해 설명된다는 사고방식이다(이춘양, 2021: 36).

경험이론 중 경험의 구체적인 수준을 제시한 듀이의 실용주의 철학 핵심은 경험이다. 듀이의 경험 개념은 인간의 존재 양태, 즉 삶의 본질적인 특성과 조건을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인간과 환경 사이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이라고 정의했다. 유기체로서의 인간은 환경을 떠나 홀로 존재할 수 없다. 생물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환경 속에서 존재한다. 환경이 없는 혹은 환경을 떠난 생명체는 오로지 상상 속에서나 가능하다. 즉 인간은 환경 속에 있으며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존재할 수 있고 생존을 영위하게 된다. 단적으로 말하면 상호작용이 존재의 일차적인 사실이며 가장 근본적인 존재의 양상이라 할 수 있다. 듀이는 상호작용으로서의 경험을 통해 변화와 성장을 말하고자 한다(권윤경·이찬, 2015).

변화란 곧 경험 주체로서의 인간과 대상으로서의 환경이 새로운 관계를 설정해 감으로써 이전과는 다른 의미를 확립해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성장은 경험의 계속적인 재구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와 성장을 동반하는 경험은 삶이 계속되는 한

끊임없이 이어진다. 이를 듀이의 계속성의 원리라고 한다. 듀이의 경험은 그 자체만으로 끝나버리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경험을 발생시키는 전체 상황과의 관련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는 역동성을 지닌다(권윤경·이찬, 2015).

1차원 경험은 사람들이 자신의 활동을 통해 단순히 얻는 직접적인 경험이며, 2차원의 경험은 현재의 경험이 앞으로의 경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과정이다. 더 깊은 의미에서 미래를 위한 준비는 집중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현재의 경험에서 연계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Dewey, John, 1983). 그리고 경험을 통해 변화와 성장이 일어난다. 변화는 경험의 주체인 인간과 대상의 환경이 새로운 관계를 설정해서 종래와는 다른 의미를 확립하는 것이다. 성장은 경험이 끊임없이 재구성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와 성장에 수반하는 경험은 삶이 지속하게 될수록 꾸준히 일어난다(황건화·임선화·김주연, 2019).

듀이에 따르면 경험은 객관적이고 확실한 진리를 파악하는 활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의 상투성을 뛰어넘어 삶의 세계를 새롭게 만남으로써 질적으로 층위가 달라지고 더 성숙해지는 활동이다. '질성적 사고'를 통해 삶의 세계를 질적으로 만나고 심미적으로 경험할 때 우리는 더 나은 경험, 더 고양된 경험, 더 완결적인 경험, 결과적으로 성장으로서의 경험을 할 수 있다. 듀이는 경험을 사변적이고 객관적인 경험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와 그것이 살아가고 있는 세계의 어떤 국면 사이에서 행해지는 상호작용의 결과'로 감각, 지각, 관념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선이, 2017).

경험은 단순히 과거에 이리저리 해보던 결과를 요약한 것이 아니라고 듀이는 말한다. 경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우리가 사물에 대하여 하는 일이 될 수 있는 대로 풍부한 암시를 가지도록, 또 그 암시의 타당성을 시험해 보는 수단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는 일을 의도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뜻한다. 듀이는 존재의 일반적 특성으로 '변화'를 들면서, 모든 존재를 '사태들'로 규정한다. 이때, '사태'라는 말은 존재라는 것이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급격히, 때로는 서서히 변화해 가는 '과정'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재건, 1992; 류명길, 2002; 최은경, 2003; 이승현, 2004).

듀이의 경험이론을 정리하면 경험은 곧 삶이고, 삶은 곧 환경의 적응 작용이다. 즉 경험은 살아있는 유기체가 환경과의 상호작용이며, 상호작용의 과정이기도 하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1차 직접적 경험하면서 2차 반성적 사고를 하게 되어, 경험의 공유 등을 통해 자기 가치를 드러내며, 환경에 적응하면서 자연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행함을 통해 배우게 되고, 변화하게 되어, 성장하게 된다.

삶 전반에 나타나는 경험과 사고 그리고 성장된 변화는, 이혼을 경험한 베트남 이주여성의 생애를 탐색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잘 부합한다고 사료된다. 이를 위해서 우선 결혼 전부터 한부모가 되기까지의 1차 직접적 경험을 살펴보고, 그를 통해 생애 경험을 깊이 이해한다. 이후 한부모 되기전과 비교하여 한부모가 된 후의 2차 성장 변화 경험과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다.

## 연구방법

### 생애사 연구방법의 접근 의의

본 연구는 이혼을 경험한 베트남 이주여성의 생애 경험 및 성장 변화를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제언을 통해 알아 보기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1명의 연구참여자 인생 여정의 내러티브를 통해 삶의 영역, 전환점, 적응 등 성장 변화와 관련된 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 참여자의 생애 경험을 주로 내러티브 기법으로 분석하고 본 연구는 내러티브 연구 과정 및 절차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설계했다.

생애사연구는 한 개인이 살아온 모든 행위가 구조화된 자기상이며, 사회와의 상호 작용에 의한 구성물이라는 기본관점을 가지고 있다.<sup>6)</sup> 대도시에서의 소수민족의 일탈 과 구조적 억압 등의 연구에 의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고, 구조적 약자와 직면하면서 성장한 학문<sup>7)</sup>이라는 표현처럼 단순히 한 개인의 일생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개인의 생애사를 통해 드러난 그 사회의 구체적 일반성을 재구성하는 것이다.<sup>8)</sup> 본 연구참여자인 이혼을 경험한 베트남 이주여성은 사회적 소수자이다. 현재 삶을 유지하고 지탱하게 해주는 삶의 주요 영역과 전환점 그리고 적응 등에 대한 자기해석과 의미를 밝혀내는 데 적합하다 사료되어 채택하였다.

### 2. 연구참여자 선정과 자료수집

연구자가 점심 식사를 하러 갔던 식당에서 결혼이주여성이 서빙을 담당했다. 이주 여성의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라는 친절하고 깨끗한 한국말에 관심이 갔다. 식사가 끝난 후 사장님께 허락을 구한 후 이주여성과 짧은 대화를 가졌다. 이혼으로 인해 한 부모 가장이 된 이주여성은 자녀 둘을 키우기 위해서 식당에서 일을 한다고 전했다. 결혼이주여성과 생애사라는 키워드에 관심을 가져온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체험적 생애사가 특별하다고 생각되었다. 꿈을 안고 한국에 결혼이주하게 된 배경과 이혼의 아픔을 겪으며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하는 삶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성장의 과정으로 확장시킨 연구참여자의 삶이 궁금해졌다. 이에 연구참여자가 좋아하는 계절인 ‘가을’을 가명으로 삼는다는 동의하에 생애사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이하 ‘연구참여자’ 대신 ‘가을 씨’로 지칭함). 가을 씨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표 2> 연구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이름(가명)	성별	국적	연령	교육	자녀	거주기간
가을	여	베트남	34세	중학교 졸업	딸(7세) 아들(5세)	8년

6) Mandelbaum, G. (1973). The study of life history: Gandhi. Current Anthropology, 14(3), 177-206.

7) Yo, C. I. (1990). Problems on Data and Text = Life History and Sinsetareong. Cultural Anthropology, 22(1), 301-308.

8) Lee, J. H. (2007). A study on cultural conflicts and divorce crisis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Keimyung University Master's Thesis.

자료 수집은 심층 면담과 에세이(수기 공모)를 통해 수집하고, 면담과정을 녹음한 내용을 반복해 들으면서 내용을 전사하였다 녹음한 내용을 기초 분석한 후 동료 연구자 및 슈퍼바이저와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연구참여자에게 연구결과를 공유하여 생애사 자료의 의미를 정확히 하고자 하였다.

###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시간성과 관련하여 Mandelbaum(1973)이 제시한 세 가지의 분석단위를 기초로 하여(곽성희 외, 2018), 텍스트를 분석하였다. Mandelbaum(1973)은 연령에 따라 서술하는 생애사의 물리적 분석 방법에서 벗어나, 생애사 텍스트를 3차원 분석틀인 “삶의 영역(dimensions)”, “전환점(turning point)”, 그리고 “적응(adaptation)”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삶의 영역은 가을 씨의 생애를 총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개인의 삶을 가족, 사회, 경제, 이주배경 등 경험 위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 과정에서 경험을 통한 성장 영역을 중시하고자 하였다. 전환점에서는 결혼이주를 통해 경험한 일상적 삶과 이혼을 하게 된 배경 등 삶의 전환을 이룬 순간과 그 일이 일어나게 된 전후의 개인적인 경험과 함께 사회적 조건을 살펴보았다. 적응에서는 개인의 고유한 적응양식을 분석하는 것으로, 개인이 삶의 전환점을 맞이한 순간 어떤 시각전환과 대처방법을 통해 환경과 상호작용을 했는지 적응기제가 상호작용에 따른 구성물이라는 관점을 유지하며 삶의 주체자로서 어떻게 성장·변화했는지 초점을 맞춰 분석하였다. 경험적 상황에 따라 대처 및 성장해나가는 생애사적 패턴발견을 위해 인터뷰 내용에서 사용된 의미와 그 중요성을 바탕으로 계열화와 범주화를 실행하였으며, 녹음내용을 그대로 전사한 것을 반복해서 읽고 행간을 따라가면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수용하게 된 몇 가지 관련된 핵심적 범주와 주제어를 찾아냈다. 삶의 영역은 “가족을 위해 희생하다”, “산업연수생이 되다”, “긍정의 힘으로 견어내다”, “산업연수가 끝나다”로 전환점은 “결혼을 하다”, “배신으로 얼룩진 상처”, “이혼을 하다”로 적응은 “신뢰의 힘”, “글을 쓰다”, “나를 찾고, 나를 만나다”로 분석하였다.

### 4. 연구의 윤리적 고려

연구자는 가을 씨와 손님과 식당 종업원의 만남으로 시작되었지만, 이후 잦은 만남과 대화를 통해 신뢰를 형성하였다. 심층 면담 전에 생애사 연구에 대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가을 씨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하고 비밀보장을 설명했다. 논문 작성과정에서 전사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된 자료의 정확도를 위해 가을 씨의 확인절차를 거쳤으며 피드백을 반영하는 절차를 거쳤다.

## 연구결과

### 1. 연구참여자의 생애사 요약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900km 정도 떨어진 헌장시 롱미현에서 태어난 연구참여자는 아버지, 어머니, 오빠와 함께 살았다.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일찍 취직하여 오빠의 학업을 도왔다. 이후 <해외노동력수출운동>이라는 산업연수생 프로그램에 지원하면서 한국에 오게 되었다. 연구참여자에게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첫인상은 친절함이다. 그 이유는 한국행 비행기를 기다리는 공항에서 한국 사람들에게 받은 친절 때문이다. 이러한 일들은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편안한 마음으로 한국에 오게 되었다.

공항에 마중 나온 매니저는 연구참여자와 동료들을 숙소로 데려다주고, 이불과 위생도구 등을 사줬다. 방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모든 것을 스스로 꾸려 나가야 했다. 같은 회사 선배 베트남 언니들 도움으로 베트남 가족들에게 연락하여 가족들을 안심시킬 수 있었다.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월급을 받은 연구참여자는 매우 기쁘고 행복했다. 한국의 한 달 월급은 베트남에서 3년은 일해야 겨우 벌 수 있는 돈이었다. 동료의 도움으로 고향에 돈을 보내드렸는데 너무 놀란 어머니는 말을 제대로 잊지 못하였다.

시간이 될 때 동료들과 함께 시장에 가곤 했다.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아름다운 상품들이 차고 넘쳤다. 상품은 구경하는 것으로 족했고 연구참여자는 일주일 치 식량만을 사서 돌아왔다. 근면 성실한 연구참여자는 항상 배우기를 노력하고 열심히 일했다. 베트남에는 '밖에 나가면 지혜를 얻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한국에 온 연구참여자는 버스를 타는 법부터 버스에서 노인이나 장애인, 임산부에게 자리 양보하는 법 등 많은 것을 배웠다. 그리고 외국인을 안내할 때의 적극성, 언제나 쓰레기를 분리배출하고 거리에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의식 수준,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도 언제나 줄을 서서 질서를 지키는 모습, 대중교통 이용 시 안전을 위해 규정을 준수하는 모습, 엘리베이터나 화장실 등에도 노약자를 위한 시설이 있다는 점, 거리에서 어떤 것도 소매치기를 당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등을 보고 베트남도 한국처럼 발전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연구참여자가 한국에 온 지 2년이 지났을 무렵 틈틈이 글을 쓰고 한국어를 공부한 덕분에 일요일에는 외국인들에게 무료로 한국어를 가르치게 되었다. 그곳에서 다양한 나라의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사귀었다. 그들과 함께 언어를 공부하고, 여러 가지 유익하고 재미있는 활동을 하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조금씩 덜 수 있었다. 마침내 3년간의 계약이 끝나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다가왔다.

베트남에 도착한 지 7달 후 연구참여자는 한국식당 매니저로 일하게 되었다. 베트남에 돌아와서는 카카오톡과 페이스북으로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연락했는데, 그 중 특히 한 한국인 친구가 자주 연락하고 관심을 가졌다. 연락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서로를 향하는 마음도 커졌다. 3달 후, 그가 베트남에 찾아와 연구참여자의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남편은 연구참여자의 첫사랑이었고, 최선을 다해 남편을 사랑하였다. 결혼 수속을 마친 뒤, 두 번째 한국행을 위해 짐을 쌌다.

임신 7개월 때 시할머니께서 연구참여자 부부를 자신의 집으로 이사 오라고 하셨다. 할머니와 함께 살면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마음껏 놀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고 무엇보다 월세를 절약할 수 있어서 할머니 집으로 들어갔다. 할머니는 치매가 있으셨는데 평생 알뜰하게 살아오신 게 몸에 배서 밖에 나가면 고물들을 주워오곤 하셨다. 폐지, 술병, 옷, 장난감 등을 주시면서 새 물건 사지 말라고 하셨다. 쓸만한 것들은 깨끗하게 세탁해서 사용했다. 남편 월급이 많지도 않았고 연구참여자가 직장을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절약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결혼 5년 때까지 행복한 시절을 보냈다. 그러나 아이들이 태어나고 남편은 조금씩 변해갔다. 결혼 이후 8년째인 지금, 꿈꿔왔던 행복은 멀어졌다. 심장을 에는 듯한 상처, 실망, 거듭되는 용서와 배신으로 지난 3년은 상처로 얼룩졌다. 남편은 직장동료인 필리핀 결혼이주여성과 외도를 하고 있었다. 다시는 안 만나겠다고 약속했던 외도녀와 집을 나가 3개월 동안 같이 살기도 했다. 남편은 용서를 구하고 집으로 다시 들어오기를 여러 번 반복했고 그때마다 연구참여자는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남편을 용서해줬다.

남편의 외도는 멈추질 않았다. 더이상 남편을 붙들 수 없다고 생각한 연구참여자는 이혼을 결심했다. 가정법원에서는 연구참여자에게 양육권을 주었다. 남편과 외도녀에게 위자료 지급과 남편에게는 추가로 양육비 지급을 판결했다. 그러나 남편은 그 모두를 지급할 형편이 안 된다고 현재까지 생활비나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다. 남편의 반대로 아직 국적 취득을 하지 못한 연구참여자는 무엇보다 국적 취득이 우선이라고 했다.

연구참여자는 이혼 후 식당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며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 남편의 외도를 아는 순간부터 지옥 같은 삶을 살았고 항상 불안의 연속이었다. 사람에게 대한 믿음도 없어졌다. 그러나 두 자녀를 키워야 한다는 일념과, 이웃들의 위로에 힘입어 다시 일어서고 있다. 요즘 연구참여자는 첫째 딸의 내년 초등학교 입학이 가장 큰 걱정이다.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나면 더이상 맡길 데가 없는 것과, 한국의 학제 시스템에 대해 아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 모든 것을 혼자 헤쳐 나가야 한다는 두려움과 걱정이 있지만, 전과 같은 불안한 마음이 아니어서 좋다고 했다. 삶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와 성실한 태도로 직장 동료들은 연구참여자를 믿고 지지해준다. 손님들 또한 열심히 살려는 그녀의 모습에 많은 응원을 보낸다.

## 2. 생애사 자료 분석

본 절에서는 연구참여자가 구술한 내용을 기초로 “이혼을 경험한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의 삶의 과정” 생애사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Mandelbaum(1973)이 제시한 삶의 영역(dimensions), 전환점(turning point), 적응(adaptation)의 3가지 차원<sup>9)</sup>에서 수행했고, 여기에서 도출된 생애개념을 공통의 주제로 묶어 범주화했다.

삶의 영역(dimensions)은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동력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생

9) 멘델바움은 나열식·연대기식 생애사 묘사에서 벗어나 분석적이고 과학적인 수준으로 나가기 위한 구조화된 세 가지 분석틀을 사용하였다. 그는 간디의 생애사를 연구할 때, 삶의 영역(dimensions), 삶의 전환점(turnings), 삶의 적응(adaptations) 관점에서 분석하였고,33 이를 통해서 생애사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임재환 외, 2020: 129).

물학적, 문화적, 사회적, 심리학적 영역들을 제공한다. 삶의 전환점(turnings)은 3가지 차원의 요소들과 결합하는데, 문화화되면서 가지게 되는 새로운 역할, 사회화되면서 가지게 되는 새로운 상호작용, 그리고 심리·사회화되면서 가지게 되는 새로운 자기개념이다. 특별히 삶의 주요한 기간들은 개인이 만드는 주된 전환점들과 주요한 변화들로 명확하게 표시가 된다. 삶의 적응(adaptations)은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만드는 변화들과 그의 삶의 여정을 통해 유지하는 연속성에 주의를 기울일 수가 있다(임재환 외, 2020: 130).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대다수의 결혼이주여성과 달리 연애를 통한 결혼이주여성이 된 경우다. 독특한 삶의 영역과 전환점 그리고 성장과 변화를 위한 적응의 모습이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위해서는 멘델바움의 생애사 분석방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위의 구조화된 세 가지 틀을 활용하였다.

## 1) 삶의 영역

삶의 영역이란 생활영역이 아니라 한 개인이 관계 맺고 생활해 온 구조인 동시에 차원이다. 가을 씨의 본국 생활에서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생애 사건과 연결된 삶의 영역은 '가족을 위해 헌신하다, 산업연수생이 되다, 공정의 힘으로 겪어내다, 산업연수가 끝나다'였다.

### (1) 가족을 위해 헌신하다

#### ① 오빠를 공부시키다

연구참여자는 이해력이 빠르고 습득력이 좋아 공부를 곧잘 했다. 진학하여 공부를 계속 하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을 잘 알았기에 부모님께 공부하고 싶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중학교 학력을 끝으로 학교와 인연을 끊었다. 대신 자신이 번 돈으로 오빠의 학업을 도왔다. 그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임을 깨닫고 기쁘게 감당했다.

나는 공부하는 거 좋아했어요. 성적이 좋았고 친구들 가르치는 것도 좋아했어요. 근데... 집이 가난하니까 내가 더 학교 가고 싶다고 말하지 못 했어요. 공장에서 3년 동안 일하면서 오빠 공부하는 거 도와줬어요. 부모님이 오빠 공부하는 거 좋아했어요. 그래서 힘들었지만 열심히 오빠 도와줬어요. 한국 와서 돈 벌면서도 계속 오빠 공부 시켰어요. 나중에 산업연수생 끝나고 베트남 가니까 오빠가 정치중위장교가 되어 있어서 너무 기뻐요.

#### ② 가정경제를 책임지다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연구참여자는 일찍 취직하였다. 부모님은 어린 딸이 돈을 벌러 간 것에 대해 미안해하셨지만 워낙에 가난한 집안 사정 탓에 연구참여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때부터 연구참여자는 결혼 후 몇 년 동안 꾸준히 베트남의 부모님에게 용돈을 보내드린 효녀였다.

우리 집은 엄청 가난했어요. 정말 가난뱅이... 그래서 나는 도시로 나가 가방 공장에 취업했어요. 우리 고향은 가난해서 나처럼 일찍 돈 벌러 나간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때부터 나는 계속 돈 벌면서 부모님 보내줬어요. 가방 공장에서는 한 달에 50만 동(한화 약 2만 5천 원) 받았는데, 숙식을 제공받았기 때문에 거의 전부를 다 집에 보냈어요. 한국 왔을 때도 기숙사에서 살아서 식료품 살 것만 빼고는 거의 다 베트남 집에 보냈어요.

### ③ 엄마의 병간호를 하다

타지에서 일을 하던 연구참여자는 엄마가 편찮으시게 되자 간호를 위해 고향으로 돌아왔다. 연구참여자는 어린 나이의 딸이고, 동생이었지만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여성으로 자라났다. 그러한 연구참여자를 부모님은 신뢰했고 의지했다.

가방 공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엄마가 갑자기 수술하게 되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엉덩이에 무슨 종기가 났는데 그게 너무 커져서 수술해야 한다고 했대요. 그래서 내가 엄마를 돌봐줘야 해서 일을 그만두고 고향에 갔어요. 집에 가서 좋긴 했지만 엄마가 아파서 슬펐어요. 엄마는 또 당뇨병이 있어요. 외할머니도 있어요. 그럼 나도 있어요. 유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행히 엄마 빨리나아서 퇴원했어요. 부모님 아프지 않으면 좋겠어요. 불쌍해요.

## (2) 산업연수생이 되다

### ① 한국어 3개월 과정에 등록하다

연구참여자는 <해외노동력수출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어 3개월 과정에 등록하였다. 여기에는 공핍한 가정형편 배경이 깔려있었다. 결국한국 회사의 입사시험에 합격함으로써 연구참여자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다.

마을에서 말레이시아랑 함께 한국으로 노동력수출을 한다고 했어요.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국어 3개월 과정에 등록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가난뱅이의 결심과 의지로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한국어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쳐 주셨고, 가족들도 많이 응원해줬어요. 한국 회사의 3단계 시험에 내가 합격했어요. 그래서 보따리 싸서 호찌민시 기차역으로 향했어요. 엄마가 나 주려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셨는데, 내 손에 쥐어주면서 많이 울었어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눈물 나오. 엄마 불쌍해. 엄마 마음 아파할까 봐 안 울려고 참았는데, 기차 출발하니까 막 눈물 났어요. 며칠 밤낮을 철길 위에서 우는 동안 기차가 하노이에 도착했어요.

### ②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오다

한국으로 가기 위해 대기하던 공항에서 한국 아주머니와 중년 신사가 보인 친절함 덕분에 한국에 대한 첫 이미지가 좋았다고 했다. 낯선 한국에서 산업연수생으로의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다.

하노이 공항에서 한국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말을 걸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는데, 통역원이 한국 회사에 취업하러 가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니 우리를 칭찬했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푸른색 지폐 한 장씩을 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의 만 원짜리 지폐였어요. 그 돈은 정말 귀하고 큰돈이었어요. 그 돈으로 회사 가기 전까지 생수랑 샌드위치 사서 먹었어요. 공항에서 만난 중년의 아저씨도 우리 회사 이름을 보더니, 좋은 회사라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처음 만난 한국 사람들인데 너무 친절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았어요.

## (3) 긍정의 힘으로 겪어내다

### ① 한국의 낯선 생활에 적응해 나가다

한국의 겨울은 살을 에는 듯한 추위였다. 너무 추워서 집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커졌다. 그러나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연구참여자는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했다고 했다. 점차 한국문화에 익숙해지는 법도 익혔다.

한국의 겨울은 너무 추웠어요. 이에서 딱딱 소리가 났어요. 너무 춥다 보니까 베트남 집이 그리웠어요. 베트남도 사계절이 있지만 한국보다 따뜻하잖아요. 근데 하얀 눈이 너무 신기했어요. 베트남에서는 볼 수 없었어요. 한 달 지나서 월급을 받고 친구 도움 받아서 엄마한테 보내드렸는데 엄마가 너무 좋아했어요. 저도 돈 많이 벌어서 좋았어요. 엄마가 말을 하지 못할 정도였어요. 한국의 한 달월급은 베트남에서 3년은 겨우 일해야 벌 수 있는 돈 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함부로 쓰지도 않았어요. 시장 가도 일주일 치 식료품만 딱 사오고, 나머지는 다 눈으로만 보고 왔어요(웃음). 그리고 한국 처음 왔을 때 진짜 이상했던 것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쓰레기를 나누어서 버리는 거였어요. 버스나 지하철 타면 노인이나 임신한 사람 자리가 따로 있는 것도 신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익숙해졌어요. 베트남도 한국처럼 발달하면 좋겠어요.

## ② 회사에서 인정받다

항상 성실하고 배우려는 자세로 일에 임한 연구참여자는 회사에서도 점차 인정을 받았다. 처음에는 힘든 일을 준다고 느꼈을 때, 자신이 외국인이라서 차별대우를 당하는지 의심을 하기도 했지만 이내 그것이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아서임을 깨달았다고 했다.

일할 때 나는 항상 배우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매니저가 어렵고 힘든 일을 준다고 느낄 때마다 나는 눈물이 났어요. 내가 외국인이라서 차별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속상했지만 내가 이제 어려운 일도 잘 할 수 있게 돼서 그럴 거야 하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했어요. 실제로 회사 일이 점점 익숙해졌어요.

## ③ 또 다른 이주민에게 선을 베풀다

한편 연구참여자는 한국에 살면서 언어가 익숙해지자 자신보다 언어가 취약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한국어 교육을 시키기도 했다.

한국에 온 지 2년쯤 됐을 때 나는 한국어가 많이 늘었어요. 쉬는 날 숙소에서 글을 쓰거나 책을 보면서 한국어 공부를 했거든요. 길도 많이 알게 돼서 버스를 타고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한 외국인들한테 가서 한국어를 가르쳤어요. 거기에서 친구들, 선생님 만나서 즐겁게 활동했어요. 그래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많이 덜 수 있었어요.

## (4) 산업연수생이 끝나다

### ① 한국 식당에서 일을 하다

드디어 3년간의 계약 기간이 끝나고 연구참여자는 가족이 있는 베트남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7달 후 한국식당에서 매니저로 일을 하게 되었다. 한국에서 산업연수생으로 3년간 있으면서 늘었던 한국어 덕분인 것 같다고 했다. 당시에는 삶의 모든 것이 잘 풀릴 것만 같았고 미래가 밝게 느껴졌다고 했다.

시간이 흘러 내가 기다리는 날이 돌아왔어요. 얼마나 기다렸던지 귀국 2주 전부터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는 거예요. 마음은 계속 조금해지는데 몸은 점점 게을러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정말 이상했어요. 그러다 마침내 귀국하는 날이 다가왔는데, 베트남 친구랑 한국 친구들이 공항에 와서 배웅해줬어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많은 추억을 내게 안겨준 한국어 안녕~ 하고 비행기에 올랐어요. 베트남 공항에는 부모님이랑 오빠 그리고 고모가 나오셨는데, 오빠는 군대에서 5년간 훈련을 받고 정책장교가 됐대요. 너무 반갑고 기뻐서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몇 달 후에 나는 한국식당에서 매니저로 일을 했는데 월급을 많이 줬어요. 아마 내가 한국어를 잘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내 앞날이 활짝 핀 꽃처럼 느껴졌어요.

## ② 사랑을 키우다

한국의 한 친구가 페이스북을 통해 연구참여자에게 자주 연락을 했다. 다. 둘 사이는 점차 깊어졌고 발렌타인데이에 고백을 받았다. 양가 부모님께 허락을 받은 후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 한 번도 남자를 만나본 적 없는 연구참여자는 남편이 첫사랑이었다.

어느 날 잘 알지 못하는 한국남자에게서 페북으로 연락이 왔어요.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한국 있을 때 같은 회사 사람였는데, 오며 가며 눈인사만 하는 사이였어요. 근데 내게 관심이 있었대요. 그래서 내 친구에게 페북 주소 물어봤나 봐요. 매일 연락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나이가 같아서 공감대도 많았고 생각도 비슷했고 서로 이해해줬어요. 1~2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 점점 마음이 커졌어요. 그 사람이 발렌타인데이에 맞춰서 내게고백했고, 난 그 고백을 받아들였어요. 3달 후에 그가 베트남에 왔는데 나는 호치민시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구경시켜줬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보고 싶다 해서 소개시켜 줬는데 결혼 허락을 받은 거예요. 여태까지 난 한 번도 남자를 사귀어 본 적이 없어요. 남편이 참이예요(눈물을 글썽임).

## 2) 삶의 전환분석

삶의 전환분석은 Mandelbaum(1973)이 제시한 대로 연구참여자의 생애에 있어서 전이를 가능하게 한 전환점과 전·후의 여러 가지 조건과 결과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연구참여자의 생애 전체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이는 한 개인의 생애는 물리적 시간의 직선적 흐름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미래가 서로 순환하는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위환경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다(박미정, 2015; 284). 이혼으로 한부모 가장이 되어 한국 아이를 키우는 외국인 엄마로서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전·후의 조건들에 영향을 준 과거의 전환점들은 물론 거시 구조와도 연계하여 분석했다. 이러한 삶의 과정에서 중요한 변곡점은 크게 2단계로 나타났다. ‘이민자로 결혼하다’, ‘이혼을 하다’였다.

### (1) 이민자로 결혼하다

#### ① 결혼이주여성이 되다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린 연구참여자는 남편이 먼저 한국으로 귀국한 다음 결혼수속을 끝내고 이후 한국에 들어왔다. 산업연수생으로 두려움과 낯섬으로 점철됐던 첫 번째 한국 방문과 달리 이번에는 기쁘게 짐을 싣다고 했다. 연구참여자를 반겨줄 남편과 시댁식구라는 새로운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런데 너무 좋은 일들만 생겨서 그런지 갑자기 불행한 일이 생겼어요. 아빠가 오토바이를 타고 친척들한테 청첩장을 갖다 주러 가다가 큰 사고가 났어요. 아빠는 머리를 다치셔서 수술을 받게 되었고, 그 때문에 아빠의 한쪽 뇌에 장애가 생겨버렸어요...후... 아빠 때문에 결혼식을 아주 간단하게 치렀어요. 딸의 결혼식을 보고 싶으셨을 텐데 보지 못하고 병원에만 계신 아빠 마음이 많이 아팠을 거예요. 결혼식 올리고 남편은 먼저 한국 들어가고 난 결혼 수속 끝내고 한국 들어왔는데, 처음 한국 왔던 6년 만에 다시 온 거예요.

## ② 행복한 신혼생활

연구참여자의 신혼은 행복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배운 요리로 남편의 밥상을 차려주는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느꼈다. 남편을 위하고, 남편에게 해주는 일들이 기쁘고 행복하게만 느껴졌다고 했다.

우리는 작은 월세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돈은 없었지만 남편이 사랑해주고 이해해줘서 나는 정말 행복했어요. 나는 행복이 큰 사치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가족끼리 함께 앉아서 밥 먹고, 손잡고 걷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 음식 잘 못 해서 센터 다니면서 3개월 요리 배웠어요. 남편이 맛있게 먹는 모습 보면 진짜 좋았어요. 남편이 돈 버니까 좋은 옷 입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비싸도 남편한테는 좋은 옷 사입혔어요. 나는 베트남에서 입었던 거 입고. 집에 있으니까... 진짜 기억에 남는 일 있어요. 남편 생일 때 케이크 꼭 사고 싶었는데, 지갑에 14,900밖에 없었어요. 근데 케이크가 다 비쌌어요. 제일 싼 게 15,000원... 엄청 좁고 길도 미끄러운 겨울이었는데 여러 군데 다녔어요. 세 번째 간 베이커리에서 14,000원짜리 케이크 살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100 원이 다르게 보였어요.

## ③ 시할머니 댁으로 들어가다

임신 7개월 무렵 시할머니께서 이사를 오라고 하셨다. 경제적 형편과 태어날 아이를 위해 들어가게 되었다. 할머니와 함께 살며 다양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연구참여자는 잘 극복해야겠다며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시할머니께서 할머니네 집으로 이사 오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같이 사는 거 불편해서 가기 싫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무엇보다 월세가 아까웠어요. 그래서 할머니 집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특하면 할머니가 고물을 주워와서 깨끗이 빨아서 쓰라고 하고 새 물건 사지 말라고 했어요. 나는 할머니 말씀 잘 듣는 착한 손주며느리여서 할머니가 하라는 대로 했어요. 할머니가 약간 치매가 있었는데 한 번은 우리한테 나가라고 막 소리쳤어요. 난 베트남에 집도 있고 가족도 있는데 왜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하나 하고 눈물이 났어요. 그때도 남편과 딸, 그리고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 꼭 참았어요.

## (2) 이혼을 하다

### ① 게임과 동영상에 빠져드는 남편

어린이 돌을 키우고 사느라 연구참여자는 점점 자신을 잃고 살 때가 많았다. 퇴근해 온 남편이 힘들까 봐 가을 씨는 혼자 오롯이 두 아이를 양육했다. 온라인 상거래 통해 번 돈으로 아이들 어린이집 교육비며 옷, 장난감 등 모두 연구참여자가 부담했다. 남편은 신용카드 한 장 주면서 가족들 식비로만 쓰라고 했다. 연구참여자가 가정과 자녀에게 헌신하고 있을 때, 남편은 조금씩 변해갔다.

점점 내 시간이 없어졌어요. 잠은 부족하지, 잠에서 깨면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지, 남편은 퇴근하면 밥 먹고 혼자 컴퓨터 게임만 했어요. 남편 힘들까 봐 집안일은 아무것도 부탁 안 했어요. 게임에만 열중하니까 자기가 아 빠라는 사실도 잊은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남편이 게임뿐만 아니라 새벽까지 야동을 본다던 것을 알게 됐어요. 솔직히 나는..음.. 놀라웠고 좀 더럽다고 생각했어요. 늦게 자니까 지각도 하고 회사까지 그만 둔 적도 있었어요. 힘들어도 아이들 웃음소리 듣고 노는 모습 보면서 많이 달랬어요. 결혼 5년 때까지는 참 행복했는데 남편이 점점 변해졌어요.

## ② 외도하는 남편

연구참여자의 남편은 회사 동료인 필리핀 결혼이주여성과 외도를 했다. 외도녀와는 같은 동네에 살면서 남편 차로 출퇴근도 같이 했다. 반복되는 거짓말과 멈추지 않는 외도에 연구참여자는 결국 남편과의 이혼을 결정했다.

어느 토요일에 내가 베란다에 빨래 널러 가다가 남편이 어떤 여자랑 문자 하는 것을 봤어요. 누구냐고 물으니 까 회사 동료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달 후에 그 여자랑 모텔에 같이 있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했는데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총 맞은 것처럼 심장이 너무 아팠어요. 그 여자는 나보다 세 살 어린 필리핀 여자였어요. 남편도 있고 초등학생 아들도 있었어요. 남편은 다시는 안 만나겠다고 각서도 썼어요.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시댁에 말했는데, 남자들 살면서 그런 실수 한 번씩 할 수 있으니까 용서해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도 이혼이 두려워서 못 이기는 척 남편을 용서해줬어요. 근데 남편과 그 여자는 계속 만났어요. 회사가 좀 멀다고 기숙사에서 산다고 했는데, 그 여자랑 월세 내서 같이 살고 있었어요. 내가 회사에 찾아갔는데 둘이 딱 걸어 나오는 거예요. 난 그 여자한테 전에 그랬어요. 서로 아이 키우는 엄마이고, 남편 있는 아내들이니까 가정에 충실하자고. 그 여자한테 약속 받았는데 둘은 여전히 만나고 있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둘이 못 헤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좋아하는 여자한테 가서 살라고 했더니 짐 싸서 나갔어요. 5주쯤 후에 다시 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빌었어요. 잠깐의 실수였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나만 보고 살겠다면서. 나는 남편 미련 없어요. 근데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받아줬어요. 그런데 5일 만에 다시 그 여자한테 연락한 거 보고 이혼 결정했어요.

## ③ 한부모 이주여성이 되다

연구참여자는 올 8월에 이혼했다. 아이들 양육을 위해 연구참여자는 식당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한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아프고 힘들게 한 사람은 남편이라고 한다. 자신이 이렇게 아픈데 베트남 부모님이 아시면 얼마나 슬퍼하실까 하여 아직까지 이혼 소식을 못 전했다고 했다.

판사가 저한테 양육권 줬어요. 남편이랑 그여자가 저한테 위자료 주는 것과 남편이 양육비 줘야 하는 것도. 근데 남편은 돈이 없다고 위자료 안 줬어요. 양육비도 안 줘요. 남편은 직장에 오래 못 있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돈이 없나 봐요. 양육비 주면 내가 덜 힘든데. 엄마한테는 이혼했다고 아직 말 못 했어요. 내가 힘들게 사는 거 알리고 싶지 않아요.

## ④ 국적취득을 하고 싶다

연구자가 식당에서 처음 연구참여자를 만나던 날, 짧은 인터뷰 끝에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나 물었을 때, '국적취득'이라고 답했다. 연구참여자는 아직 국적취득을 하지 못한 상태다. 생계 때문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할 시간도 없다고 하였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국적취득하는 거 남편이 안 도와줬어요. 그래서 몇 년마다 한 번씩 비자갱신 해야 해요. 돈도 아까워요. 아르바이트라 하루만 빠져도 월급이 깎여요. 이번 달도 애가 열나서 빠지고, 서울 가서 또 빠지고... 월급 많이 줄어요. 그래서 다른 거 못 해요....

### 3) 적응에 대한 분석

본 절에서는 연구참여자의 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제를 발견하여 범주화하여 일반적인 적응 양상을 살펴보았는데, '자립을 위한 노력, 성장하는 체험'으로 분석되었다.

#### (1) 자립을 위한 노력

##### ① 위로와 응원으로 다시 일어서다

연구참여자는 성실하고 친절하다. 식당 동료와 손님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연구참여자에게 힘내라고 응원해준다. 또한 건강하게 자라가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더욱 힘을 얻는다고 했다.

나는 일할 때 열심히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식당 사장님이랑 아주머니들이 좋아해 주는 것 같아요. 저 여기서 벌써 2년째 일하고 있어요. 비 와도 눈 와도 버스에서 내려 20분씩 걸어와요. 퇴근할 때도 20분 걸어서 버스 타요. 손님들이 가끔 용돈도 줘요. 열심히 살라고 하면서. 저 그때마다 너무 감동해요. 한국 사람들 정 많고 따뜻한 사람들 같아요. 우리 애들 보면서 힘내요. 남편한테 받은 상처 잊고 싶어서 열심히 일해요. 언젠가 남편 생각도 하지 않고 나한테만 집중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 ② 나를 찾고 나를 만나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안 순간부터 연구참여자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항상 불안의 연속이었고 사람에게 대한 믿음이 사라졌다고 했다. 그러나 안정기가 찾아온 지금, 여전히 경제적으로는 궁핍하지만 자신에게 집중하며 살려고 노력한다고 했다.

나를 도와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경찰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선생님들... 매일같이 전화해서 나 괜찮냐 묻고, 남편이 또 때리면 바로 신고하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 참 고마워요.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말을 나는 믿어요. 그래서 착하게 살려고 해요. 시간 지나면 아프고 힘든 기억들이 다 잊혀지면 좋겠어요. 돈 많이 없어도 우리 아이들이랑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요.

#### (2) 성장하는 체험

##### ① 수기 공모를 통해 마음을 풀어내다

연구참여자는 혼자 있을 때 책보고 글쓰기를 좋아한다. 결혼 전 산업연수생으로 한국 왔을 때도 휴일에는 책보고 글을 쓰며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결혼이주여성으로 한국 온 지 2년 만에 짧은 수기를 써서 공모했다.

나는 공부를 많이 못해서 그런지 책 보는 것이 좋아요. 책보면 글도 쓰고 싶어요. 특히 마음이 힘들 때 글을 쓰면 마음이 편해져요. 전에 \*\*(첫째 아이) 임신했을 때 글 써서 응모했는데 책으로 나왔어요. 다음에 보여줄게요. 이혼하고 힘들었던 일도 글로 다 쓸 거예요.

##### ② 강함 엄마 되기

연구참여자의 딸은 현재 7세로,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할 한다. 입학에 앞서 여러 걱정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는 연구참여자를 더욱 강한 엄마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가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많이 걱정돼요. 내가 모르니까 너무. 지금은 어린이집에서 내가 퇴근할 때 까지 \*\*(둘째 아이)랑 같이 있는데, 학교 가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베트남 엄마여서 놀림당할까도 걱정되고, 아빠랑 같이 안 산다고 소문날까 봐 그것도 걱정돼요. (예비소집일 통지서를 보여주며) 이때 학교 가는데 선생님한테 궁금한 거 물어봐도 되겠죠?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이혼을 경험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생애사연구이다. 이혼을 경험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연구참여자의 사회적 맥락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심층적인 내면 세계의 탐색을 통해 변화와 성장 의미를 알아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연구참여자의 인터뷰자료와 에세이를 통해 결혼 전부터 이혼의 경험 그리고 그 이후까지 총체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Mandelbaum(1973)이 제시한 “삶의 영역”, “전환점”, “적응”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삶의 영역은 “가족을 위해 헌신하다(오빠를 공부시키다, 가정경제를 책임지다, 엄마의 병간호를 하다)”, “산업연수생이 되다(한국어 3개월 과정에 등록하다,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오다)”, “긍정의 힘으로 견어내다(한국의 낯선 생활에 적응해 나가다, 회사에서 인정받다, 또다른 이주민에게 선을 베풀다)”, “산업연수가 끝나다(한국 식당에서 일을 하다, 사랑을 키우다)”였으며, 삶의 전환점은 “이민자로 결혼하다(결혼 이주여성이 되다, 행복한 신혼생활, 시할머니댁으로 들어가다)”, “이혼을 하다(게임과 동영상에 빠져드는 남편, 외도하는 남편, 한부모이주여성이 되다, 국적취득을 하고 싶다)”, 적응은 “자립을 위한 노력(위로와 응원으로 다시 일어나다, 나를 찾고 나를 만나다)”, “성장하는 체험(수기 공모를 통해 마음을 풀어내다, 강한 엄마 되기)”로 나타났다.

가족부양을 위해 한 공장일과 한국에서의 산업연수 경험은 연구참여자를 더욱 단단하게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었다. 절약하는 정신과 무엇이든 배우려는 자세 등은 삶의 힘든 변화가 찾아와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즉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얻은 경험을 기반으로 연구참여자는 이주여성이 되는 결심을 했다. 이후 여의치 않게 이혼을 하는 인생의 큰 변화를 겪지만, 주변의 도움과 자녀를 위해 극복하고자 하는 성장의 모습을 보였다. 이는 삶의 세계를 새롭게 만나고 질적으로 층위가 달라지는 성숙한 활동이다. 연구참여자는 경험의 공유 등을 통해 자기 가치를 드러내며, 환경에 적응하면서 다양한 상호작용 과정에서 행함을 통해 배우게 되고, 변화하게 되어, 성장하게 됨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이혼 예방과 이혼 시 법적 지원이다. ‘2018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혼·별거 사유가 배우자의 학대·폭력 때문이라는 응답이 태국(26.8%), 베트남(19.5%), 필리핀(17.4%), 일본(16.0%) 출신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한국 생활 초기에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학대와 폭력 때문에 이혼·별거

에 이르는 결혼이민자·귀화자의 비율이 높다는 조사 결과는 이 시기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배우자 및 가족의 교육은 주기적이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배우자의 위자료와 양육비 미지급으로 홀로 경제와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이주여성을 위한 법적 지원이 시급하다.

둘째 한부모이주여성에 대한 아동 돌봄이다.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 의미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로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른 추진 목적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아이돌봄 지원법 제1조), 부모의 출장,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양육공백에 따른 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 자녀의 안전과 건강한 양육을 위해 1:1 개별보육을 선호하는 취업부모에게 가정 내 2세 이하 돌봄 서비스를 제공”다고 밝히고 있다(여성가족부, 2020). 읍·면·동 담당자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희망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접수함으로써 업무처리가 발생된다. 한부모이주여성이며 직장을 다니고 있는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에게는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정책이다. 올 2월에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취학하기 전까지 돌봄 공백이 생기는 첫아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이주여성이 이러한 정책을 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정보 부족이다. 지자체에서는 정책 홍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취업교육이다. 김정옥·구자경(2020)은 결혼이주여성의 취업 및 진로 동기에 대한 학문적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의 전인적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진로활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1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에 따르면 집단상담(새일센터 20개소, 600명 목표), 내일배움카드제, 국민취업지원제도<sup>10)</sup>(결혼이민자 소득수준 무관 지원)를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치럼 이혼 시 위자료와 현재까지 양육비를 받지 못하여 가정경제를 꾸려나가는 상황에서는 위의 취업지원서비스 정책이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 더욱 세심하고 탄력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정책 수립으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자들에게까지 형평성 있는 혜택이 지급되기를 제언한다.

10)취업성공패키지는 '21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Ⅱ유형(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 지급)으로 통폐합(여성가족부, 2019).

## ■ 참고문헌

- 곽성희·진명일·우석봉(2018). 중년여성의 불면증 경험에 대한 생애사연구. 질적탐구, 4(3): 123-163.
- 권윤경·이찬(2015). 어린이 놀이 공간에 대한 듀이의 경험론적 특성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제10권 5호 151-163.
- 구상미·김태임(2012).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완전모유수유 실천기간 및 관련요인.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3(4), 1672-1683.
- 김선희(2015).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임신, 분만, 산욕기 건강관리 경험.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9(2), 325-343.
- 김영옥·김현미(2013). ‘글로벌 가구(Global Household)’ 구성의 관점으로 본 한국-베트남 국제결혼 가족. 젠더와 문화, 6(2), 177-213.
- 김유정(2021). 결혼이주여성 체류안정을 위한 법제개선 방안, 강원법학, 63(3), 35-85.
- 김정옥·구자경 (2020). 결혼이주여성의 진로관련 연구동향 분석. 현대사회와 다문화, 10(2), 79-106.
- 김태량(2019). 결혼이주여성의 이혼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케어매니지먼트 연구, 30(1): 5-38.
- 김현미(2006). 국제결혼의 전 지구적 젠더 정치학.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70): 10-37.
- 김현재(2007). 베트남여성의 한국으로의 결혼이민: 그 배경과 원인에 대한 고찰. 동아연구, 52, 219-254.
- 박송이·강혜린·문영민(2020). 베트남 한부모 이주여성에 대한 사회복지 제도 및 서비스에 대한 탐색적 연구. 복지과 문화다양성연구, 2(1): 59-8.
- 변미희·강기정(2009). “다문화가족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 관련 요인”. 한국가족복지학, 15(2), 127-142.
- 서흥란·김기연·김양호(2008).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3), 121-143.
- 서흥란·배영미·유영림(2016).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검정고시 학습경험에 관한 생애사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0(3): 33-63.
-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2015). 모국어로 쓰는 각양각색 한국살이.
- 여성가족부(2019). 2018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 여성가족부(2020). 2020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 오은정·오미정(2018).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양육스트레스와 문화변용스트레스가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모자보건학회지, 22(2), 96-105.
- 이선희·이승연(2015).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어머니하기. 한국육아지원학회 학술대회지, 0, 159-162.
- 이선희(2017).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적응과정에서의 임신과 출산 경험 분석: 포커스 그룹 인터뷰. 부모자녀 건강학회지, 20(1), 28-38.
- 이지연·Grace Chung(2019).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 경험: 위계의 교차 위에 놓여있는 이중민족사회화. 가족과 문화, 31(2), 182-227.
- 이춘양(2021). 한부모이주여성 삶의 성장 경험에 관한 생애사적 내러티브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재환·공기인(2020). 러시아 탈북민의 복음수용에 관한 생애사 연구. 복음과 선교, 52(4), 115-170.
- 정금희·김경원·백성희(2019). 중국과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임신과 산후적응 요구 비교. 여성건강간호학회지, 25(1), 19-30.
- 정예리(2011). “해체가족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삶: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현하·박은숙·오은옥(2014). 국내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모성갈등. 대한간호학회지, 44(6), 617-629.
- 최호림(2015). 국제결혼에서 귀환까지: 베트남 여성의 한국행 결혼이주 경험에 관한 연구. 동아연구, 68: 143-182.

- 탄티튀히엔(2006). “국제결혼 베트남 이주여성의 현실과 적응” .韓國學中央研究院 韓國學大學院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2021). 2020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 팜티훤짱 · 김영순 · 박봉수(2014).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유형에 따른 영유아기 자녀양육 경험. 교육문화연구, 20(4), 137-164
- 황건화 · 임선희 · 김주연(2019). 어린이 뮤지엄의 경험론적 공간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14(7), 99-11.
- 황달기(1993). 일본 농가후계자의 ‘국제결혼’ - 그 실상과 문제점 -. 일본학보, 30, 467-491.
- Booth, A., & White, L.(1980). Thinking about divor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3), 605-616.
- Dewey, John. (1983). 아동과 교육 과정 경험과 교육. 경기: 문음사.
- Glick, I. D., Berman, E. M., & Clarkin, J. F.(1999). Marital and Family Therapy, 4thEds.
- Kitson, G. C., & Morgan, L. A.(1990). The multiple consequences of divorce: A decade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913-924.
- Spanier, G. B., & Casto, R. F.(1979). Adjustment to Separation and Divorce: An Analysis of 50 Case Studies. Journal of Divorce, 7, 32-49.

## ■ Abstract

### A study on the life story of Vietnamese immigrant women who experienced divorce

Based on Dewey's theory of experience, this study presents how single-parent migrant women can successfully achieve self-reliance and maturity by reflecting the maturity gained through life experiences of single-parent Vietnamese immigrant women. The in-depth interviews and essays from research participants were analyzed based on the 3D analysis framework of Mandelbaum (1973): "Areas of Life," "Turning Points," and "Adapta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reas of Life" were found to be reflected as "sacrificing for the family", "becoming an industry trainee", "experiencing with the power of affirmation", "ending the industry training", while "Turning Points" were "getting married", "getting divorced", Finally, "Adaptation" was shown as "striving for self-reliance" and "growing experience".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flexible policy on prevention of divorce for married and immigrant women, legal support in case of divorce, care services for children, and employment education for single-parent migrant women.

Keywords: migrant women, divorce, life story, Dewey's theory of experience, Mandelbaum

## 발표 4. 결혼이주여성들의 자조모임 참여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sup>11)</sup>

김 은 희 인하대학교 대학원 다문화교육학과 박사 3차

### 1. 서론

학습은 인간의 생명이 유지되는 한 지속되어야 하는 삶의 과업이라는 점에서 인간의 호흡에 비유된다(이현청, 2012). 학습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남성과 여성, 문화적 배경이 어떠한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또한 배움의 장소는 학교에서부터 취미활동을 하는 모임에 이르기까지 시간과 장소의 한계를 넘어 평생 전반에 걸쳐 진행되기에 배움은 인간 삶의 한 단면을 살펴볼 수 있는 역동적인 과정이 된다. 이와 같이 교육과 학습에 대한 관점이 특정 시기와 장소를 넘어 전 생애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형식적·비형식적 교육을 모두 포괄한다는 점에서(Dave, 1976) 교육에 대한 시각을 더욱 확장시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성인 시기에 일어나는 학습은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자신이 가진 다양한 소질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의 발전에 참여할 수 있게 함을 의미한다(Lengrand, 1970). 학교교육 이후에 또 다른 형태의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성인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교육제도와 정책이 마련되고 있다. 성인교육은 공식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학습과 달리 지역사회, 공공기관, 특정 기관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비공식적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이현청, 2012: 32-33). 이러한 관점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자조모임은 특정 공간과 장소의 한계를 넘고, 형식과 비형식의 구조적 틀을 넘는 배움의 현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다문화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어왔고, 현재의 다문화정책과 교육이 그들과 그들의 자녀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설진배·김소희·송은희, 2013). 결혼이주여성들은 다문화정책의 주요 제공처가 되는 각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사회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고, 공동체 활동을 하며 자신들의 필요를 능동적으로 채워가고 있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들이 지식을 쌓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사회에 대한 의미를 재구성해 나가는 주도성을 발현하는 배움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원종숙, 김성길, 2001) 여전히 이들을 '사회통합'과 '복지수혜자'인 수동적 존재자로 이해하는 인식이 여전히 팽배하다(강순원, 2010; 임선우·윤황, 2017). 결혼이주여성들이 우리 사회의 소수자로, 사회적 약자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자조모임에 참여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학습 경험을 이해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관점과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작

11)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 7명을 대상으로 총 2차 면담까지 계획하여 이루어진 연구입니다. 현재 7명의 연구참여자 중 4명의 2차 면담을 완료하였고 3명은 2차 면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원고는 연구참여자 4명의 면담 자료를 바탕으로 4장 연구결과를 개괄적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학술대회 일정에 맞추어 발표문을 작성하게 되어 완성된 자료를 실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업이 된다. 이에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자조모임 참여 경험을 성인학습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 사회에서 맞닥뜨린 개인적·사회적 장벽 앞에서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식과 태도에 변화를 시도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자 한다(김한별·허효인, 2014). 또한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소외, 차별과 무시 등의 이중 구속으로 인해 제한적 생활 세계를 가지지만 주체적 행위자로서 이주를 결심하고 새로운 터를 잡은 한국 사회에서 지속적인 자기개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나아가고 있다(김진희, 2011). 결혼이주여성들은 이러한 학습의 욕구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나 평생교육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차원에서 해결하고 있는데 자조모임도 교육 프로그램 차원에서 활용되고 있다(임선우·윤황, 2017). 성인교육이 비형식적 교육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이현청, 2012) 결혼이주여성들의 자조모임은 성인학습 차원에서 중요한 교육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의 교육 참여 경험을 분석한 김진희(2011)는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교육이 역량 개발, 비판적 자아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 변화와 성장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이중언어강사와 다문화교육 양성과정의 학습 경험을 다룬 선행연구에서도 결혼이주여성들의 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성인학습의 관점에서 이해하여 학습 경험이 그들의 삶과 가치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손민호·조현영; 2013; 김도현, 2016; 김미자·전주성, 2015).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다룬 교육프로그램은 취업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기관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비형식적 모임을 통한 배움이 이루어지는 자조모임과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경험에 대한 논의가 성인학습의 관점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자조모임을 성인교육의 일환으로 접근하여 자조모임 참여 경험이 삶의 관점에 대해 어떠한 전환을 가져왔으며, 관점의 전환이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그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성인발달의 핵심적 과정(김한별·허효인, 2017)으로 관점의 전환을 제시한 전환학습이론을 해석의 틀로 활용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의 자조모임 참여 경험의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자조모임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들의 전환학습 경험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가?' 이상의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의 자조모임 참여 경험의 의미 해석을 통해 자조모임에 담긴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자조모임

자조모임(self-help group)은 공통적인 문제나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단체를 형성하여 일정 기간 상호부조의 목적을 가지고 공동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와 자원을 교환하기 위해 모인 자발적 연합체를 의미한다(Birchall, 2007). 자조모임을 사회학적 측면에서 이해할 때 자조모임의 기능은 '사회(community)'의 경제와 안전, 심리적 지지 기능을 강조한 사회학적 관점은 개인이 처한 위기적 상황에 사회적 지지 체계를 통해 개인과 사회에 동기와 힘을 불어 넣어 개인과 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최민식, 2019). 반면 심리학적 접근에서는 개인을 고립에서 벗어나게 하고 구체적 정보를 서로 제공하며 변화의 가능성과 긍정적 생각을 갖게 함으로써 임파워먼트를 경험하게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Solomon & Pistrang, 2001). 즉, 자조모임은 집단 구성원들이 관련된 문제와 상황에 대해 회원들로부터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얻음으로써 집단과 집단 구성원들의 권익옹호에 이바지하는 상호부조 활동을 통해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조모임의 목적은 개인의 일상에 찾아오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공통의 문제를 겪고 있는 구성원들과 함께 논의하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Katz & Bender, 1976). 그리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집단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은 개인적 차원의 성장과 변화를 넘어 사회적 차원에서도 긍정적 변화로 이어지게 된다(Smith & Pillemer, 1983). 자조모임의 구성원들은 유사한 상황에 있는 구성원들에게서 느끼는 동질감을 통해 안정감과 신뢰감을 느끼고 이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 받는다(Miller & Katz, 1992). 따라서 자조모임은 일방적인 교육의 형태로 제공되는 형식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며 각자의 고유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비형식적인 지원-동료집단, 개인의 경험에 근거한 기술-으로부터 큰 지지를 받게 된다(김선미·이승미·구혜령, 2017). 또한 자조모임에서는 대면적 상호작용과 자발적 참여, 그리고 개인적 참여를 중요한 구성요소로 가지며 구성원은 모임 활동에 동의하는 과정을 거쳐 참여하게 된다(Katz & Bender, 1976).

자조모임은 결혼이주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일부로 운영되고 있다(정성미, 2010; 손민호·조현영, 2013). 각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조모임은 결혼이주여성들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여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문화 및 학습 활동은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교육이 아니라 결혼이주여성들의 다양한 경험이 그들의 삶에서 의미있는 경험으로 이끌 수 있어야 한다. 자조모임이 결혼이주여성들이 삶과 경험을 문제해결의 동력으로 인식하며, 구성원들의 결속력과 상호부조를 바탕으로 건강한 발전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학습으로서의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 2. 전환학습

전환학습이론은 성인들의 학습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이론으로서(Cranton & Taylor, 2012) 전환학습을 통해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일상에 대한 인식과 의미의 체계가 변화되는 것으로 본다(Mezirow, 2000). 전환학습을 본격적으로 소개한 Mezirow는 성인기 학습자와 아동·청소년기 학습자의 가장 큰 차이점을 전환적 기능(transformative function)에 있다고 보고 성인학습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의미구조의 전환'으로 설명하였다(Mezirow, 1995: 51). 전환학습에서 강조하는 관점의 전환(perspective transformation)은 성인 교육 참여를 통해 추구해야 할 중요한 목표로 강조되고 있으며 결혼이주여성과 같이 사회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계층의 성인교육의 경험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시각을 제공하여 왔다(Charaniya, 2012; 김도현, 2016 재인용). 이에 주로 생애사적 경험이 단절된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성인 학습자들의 학습 경험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전환학습이 활용되고 있다(강경리, 2017; 강미정, 2016; 박경호, 2009).

Mezirow(2000)는 심리-비평적 관점에서 성인들의 학습 경험을 해석하였다<sup>12)</sup>. 그는 성인 학습자들이 자신의 삶의 경험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미래의 행동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과거의 해석을 사용하여 자신의 경험의 의미를 수정하거나 새롭게 구성해 가는 과정으로 전환학습을 설명하였다. Mezirow(2000)에 따르면 전환학습은 단순한 지식의 습득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을 둘러싼 상황을 지배하는 조건들을 변화시키며, 교육을 통해 자신의 경험에 대한 비판적 반성을 함으로써 개인적, 사회적, 정치적, 책임감을 획득할 수 있다고 보았다(이은숙, 2013).

전환학습은 학습자의 기존의 의미구조를 점검하고 이에 도전하여 수정하고 전환시킴으로써 학습자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해 준다. 관점에 대한 전환은 사고와 감정, 행위의 기본 전제들에 대해 구조적 변화를 경험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으며 자신의 삶과 존재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의식의 전환을 의미한다(Transformative Learning Center, 2004). 이때의 의식의 전환은 자신이 설정하고 경험하였던 기존 가정들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이성적 담론을 통해 이루어진다(박경호, 2009). 의미구조의 전환은 기존에 갖추지 못한 능력과 기술을 계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미 갖추고 있는 지식, 기술, 태도 등에 조절과 변화를 시도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동원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는 것을 뜻한다(김한별·허효인, 2017: 112). 그리고 의미구조의 궁극적 전환은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는 행위인 성찰을 통해 최종적으로 완성된다(Mezirow, 1990).

성찰은 개인이 경험하는 외부의 대상이나 사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과 함께 그러

12) Boyd(1991)는 전환학습을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이해하였다. 그는 개인 자체로서 내적 자아에 대한 감수성과 책임감을 유지하는 것을 성인기의 중요한 과업으로 보고 자아의 내적 탐색과 인감다움에 수반되는 책임감을 가지게 되는 과정을 전환학습으로 이해하였다. 정신-발달적 관점에서 전환학습을 이해한 Daloz(1999)는 개인이 평생에 걸쳐 발달하는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인들이 고등교육에 복귀하여 학습에 참여한 경험을 통해 전환된 세계관을 탐색하는 것을 전환학습의 주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한 경험을 인식하는 자신의 가치와 신념 등을 인식하는 의식적인 행위이다. Mezirow는 전환학습이 혼란스러운 딜레마 상황으로부터 시작하여 자기 삶에 대한 비판적 반성과 이성적 담화를 통하여 일어난다고 보고 이를 10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성인들은 살아가면서 결혼, 이혼, 가족 및 친구의 사망, 질병, 국제이주 등 기존의 의미 체계 안에 있던 경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건들을 직면하며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기존의 사고, 가정, 인식 등의 변화를 통해 의미구조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딜레마가 전환학습의 시작이 된다(이은숙, 2013: 27). 2단계와 3단계는 비판적 성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신의 기본가정과 신념 체계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경험을 재해석하는 과정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후의 단계들은 이성적 담화와 관련된 것으로 자신의 불만족과 변화의 문제를 타인과 공유하고 의견을 구하는 공통의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대화가 이에 해당한다(Mezirow, 2003).

Taylor(2007)는 전환학습이 실천되는 주요한 요인으로서 주인의식, 공유된 체험활동, 비판적 성찰과 정의적 학습간의 상호관계, 맥락적 영향, 차이의 역할, 관계성 등을 강조하였다. 특히 정보의 개방적 공유와 상호적 이해가 가능한 개인의 간의 신뢰적 관계성이 기반이 될 때 전환학습이 촉진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성은 여성의 전환학습에 있어 핵심이 되는데(English & Irving, 2012; 김도현, 2016 재인용) 자신의 이야기를 타인과 공유하고, 우정과 신뢰를 쌓는 모임이 전환학습을 촉진하는 중요한 조건임을 밝히고 있다(Brooks, 2000; Cooley, 2007). 전환학습에 대한 이상의 논의는 자조모임 공동체 활동을 통해 개인의 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상호발전을 위해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며 성장을 촉진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교육 경험을 이해하는데 있어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준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자조모임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자신의 경험과 경험에 대한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한국어로 설명할 수 있는 연구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해 1개 이상의 자조모임에 1년 이상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자,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로 기준을 설정하였다. 연구참여자 섭외를 위하여 I시 A구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자조모임 담당자를 만나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인터뷰에 적합한 결혼이주여성들을 소개받았다. 기관 담당자를 통해 10명의 결혼이주여성을 소개받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서면으로 예비 면담을 진행한 후 본 연구의 주제와 적합한 경험을 풍부하게 기술한 7명을 최종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출신국은 베트남 3명과 중국 4명이며 한국 거주 기간은 7~17년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현재 연구참여자들 중 일부는 다문화이해강사, 중국어 강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번역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4명은 전업주부이다. 연구참여자에 대한 기본정보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 기본 정보

연구참여자	국적 (본/현재)	나이	이주연도	학력	참여 자조모임의 성격	자조모임 참여 기간
연구참여자 1	베트남/한국	29	2015	대학자퇴	통번역, 검정고시준비, 공동육아	5년
연구참여자 2	베트남/한국	31	2016	전문대졸	통번역, 가족단위 캠페인 참여	2년
연구참여자 3	베트남/한국	28	2013	고졸	통번역, 뮤지컬, 검정고시준비	2년
연구참여자 4	중국	40	2009	대졸	통번역, 공예활동	5년
연구참여자 5	중국	44	2006	고졸	전통춤	7년
연구참여자 6	중국	45	2005	대졸	통번역, 뮤지컬	5년
연구참여자 7	중국	43	2005	고졸	전통춤	7년

## 2.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자조모임에 참여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전환학습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질적 사례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사례연구는 단일한 사례와 현상, 사회적 단위에 대한 집약적이고 총체적인 서술과 분석을 하는 연구방법으로 실세계 맥락에서 특정 현상을 조사하는 데 적합하다(Merriam, 1998). 본 연구는 I시 A구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조모임에 참여하는 결혼이주여성의 경험을 하나의 분석 단위로 삼아 이를 기술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서면 질문지와 심층 면담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심층면담 실시 전에 서면 질문지를 통해 이주의 동기, 자조모임 소개, 자조모임 참여 동기와 목적, 자조모임 참여 후의 변화, 자조모임에 대한 기대 등 포괄적인 내용을 묻고 이를 중심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심층 면담은 2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1차는 대면으로, 2차는 대면과 비대면 화상회의(zoom)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심층 면담은 2021년 12월 29일부터 2022년 2월 8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참여자별로 2시간씩 각 2회 이상 진행하였다<sup>13)</sup>. 1차 면담은 라포를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이주와 결혼생활, 자조모임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으며 2차 면담은 1차 면담 자료를 토대로 개인적인 경험과 경험에 대한 인식과 변화에 집중하여 심층적인 질문을 이어갔다. 이후 면담 내용을 전사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모호하거나 의미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화와 비대면 화상회의(zoom)를 통해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자료를 보완하였다. 자료수집과 분석을 순환적으로 진행하여 자료의 포화상태에 도달하였을 때 자료수집을 종료하였다.

자료 분석은 질적연구분석 프로그램(Taguette)과 메모달기 기능을 동시에 활용하여 자료를 범주화하였다. 전사된 원자료를 중심으로 참여자별로 의미 있는 진술을 모아 초기 개방 코딩을 실시하여 반복되는 내용과 의미에 코드를 부여하였다. 연구참여자별 개방 코딩 작업을 마친 후 개별 자료의 비교 분석을 통해 개방 코딩된 자료들 중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는 코드를 모아 세부 의미별로 묶은 후 연구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자조모임 참여 전, 중, 후에 일어났던 변화과정과 관련한 의미들을 모아 중심주

13) 연구참여자 4인에 대한 2차 면담까지 완료된 일자이다. 연구참여자 3명에 대한 2차 면담은 이후에 진행되었다.

제로 도출하였다. 연구의 타당성을 위해 분석된 결과들에 대해 결혼이주여성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박사과정생 3인과 2인의 교수들에게 교차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적 소수자이며 취약계층인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라는 점에서 연구윤리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연구참여자들에게 자발적 참여와 연구참여 중지에 대한 결정권이 있음을 매회 면담 전에 고지하고, 면담 내용 녹취에 대해 동의를 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연구참여자 개인정보와 자료 보안을 철저히 할 것을 서면 동의서로 작성하여 한 부씩 보관하였다.

#### IV. 연구결과

연구참여자와의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조모임 참여의 전환학습 경험의 중심 의미는 '새로운 시작에서 마주한 혼란', '자조모임 참여를 통한 나의 삶 품기', '성장과 변화에 대한 기대' 3가지로 도출되었다. 중심 의미는 자조모임에 참여한 시간적 흐름에 따라 변하고 있으나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에서 순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진행형임을 알 수 있었다.

##### 새로운 시작에서 마주한 혼란

연구참여자들은 이주로 시작된 낯선 한국살이에서 문화 차이, 편견에 직면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다. 이는 전환학습의 1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구참여자들은 이주라는 거시적 맥락 그 자체보다 가정과 사회에서 겪는 고립과 단절, 편견과 무시 등 가족과 사회적 관계에서 시작된 문제가 딜레마 상황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딜레마적 상황은 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의미체계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 되었으며 연구참여자들은 이 장벽 앞에서 자신이 무능한 존재라는 회의감에 빠지게 하였다. 모국에서의 삶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한국에 왔지만 그들이 한국에서 마주하게 된 현실은 시댁 가족들의 차별과 무시, 남편과의 세대 및 문화 차이에서 발생하는 갈등, 가난한 나라에서 온 여자들로 여기는 한국인들의 차가운 시선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기대하던 한국 생활이 실현되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보다 자신의 나라와 문화를 열등하게 여기며 무시하는 한국인들의 태도에 수치심과 혼란을 느끼며 힘들어하였다.

그때는 19살이니까 그 임신하면 20살이잖아요. 그래서 막 눈치 보는 거예요. 나이도 어리고 한국은 일찍 결혼하지 않잖아요. 눈치. 그 일찍 결혼하냐 어디 가서 아기가 아기 낳네.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많이... 많이 외롭고...(연구참여자 3, 1차 면담)

결혼이주여성들은 이주를 통해 생애사적 단절을 경험한다. 한국에 온 순간 그동안 자신이 배우고 익혔던 학습의 경험들이 무용지물로 여겨지는 상황에 놓이면서 자신감과 자아존중감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들은 한국에 온 순간 자신이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난 아기"와 같이 느껴졌다고 한다. 대학 공부를 마치고 직장생활도 하면서 성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살아왔지만 한국에서는 남편 없이 독립적으로 할 수 있

는 일이 없다는 현실을 지각할 때 좌절을 경험하였다.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언어의 장벽은 물리적 고립에 그치지 않고 그들을 심리적 고립과 상실로 내몰고 있다. 일상적인 생활조차 남편을 의지해야만 하는 자신의 모습은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끼게 하였으며 이는 우울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있어 연구참여자들의 심리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외국인이라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에서 존재의 위기감을 느꼈다. “사람을 만나는 일 자체가 두려운 일”로 느껴졌으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중에 불안과 위축을 경험하였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인과의 만남은 비웃음거리가 되는 일”로 여겨져 두려움에 위축되어 점점 소극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야 했다.

사실 완전히 아이 처음에 태어난 것 같아요. 아이가 처음에 태어날 때 똑같아요. 처음에 진짜 어디 가면 말 통하지 않아요. 어디 산부인과 가면 남편도 따라다녀요. 사실 이렇게 의사하는 말 저는 잘 못 알아 들어요. 아무래도 책 두 번 배우니까(배우고 오니까) 그래서 말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연구참여자 6, 1차 면담)

그래서 막 사람 만나면은 좀 겁이 나요. 이 낯설고 좀 뭐가 불안해요. 사람 안 하면 나 쳐다보고 그런 나에 대해서 생각은 그럼 막 떠오른 거예요. 혹시 나 보고 막 외국 사람이다. 그런 생각할까 봐 두려워요. 한국 처음 왔을 때도 베트남에서도 막 소극적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와서 사람 많이 만나고 막 사람이 만나는 것도 이제 무섭지 않고 또 베트남 사람도 아니고 두려워하는데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을 잘못할까 봐. 그래서 더 두렵고 또 말도 못 꺼냈어요. 선생님 제가 인사하면은 그 사람도 뭘 보라고 하면 못 알아들은 것 같아서 말 꺼내기도 힘들고....(연구참여자 3, 2차 면담)

### 자조모임 참여를 통한 ‘나의 삶’ 품기

관점의 전환은 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핵심적 경험이 된다(Mezirow, 1991). 자신을 둘러싼 상황과 경험에 대한 개인의 이해와 해석은 개인의 조건과 사회적 상황에 따라 왜곡되고 편파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김한별·허효인, 2017). 따라서 경험과 상황을 인식하는 관점의 전환은 인식의 틀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존재 자체는 변하지 않았으나 자신을 둘러싼 상황이 바뀜으로 인해 자신을 이해하는 인식의 틀이 부정적으로 왜곡되고 있었다. 그들을 지났한 삶으로부터 끌어낸 것은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반성하는 심리적 변화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자조모임에 먼저 참여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의 권유가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삶에 대한 반성은 자녀에 대한 죄책감, 남편에 대한 과도한 의지, 이전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봄 등 심리적 영역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자신의 존재와 삶에 대한 의미 탐색은 결혼이주여성들과 함께 하는 공동의 장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와야 되겠구나 집에서. 이러다 죽겠다. (중략)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미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고. 아무튼 네(아들)가 나한테 와서 팔자죠.. 그래서 친구 통해서 이 자조 모임 참여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 한국에서도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구나 친구들이랑.. 네 그렇게 소통도 잘 됐구나 그때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기쁘더라고요. 왜냐하면 맨날 집에 있어 답답하고 애들이 또 우리 큰 아들 좀 좀 이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태어날 때 맨날 병원 입고 다니고 그랬더라고요. 맨날 울고 저는 정말 우울 좀 그런 것 같아요. 그저 자조 모임 만나면 우울증도 잘 되고 그래서 친구들을 통해서 그 친구들을 통해서 너는 한국어 배워라. 그리고 센터에서 이런 이런 프로그

램 있어 해라 시간 되면. 그래서 애들 우리 애들 업고 같이 다니고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어능력 시험 또 그거 반도 들어가고 점점 이렇게 (연구참여자 5, 1차 면담)

자조모임 참여는 연구참여자들이 한국에서 처음 맺는 온전한 '관계'로 이끌었다. 이들은 한국사회에서 늘 대상화되어 타자로 불렸지만 결혼이주여성들의 모임에 참여함으로써 자신도 '우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위안을 얻었으며 함께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가족 같은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다.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있어 '나와 같음'을 느끼게 하는 동료와의 만남은 감정적 소통, 정서적 지지와 같은 관계적 측면이 자신의 삶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게 하는 기능으로 작동한다. Mezirow는 전환학습이 이성적 담화를 거쳐 발전한다고 보았으나 연구참여자들의 사례에서는 관계성에 기반한 활동들이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는 데 있어 더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이는 Taylor가 제시한 공유된 체험활동, 맥락적 영향, 관계성 등이 전환학습 실천에 있어 주요한 요인으로 작동한다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 성장과 변화에 대한 기대

연구참여자들에게 자조모임은 '본래 자기'를 되찾게 하는 통로이자 자녀와 남편, 시댁 가족들에게 자신의 가치와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뮤지컬과 전통춤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들은 공연을 통해 '외국인 엄마'로 숨어 지내왔던 모습에서 당당한 '무대의 주인공'이 되었다. 동료들과 땀흘리며 준비한 공연은 그들의 자리를 '사랑하고 싶은 우리 엄마, 우리 와이프'로 바꿔주었다. 특히 한국인 관람객들에게서 받는 박수는 이들에게 더욱 큰 의미로 가슴에 새겨졌다. 이주 초기 '외국에서 시집온 여자'로 여겨져 집안에만 숨어지내야 했던 그들은 무대에 서게 되면서 한국인들도 인정할 진정한 '주인공'이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이전에 자신에게 수치스러움을 주었던 경험을 새롭게 이해하고, 현재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학습의 기회가 되었다.

남편도 좋아해요. 뮤지컬 참여하면서 어디 가도 소개해서 공연하면 자기도 보러오고. 거의 공연은 쉬는 날에 맞춰서 공연하잖아요. 주말에 자기도 쉬니까. 그래가지고 또 (무대) 밑에서도 보고 옆에 있는 사람 같이는 다른 사람의 남편이 가면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내 딸이 누군지, 내 와이프가 누군지 막 자랑하고... (연구참여자 3, 2차 면담)

너무 좋아요. 남편 아내(나) 보고 잘했어! 이렇게(엄지를 들어보임). 엄마 올라가 때는 "우리 엄마다" 이렇게 큰 소리 칠 때는 '그래 엄마 외국 사람이지만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아래서 한국분들도 잘했다 박수칠 때는 너무 좋아요. (연구참여자 5, 1차 면담)

연구참여자들은 자조모임을 통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이제 막 태어난 아기'에서 한국인에게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교사와 이주민과 지역사회를 연결시키는 통번역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자조모임을 하며 자신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기 보다 '자신의 가능성'에 주목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공동체 구성원

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주여성이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주여성이기에 할 수 있는 것' 즉, 그들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본래 자기'에 주목하여 그들의 강점을 개발하는 동시에 새로운 영역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기 위해 기술을 습득하고 지속적으로 배움의 과정에 도전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이해강사와 통번역사, 중국어 강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선배 이주여성들의 삶은 후배 이주여성들에게 살아있는 지침이 되고 있다. 이들은 결핍된 나에 초점을 두기보다 '지금 여기의 나'에 집중하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 행동과 삶의 구체적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의 사례를 통해 자조모임은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인 집단이지만 서로를 지지하고 끌어줌으로써 이주여성의 동반성장의 교육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워낙에 말 많은 사람인데 여기 와서 내성적 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전의 모습처럼 돌아가고 싶는데 그 도전(자조모임 리더)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처음에 많이 어려워요.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지 마음 같은 것도 조심하고. 계속 활동하니깐 뭐 제안 같은 거는 센터에 말 해야 우리는 그런 이익들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고민한 거예요. (연구참여자 1, 1차 면담)

그 베트남 친구들 지금도 자기도 와서 제가 하는 모습 보면 언니 뭐해요. 물어보잖아요. 이제는 학생 가르쳐요, 애들 가르쳐요 하면 이렇게 자기도 이제 하고 싶대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면 그런데 당신 지금 우선 교육 받아요. 교육 받고 자격증 따고 이렇게 천천히... 뭐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고. 그럼 그 친구도 언니 나 ppt 만드는 거 몰라요. 그리고 강사 채용할 때 우선 자기소개서 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도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신랑한테 써달라고 해 하면 근데 신랑도 못 해줘요. 그래서 저한테 자기소개서 써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언니 내가 쓴 거 좀 고쳐줄 수 있어요? 봐줄 수 있어요? 봐달라고 해요. (연구참여자 6, 2차 면담)

이후 부분은 모든 연구참여자와의 심층면담이 완료된 후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완하여 작성하고자 합니다.

## ■ 참고문헌

- 강경리(2017). 성인학습자의 교육대학원에서의 학습경험 탐색-전환학습이론을 기반으로. *교육문화연구*, 23(5), 169-197.
- 강미정(2016). 고학력 경력단절 중년여성의 대학원 학습참여 경험 의미에 관한 연구. *평생교육·HDR연구*, 12(2), 45-68.
- 강순원(2010). 다문화사회 세계시민교육의 평생교육적 전망. *평생교육학연구*, 16(2), 69-91.
- 김도현(2016). 전환학습의 관점에서 바라본 결혼이주여성들의 이중언어강사 양성과정 참여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Andragogy Today :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19(1), 59-88.
- 김미자·전주성(2015). 전이학습 관점에서의 여성 결혼이민자의 직업교육과 취업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이중언어 강사를 중심으로. *Andragogy Today :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18(3), 119-141.
- 김진희(2011). 국제결혼이주여성 및 이주여성노동자의 교육 참여 현실과 평생교육의 방향성 모색. *평생교육학연구*, 17(1), 25-51.
- 김한별·허효인(2017). 전환학습 연구의 동향과 과제. *평생교육·HRD 연구*. 13(2), 109-130.
- 박경호(2009). 전환학습이론: 고등교육기관에서 중년여성학습자의 의미구조의 변화. *Andragogy Today*, 12(4). 31-60.
- 설진배·김소희·송은희(2013).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연결망과 초국가적 정체성: 한국생활 적응과정을 중심으로. *아태연구*, 20(3), 229-260.
- 손민호·조현영(2013).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학습경험에 따른 정체성 구성에 관한 연구-다문화교육 교사양성 프로그램 참여자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19(3), 141-173.
- 원종숙·김성길(2021). 다문화 이주여성의 배움경험으로서 改造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미래교육연구*, 11(3), 1-28.
- 이은숙(2013).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생활에 나타난 다문화 전환학습 경험. *아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현청(2012). *현대사회와 평생학습 학습하는 사회*. 서울: 학지사.
- 임선우·윤황(2017).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통번역 자조모임 특성에 관한 연구: 대구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아시아문화학술원*, 8(3), 639-659.
- 정성미(2010). 결혼이주여성의 자조모임과 정체성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민식(2020). 학부모 자조모임 참여실행연구를 통한 발달장애학생의 성인전환기 준비.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Birchall, J. (2007). *The New Mutualism in Public Policy*. New York: Taylor & Francis Group.
- Charaniya, MK. (2012). Cultural-spiritual perspective of transformative learning. In E. W. Taylor, & P. Cranton (Eds), *The handbook of transformative learning: Theory, research and practice*(pp. 231-244). San Francisco: Jossey Bass.
- Dave. R. (1976). *Foundation of lifelong education*. New York: Pergaman Press.
- Katz, A. & Bender. E., (1976), *The Strength inus:Self-helpGroups inthe Modern World*, New York : Franklin-Watts.
- Lengrand, P. (1970). *An introduction to lifelong education*. Paris: UNESCO.
- Merriam, S. B. *Qualitative Research and Case Study Applications in Education*. Revised and Expanded from. *Case Study Research in Education*. Jossey=Bass Publishers, 350 Sansome St, San Francisco, CA 94104.
- Mezirow, J. (1990). How critical reflection triggers transformative learning. In J. Mezirow & Associates (Eds.), *Fostering critical reflection in adulthood: A guide to transformative and emancipatory learning* (pp.1-20).SanFrancisco, CA:Jossey-Bass.
- Mezirow, J. (1995). Transformation theory of adult learning. InM. R. Welton (Ed.), *In defense of the life world* (pp. 39-70). New York: SUNY Press.

- 2022 한국국제문화교육학회 학술대회
- Mezirow (2000). Learning to think like an adult: Core concepts of transformation theory. in J. Mezirow & Associates. Learning as transformation: Critical perspective on a theory in progress. San Francisco: Jossey-Bass.
- Mezirow (2003). Transformative learning as discourse. Journal of transformative Education, 1(1), 58-63.
- Miller, S. & Katz. G., The educational needs of mental health self-help groups. Psychosocial Rehabilitation Journal. Jul 92, Vol. 16 Issue 1, p16. 4p.
- Smith, D. H., & Pillemer, K. (1983). Self-help groups as social movement organizations: Social structure and social change. Research in Social Movements, Conflicts and Change, 5(2), 381-392.
- Solomon, M., and Pistrang, N.(2001). The Benefits of Mutual Support Groups for Paren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9(1), 113-130.

본 연구는 '듀이의 경험이론'을 중심으로 베트남 한부모이주여성의 생애 경험, 그리고 그러한 생애 경험에서의 성장 변화한 모습을 통해, 한부모이주여성의 성공적인 자립 및 성장을 위한 방안 제시하기 위해 이혼을 경험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심층면담과 연구참여자의 에세이를 바탕으로 Mandelbaum(1973)의 3차원 분석틀인 「삶의 영역」, 「전환점」 그리고 「적응」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논문의 제목이 논문의 내용과 맞아서 좋았고 논문에서 제시된 자료와 분석이 결론을 뒷받침되어 좋았습니다.

1. 연구의 문제의식과 목표를 좀 더 분명하게 기술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 기존연구의 문제점을 충분히 지적하였는가? 기존연구와 차별점은 무엇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선행연구를 촘촘히 하고 선행연구의 빈틈을 찾아서 연구한다면 본 연구의 차별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이혼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논문이 매우 미미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 온 결혼여성 중 이혼 후의 삶과 베트남에서 온 이혼한 결혼이주여성의 삶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 II. 이론적 배경

### 1. 베트남 이주여성의 결혼과 이혼

내용의 전반부(P7 중반까지)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내용이 맞습니다. 그러나 후반으로 가서는 일반적인 결혼이주여성의 이혼의 사회문화적 또는 규범적 의미에 관해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1. 베트남 이주여성의 결혼과 이혼'이라는 제목을 다시 고민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P4~P5. 한국남자와 혼인한 외국인 여성 중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1위이고, 다문화 이혼을 한 외국 출신의 아내의 국적은 중국이 34.9%로 가장 많고, 베트남(28.6%), 필리핀(4.2%) 순으로 많았다. 그러나 전년 대비 중국의 비중은 2.9%p 감소한 반면, 베트남의 비중은 2.1%p 증가하였다.고 하였는데

왜 베트남 여성의 이혼이 늘어나는지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2000년 초반부터 국제결혼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베트남 신부의 유입이 급증하였는데, 2010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이루어진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국제결혼은 9,623건으로,,, 2010년의 통계에 그치고 있습니다. 최소한 2021년의 통계까지 제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P7.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선행연구 35편을 분석한 결과 무엇무엇에 대해 연구하였다고 그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그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제시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Ⅳ. 연구 결과

연구결과는 본 학회에서 제시하는 지면의 한계로 다 기술하지 못하였다 생각합니다. 다만 카테고리의 제목을 좀 더 고민해보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된 논의는 기존연구에서 제시한 제언과 매우 흡사하며 일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2년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가족센터'로 바뀌면서 정책도 다양하게 내놓았습니다. 이도 살펴보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부모이주여성의 성공적인 자립 및 성장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토론 4. 연구결혼이주여성들의 자조모임 참여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남 부 현 선문대학교 교수

개인이 나고 자라고 성장한 문화가 아닌 타문화 속에서 새롭게 삶을 영위하는 이주민의 삶의 경험은 모든 영역에서 문화적 적응인 동시에 새로운 학습과정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결혼이주여성의 자조모임 경험을 성인학습과 평생교육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함은 바람직하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자조모임 특성은 일반 한국인들의 모임과는 다를 것이므로 이들의 자조모임 참여 경험이 이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며 삶의 관점에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를 교육적으로 연계하여 탐색하는 일은 매우 의미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연구에 대해 몇가지 질문과 코멘트를 던지고자 한다.

서론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자조모임이 왜 중요한가? 자조모임의 특성은? 이 모임은 왜 성인학습과 연계되나? 그리고 평생교육의 특성을 갖고 있는지? 즉, 결혼이주여성의 자조모임이 평생교육과 성인학습과의 연결고리가 논리적으로 충분히 전개되지 못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자조모임이 성인학습과 형식/비형식 교육의 평생교육과 연결된다고 주장하면서도, 왜, 서론의 마지막 부분에 갑자기 전환학습이론이 참여자의 면담내용 분석을 위한 해석의 틀로서 활용될 것을 제시하였는가? 앞부분부터 전환학습이론을 제시하고 결혼이주여성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육활동 참여 등과 관련한 기존 선행연구 결과들을 살피고 비교 분석하며, 자조모임 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으면 좀 더 논리적이며 타당하게 연구의 서론이 전개되었을 것이다. 현재 서론에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는 줄이고 이들의 교육적 활동에 집중하여 선행 연구결과를 비교·분석하여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 서론은 연구논문의 얼굴이므로 문제제기/필요성, 연구목적, 핵심 이론, 연구방법, 연구를 통해 획득될 예상 기대효과까지를 논리적이며 깔끔히 핵심사안만을 담아 정리하여야 한다.

이론적 배경에서는 자조모임의 특성, 성립요건, 목적 등을 정리하면서 마무리로 결혼이주여성 자조모임의 형성배경을 설명하는데 그치고 있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결혼이주여성 자조모임은 이론배경으로 제시한 본래 자조모임 목적과 특성에 맞게 움직이는지? 등을 비판적 관점에서 논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자조모임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없는지?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자조모임과 유사한 집단활동이나 사회참여 활동에 관련 연구가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찾아 그 결과들을 자조모임과의 연계하에 정리하고 논의한다면 결론부분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자조모임의 의미와 본질을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성인학습의 주요 이론으로서 전환학습 이론을 분석 틀로 가져옴은 바람직하다. 이론적 정리가 길어지면서 이 이론을 중심으로 연구한 선행연구 결과들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전환학습과 성인 참여자의 경험담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더 찾아서 정리할 바란다.

연구방법은 사례연구로서 연구참여자에 대한 개별적 삶의 과정 설명이 더 필요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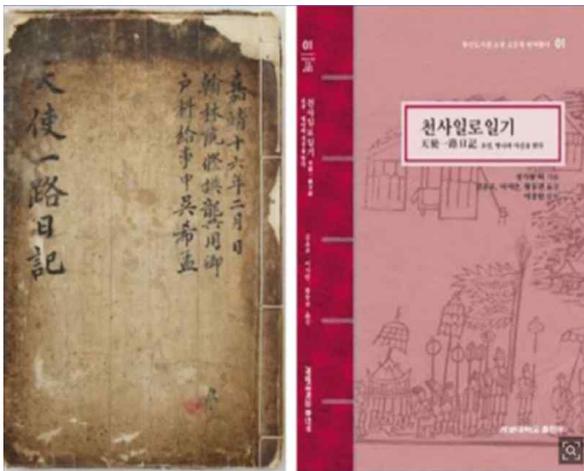
듯하다. 자료수집과 분석방법은 잘 기술되었다.

결과부분은 전반적으로 잘 정리되었으나 해석을 보충할 면담사례들을 좀 더 추가할 필요가 있다. 전환학습 이론에 기초하여 3단계로만 범주화하여 정리하다보니, 참여자들의 중간 과정의 변화를 발견하기 어렵다. 즉, 자조모임의 참여 중에 발생하는 구성원 간의 갈등상황이나 굴곡진 모습 또는 일반적이며 특수한 자조모임의 모습 등을 담아내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전환학습의 발달단계에 집중하여 자조모임 경험담의 결과를 제시하였으므로, 중요 의미단위들을 놓치지 않는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개 범주로만 유목화한 현재의 결과내용을 범주 아래의 대주제 단위로까지 한단계 더 심화하여 핵심 의미단위들을 추출하여 재구조화하면 더욱 생생하게 이들의 자조모임을 통한 학습경험과 변화과정을 담아낼 수 있을 것이다. 현재는 결혼이주여성의 자조모임 참여 경험의 핵심의미를 담고 있는 사례들보다 연구자의 서술과 해석에 의존된 경향이 높아 실제 전환학습의 관점에서 이들이 실제 삶의 의미를 찾고 변화되었는지를 증빙할 사례들을 더 제시하길 바란다. 이는 독자들에게 더욱 생생하게 이들이 자조모임을 통해 삶의 의미와 관점을 변화시키고 스스로 삶에 가치를 부여하는 모습과 과정들을 섬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좋은 주제로 성실하게 연구를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토론내용 중 제시한 질문들은 연구자의 입장에서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시하였으니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외 사안들은 토론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므로 가능한 부분들은 반영하여 연구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길 바랍니다.

머리말

‘천사일로일기(天使一路日記) 조선, 명나라 사신을 맞다’: 천사(天使)는 명나라가 조선에 파견한 사신을 일컫는 말이며, 일로(一路)는 지나가는 길이라는 뜻으로 조선 시대 외국과의 ‘소통’ 및 ‘교류’ 현장 소개



1537년 명나라 사신 공용경(龔用卿) 일행을 압록강에서 맞아 돌아갈 때까지 모든 일정을 함께한 조선의 원접사(遠接使) 정사룡(鄭士龍) 일행이 쓴 일기 형식의 기록물. 국내에 남아 있는 최초의 원접사 일기로 16세기 전반 조선과 명나라의 공식적 사신 외교 활동의 생생한 현장을 기록해 놓은 점에서 의의가 있음. 조선과 중국 사신의 왕래 절차가 상세히 기록돼 있어 역사적 가치가 높고, 외교에서 두 나라 고위 관료의 인간적 교류가 아주 중요함 요소임이 나타나 있음.

[그림 1] 천사일로일기(天使一路日記)  
대구시 유형문화재 제85호로 2020년 12월 국문 번역본 출간  
(계명대 고문헌실 소장)

In-bound 및 Out-bound 유학생 현황

2.1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In-bound)

1) 연도별 유학생 수

2003년 12,314명으로 시작한 유학생 수는 2017년에는 123,858명으로 그 수의 10배를 달성. 최근 5년간의 국내의 외국인 유학생 수를 살펴보면 2019년에 160,165명으로 역대 최고 수치를 달성하였으나, 2020년부터 약간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매년 4. 1. 기준, 단위: 명)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유학생 수	123,858	142,205	160,165	153,695	152,281

## 2) 지역별 유학생 수

(2021. 4. 1. 기준, 단위: 명)

지역	학위과정			어학연수	기타연수	합계
	대학	대학원	소계			
아시아	77,547	35,727	113,274	20,695	4,374	138,343
북아메리카	1,058	850	1,908	584	548	3,040
유럽	1,034	846	1,880	1,642	3,635	7,157
오세아니아	119	85	204	43	8	255
아프리카	573	1,607	2,180	271	84	2,535
남아메리카	266	306	572	207	172	951
합계	80,597	39,421	120,018	23,442	8,821	152,281

- 학위과정을 기준으로 할 때, 아시아 지역 유학생이 전체 유학생의 94%를 차지함.
- 유럽의 경우는 프랑스 1,894명, 러시아 1,392명, 독일 1,015명, 스페인 386명 순이고, 아프리카의 경우 나이지리아 291명, 에티오피아 281명, 가나 238명, 카메룬 196명 순임.
- 남아메리카의 경우 대륙의 크기에 비해 유학생 수가 극히 적음.

## 3) 주요 국가별 현황

(매년 4. 1. 기준, 단위: 명)

연도		중국	베트남	우즈벡	몽골	일본	미국	기타	계
2017	인원	68,184	14,614	2,716	5,384	3,828	2,767	26,365	123,858
	비율	55.1%	11.8%	2.2%	4.3%	3.1%	2.2%	21.3%	100.0%
2018	인원	68,537	27,061	5,496	6,768	3,977	2,746	27,620	142,205
	비율	48.2%	19.0%	3.9%	4.8%	2.8%	1.9%	19.4%	100.0%
2019	인원	71,067	37,426	7,492	7,381	4,392	2,915	29,492	160,165
	비율	46.7%	24.6%	4.9%	4.8%	2.9%	1.9%	19.4%	105.2%
2020	인원	67,030	38,337	9,104	6,842	3,174	1,827	27,381	153,695
	비율	44.0%	25.2%	6.0%	4.5%	2.1%	1.2%	18.0%	100.9%
2021	인원	67,348	35,843	8,242	6,028	3,818	2,218	28,784	152,281
	비율	44.2%	23.5%	5.4%	4.0%	2.5%	1.5%	18.9%	100.0%

○ 2021년 기준 상위 10개국 출신 유학생 수는 중국 67,348명(44.2%), 베트남(23.5%), 우즈베키스탄 8,242명(5.4%), 몽골 6,028(4.0%), 일본 3,818명(2.5%), 네팔 2,674명(1.8%), 미국 2,218명(1.5%), 프랑스 1,894명(1.2%), 인도네시아 1,779명(1.2%), 대만 1,473명(1.0%) 순이며, 아시아 지역 국가 출신 유학생이 상위 5개국을 차지하고 전체적으로도 비중이 높음. 특히 중국과 베트남의 유학생 수가 다른 국가의 유학생 수보다 극히 높다는 특징이 있음.

○ 2017년 대비 2021년에는 전체 유학생 수가 2017년의 수의 22.9%가 증가하였으며,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은 각각 2017년 수의 145.3%(21,229명) 및 203.5%(5,526명)가 증가함.

#### 4) 대학 소재지별 유학생 현황

(2021. 4. 1. 기준, 단위: 명)

시도	학위과정			어학연수	기타연수	합계	
	대학	대학원	소계			인원 수	비율
서울	33,714	18,074	51,788	9,909	4,190	65,887	43.3%
경기	10,838	3,846	14,684	2,804	473	17,961	11.8%
부산	4,703	2,704	7,407	1,537	984	9,928	6.5%
대전	3,584	2,812	6,396	1,221	745	8,362	5.5%
전북	4,177	2,302	6,479	964	142	7,585	5.0%
충남	4,318	1,635	5,953	1,362	114	7,429	4.9%
대구	3,237	1,140	4,377	1,265	1,098	6,740	4.4%
경북	3,785	1,078	4,863	967	178	6,008	3.9%
광주	2,768	1,585	4,353	958	139	5,450	3.6%
충북	1,490	991	2,481	425	91	2,997	2.0%
경남	1,580	625	2,205	663	117	2,985	2.0%
인천	1,735	423	2,158	430	186	2,774	1.8%
강원	1,612	526	2,138	154	64	2,356	1.5%
전남	815	598	1,413	430	143	1,986	1.3%
제주	1,442	247	1,689	198	31	1,918	1.3%
울산	691	522	1,213	142	119	1,474	1.0%
세종	108	313	421	13	7	441	0.3%
총합계	80,597	39,421	120,018	23,442	8,821	152,281	100.0%

○ 외국인 유학생의 55.1%가 서울 및 경기지역에서 유학 중이며, 수도권 쏠림 현상이 있음.

#### 2.2 국외 고등교육기관 한국인 유학생(Out-bound)

##### 1) 연도별 유학생 수

최근 5년간의 해외 거주 한국인 유학생의 수를 살펴보면 2017년 239,824명에서부터 2021년 156,520명까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2011년에는 262,465명으로 최고치를 달성하였으나 이후 2015년의 214,696명까지 감소세를 보였고 2016년 2017년에는 오름세를 보였으나 이후 감소함.

(매년 4. 1. 기준, 단위: 명)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유학생 수	239,824	220,930	213,000	194,916	156,520

## 2) 지역별 유학생 수

(2021. 4. 1. 기준, 단위: 명)

지역	학위과정			어학연수 등 기타연수	합계
	대학	대학원	소계		
아시아	30,600	5,127	35,727	15,735	51,462
북미	33,566	15,446	49,012	13,068	62,080
유럽	9,836	8,725	18,561	6,732	25,293
오세아니아	2,223	1	2,224	14,511	16,735
아프리카	11	6	17	504	521
중남미	77	39	116	313	429
합계	76,313	29,344	105,657	50,863	156,520

○ 아시아지역 유학생 수는 중국 26,949명, 일본 15,785명, 대만 2,248명, 홍콩-마카오 1,869명, 싱가포르 1,128명, 말레이시아 1,013명 순임.

○ 북미의 경우는 미국 49,809명, 캐나다 12,220명 순임.

○ 유럽의 경우는 독일 7,444명, 영국 6,199명, 프랑스 4,024명, 네덜란드 2,299명 순임.

○ 오세아니아의 경우에는 호주 13,726명, 뉴질랜드 2,990명임.

○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490명, 중남미의 경우에는 멕시코가 312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 3) 주요 국가별 현황

2017년 대비 2021년에는 전체 유학생 수가 2017년의 수의 34.7%가 감소하였으며, 가장 크게 감소한 국가는 중국이며 5년 전 대비하여 63.2%가 감소함. 미국의 경우도 5년 전 수에 비해 18.4%가 감소하였음. 반면에 일본, 독일은 큰 변동이 없음.

(매년 4. 1. 기준, 단위: 명)

연도		미국	중국	호주	일본	캐나다	독일	프랑스	기타	계
2017	인원	61,007	73,240	16,770	15,457	8,735	6,087	6,655	51,873	239,824
	비율	25.4%	30.5%	7.0%	6.4%	3.6%	2.5%	2.8%	21.6%	100.0%
2018	인원	58,663	63,827	16,801	15,740	12,279	6,527	6,475	40,618	220,930
	비율	26.6%	28.9%	7.6%	7.1%	5.6%	3.0%	2.9%	18.4%	100.0%
2019	인원	54,555	50,600	18,766	17,012	16,495	6,835	6,948	41,789	213,000
	비율	25.6%	23.8%	8.8%	8.0%	7.7%	3.2%	3.3%	19.6%	100.0%
2020	인원	52,250	47,146	13,026	18,338	16,325	7,066	7,090	33,675	194,916
	비율	26.8%	24.2%	6.7%	9.4%	8.4%	3.6%	3.6%	17.3%	100.0%
2021	인원	49,809	26,949	13,726	15,785	12,220	7,444	4,024	26,563	156,520
	비율	31.8%	17.2%	8.8%	10.1%	7.8%	4.8%	2.6%	17.0%	100.0%

○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유학생 현황을 비교해 볼 때 아시아 지역의 경우는 인바운드가 중심이고, 북미나 유럽은 아웃바운드가 절대적으로 우세함을 알 수 있음.

### 3. 유학 및 학생 교류를 위한 국제 장학 프로그램

#### 3.1 대한민국정부 초청 장학 프로그램

##### 1) GKS(Global Korean Scholarship)

###### ○ 프로그램 개관

- 주관 기관: 국립국제교육원

- 운영 목적: 외국인 학생에게 대한민국 고등교육기관에서 수학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제 교육 교류 촉진 및 국가 간 우호 증진을 도모.

- 운영 성과: 157개국 12,466명(1967 ~ 2021)

###### ○ 프로그램 내역

구분	초청 규모(연간)	모집 방법
학위과정	220명	선정된 수학 대학 선정 기관 및 재외공관에서 지원자를 접수 받아 선발
대학원과정	1,080명	
연구과정		
우수 교환학생	200명	선정된 수학 대학 대학과 협정을 맺은 대학의 외국국적 학생 대상으로 선발
우수 자비 유학생	250명	국내에서 수학 중인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지원을 받아 선발
초청학생지원	400명	선정된 수학 대학과 협정을 맺은 ODA국가 대학 학부생을 대상으로 선발

- 2022년 신규 학위과정을 개설하여, 정부초청장학생의 수학뿐만 아니라 산학 연계 또는 R&D 분야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 중임.

##### 2)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

###### ○ 프로그램 개관

- 주관 기관: 국립국제교육원

- 2020년부터 신규 운영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학부 단기과정, 학부 1년 과정(학점 교류), 석·박사 학위과정 등으로 구분되어 수학 형태 및 성격에 따라 수학 대학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학부 단기 과정생은 20명 기준, 1인당 500만원 내 항공료, 수업료, 보험료, 숙식비, 체험 활동비 등이 제공되며, 학부 1년 과정생은 대학별 8명 이내로 추천하여 항공료, 수업료, 보험료, 생활비 등이 제공되며, 석·박사 학위 과정생은 대학별 5명 이내로 추천하여 한국어연수비, 항공료, 수업료, 보험료, 생활비 등 제공.

#### 3.2 외국정부 초청 장학 프로그램

##### 1) ERASMUS+

###### ○ 프로그램 개관

-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주관으로 EU 회원국 및 협력 국가에 소재 대학에서 운영하는 공동학위, 단기 어학연수, 학생 교류 및 교(직)원 교류 등의 교환 및 교류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재정 지원[ex. 교(직)원 교류: 1인당 1,200~1,300

유로, 학생 교류: 1,750~1,900유로]

- 프로그램 신청을 위해 지원 유형(Key Action 1~3)을 선택하여 EU 회원국 대학 1개와 국내 대학 1개가 1개 조를 이루어 유럽집행위원회에 신청서(계획서) 제출 후 별도 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 선발.

## 2) ISEP(International Student Exchange Program)

### ○ 기관(프로그램) 개관

- 미국 소재 국제학생 교류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기관으로서 50개국, 300개 이상의 대학이 회원 가입되어 있으며, 국내에는 7개교(아주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한양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연세대학교)가 회원교로 활동하고 있음.

- ISEP 소속 회원교 간에는 별도 협정서 없이 학생 개별 역량, 수학 계획 등에 따라 자유롭게 상호 교환할 수 있으며, 교환학생 신분으로 파견되는 경우, 수학 대학에서 기숙사 및 식비 등을 제공받음(\* 수혜 금액은 학교별로 상이함)

## 3) 아셈 듀오(ASEM DUO)

### ○ 프로그램 개관

- 한국과 유럽 ASEM 회원국 간 균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적 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주관 국가에 따라 Duo-Korea, Duo-Sweden, Duo-Belgium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

- 주관 국가별 장학금 지급액 및 선발 인원은 상이하나, Duo-Korea 기준 연간 한국인 학생 1명과 유럽(ASEM 유럽 국적자) 학생 1명이 한 조(Pair)를 이루어 맞교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약 50개 조(100명) 내외를 선발하여 1인당 4,000유로 지원

○ 이밖에도 터키 고등교육부가 주관하는 학생/교수 교환프로그램으로 메블라나(Mevlana),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하여 2005년도부터 마련한 장학 제도로 킹압둘라 장학 프로그램(KSAP, King Abdullah Scholarship Program)이 있음

## 4. 국제교류 관련 협의회 현황

### 4.1 해외 기반 협의회

#### 1) NAFSA(National Association for Foreign Student Affairs)

##### ○ 협의회 개관

- 국제교육자협회(NAFSA)는 세계 최대 비영리 국제교육 및 국제교류 전문기관으로 1948년에 설립되었고, 150개국, 3,500개 교육기관의 10,000명 이상의 협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음.

##### ○ 주요 행사 및 내용

- 매년 5월 말 ~ 6월 초, 미국 각 주에서 박람회 개최(전 세계 교육기관 국제교육, 국제교류 업무 관계자가 모여 국제교육과 국제교류 관련 세션 제공 및 트렌드 공유,

기관별 업무 협의 등 실시)

○ 참가 대상

- 전 세계 교육기관 국제교육/국제교류 관계자

2) EAIE(European Association for International Education)

○ 협의회 개관

- 유럽국제교육자협회(EAIE)는 교육의 국제화에 대한 전문성, 네트워킹 및 자원을 위한 유럽 기관. 교육, 회의, 연구 및 지식 습득 및 공유를 통해 기관의 국제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조직으로 1989년에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음.

○ 주요 행사 및 내용

- 매년 9월 중순, 유럽 각국에서 박람회 개최(전 세계 교육기관 국제교육, 국제교류 업무 관계자가 모여 국제교육과 국제교류 관련 세션 제공 및 트렌드 공유, 기관별 업무 협의 등 실시)

○ 참가 대상

- 전 세계 교육기관 국제교육/국제교류 관계자

3) APAIE(Asia-Pacific Association for International Education)

○ 협의회 개관

- 아시아·태평양국제교육협회(APAIE)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제교류 및 국제교육 전문 비영리 기관으로 2004년 서울에서 창립되어 활동하고 있음.

○ 주요 행사 및 내용

- 매년 3월 말,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에서 박람회 개최(전 세계 교육기관 국제교육, 국제교류 업무 관계자가 모여 국제교육과 국제교류 관련 세션 제공 및 트렌드 공유, 기관별 업무 협의 등 실시)

○ 참가 대상

- 전 세계 교육기관 국제교육/국제교류 관계자

4) ACUCA(Association of Christian Universities and Colleges in Asia)

○ 협의회 개관

- 아시아기독교대학협회(ACUCA)는 1976년에 창립되어, 한국, 미얀마,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대만, 필리핀, 홍콩 등 기독교 대학으로 구성된 단체이며, 학생 교류, 기독교 정신 기반의 국제교육 등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하고 있음.

○ 주요 행사 및 내용

- 학생교류[SMS(Student Mobility Scheme)], 학생캠프, 정기총회, 격년회의, 경영자 협의회 등이 매년 혹은 격년으로 2~3회 실시

○ 참가 대상

- ACUCA 회원교 관계자 및 학생

## 4.2 국내 기반 협의회

### 1) KAFSA(Korean Association of Foreign Student Administrators)

#### ○ 협의회 개관

- 한국대학국제교류협의회(KAFSA)는 국내 고등교육 기관 국제교류 부서장 및 실무자들 간의 국제교육에 관한 정보교류를 위해 1999년에 설립되어 한국 대학의 국제교류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국내 대학의 국제화를 위한 현실적인 정책 방향을 정부 측에 제시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 주요 행사 및 내용

- 매년 하계·동계 정기총회 및 컨퍼런스(연 2회)
- 주제: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책(중국어학력학위 인증제도와 관련 정책 등)

#### ○ 참가 대상

- KAFSA 회원교 및 비회원교(단, 참가비 감액 등의 혜택 없음)
- 주로 관리자급 참석

### 2) KAIE(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Educators)

#### ○ 협의회 개관

- 한국국제교육자협회(KAIE)는 국내 고등교육기관 국제교육자들의 전국적 조직이며, 한국 대학 국제교육의 우수성과 그 성과를 국내외로 홍보하고, 협회 회원 대학의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 및 유관 기관에 알리며, 전 세계 고등교육기관들이 추구하는 국제교육의 보편타당한 가치를 추구하고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1998년 창립

#### ○ 주요 행사 및 내용

- 아카데미(국제교류 업무 교육), 정기총회[회장단 선거, 사업 및 회계 감사 보고, 그룹/개별 세션(국제교류, 유학생 유치/관리) 등], 워크숍 등 연간 4~5회 연례행사 진행

- 주제: 국제교류 트렌드 파악 및 외국인 유치 관련 정보 교류(예시: 중외협작판학 프로그램의 설계 및 운영 등)

#### ○ 참가 대상

- KAIE 회원교 및 비회원교(단, 참가비 감액 등의 혜택 없음)
- 주로 실무자급 참석

## 5. 기타 국제교류 관련 국가 간 국책 사업

### 5.1 CAMPUS Asia-Aims

#### ○ 사업 개관

- 교육부 주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으로 한-아세안 쌍방향 인적교류로 국가 간 협력기반 구축 및 글로벌 교류협력을 통한 지역전문가 및 아세안 지역의 친한·지한 인재 양성 사업으로써, AIMS 사업 사무국 운영 원칙에 따라 10개 학문 분야 중 교류학문 분야를 중심으로 한 학생 교류 사업.

- 사업 기간은 총 5년이며, 국고 지원액은 연간 1억 원 내외이고, 사업 위탁 대학

에서 일정 비율의 자부담액 투입 요구(ex. 초청 학생 기숙사비, 생활비 등으로 집행)

- 해외 협력대학과 학생 파견 및 초청이 주요 내용이며, 사업 참여 학생은 언어 교육, 문화체험 활동, 생활비(월 70만원), 정착지원금(20만원, 1회) 등의 혜택이 주어짐.

## 5.2 CAMPUS Asia-한일중 / CAMPUS Asia Plus(한일중 + ASEAN)

### ○ 사업 개관

- 교육부 주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으로 한·일·중 3국간 고등교육 협력 강화와 학생 교류 증진을 위한 사업이며, 확장사업(Mode3)이 추진되면서 한·일·중 및 ASEAN 국가 고등교육기관도 포함하여 아시아지역 학생 교류 강화 목표 사업

- 단기 및 장기 학생 교환(학점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공동·복수학위 등 특화된 공동 교육과정, 인턴십 개발 등을 통해 기존 특화 전략과 연계 추진

- 사업 참여 학생은 체재비, 정착지원금, 긴급보조비 등의 혜택이 주어짐

## 6. 맺음말

○ 지역마다 매력 포인트 개발 및 특화

○ 상호협력 및 상생을 위한 제도적 장치 확대

○ Multiculturalism과 Pluriculturalism 지향

## ■ 참고문헌 및 관련 웹사이트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21b), 『해외 현지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Council of Europe (2020),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Learning, teaching, assessment – Companion volume,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Strasbourg. <https://www.coe.int/lang-cefr>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50&boardSeq=90123&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309&opType=N>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50&boardSeq=90124&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309&opType=N>  
[https://www.studyinkorea.go.kr/ko/sub/gks/allnew\\_invite.do](https://www.studyinkorea.go.kr/ko/sub/gks/allnew_invite.do)  
[https://www.studyinkorea.go.kr/ko/sub/gks/allnew\\_koreajapan.do](https://www.studyinkorea.go.kr/ko/sub/gks/allnew_koreajapan.do)  
<https://erasmus-plus.ec.europa.eu/>  
<https://www.isepstudyabroad.org/member-universities/>  
[http://www.kaie.org/content/01aboutkaie/01\\_01.php](http://www.kaie.org/content/01aboutkaie/01_01.php)  
<https://www.nafsa.org/about>  
<https://www.eaie.org/about-eaie.html>  
<https://www.apaie.net/about/>  
<https://acuca.net/new/>  
<http://www.kafsa.kr/2016/inner.php?sMenu=A1000>  
<http://aims.campusasiaprogram.kr/>



